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지침 제1호

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ÉRENCE DE LA HAY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본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2008년에 출판한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1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08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번역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책임지도록 중앙입양원에 번역권과 출판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영문판 원본이 구속력 있는 진본입니다.

ⓒ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1*
by Family Law, A publishing imprint of Jordan Publishing Limited, Bristol, England
All rights reserved.

"This translation has kindly been produced by Korea Adoption Services. It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authentic text, which is available in French and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its website < www.hcch.net >. This translation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and may contain non-standardised terminology."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과 운영: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제1호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8

<표지 그림> Marcus Luis Frost Jorgensen(5세, 덴마크)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지침

제 1 권

목 차

용어정리

개관

제1부 : 협약의 기초

제1장 : 기본 요건

제2장 : 협약의 일반 원칙

제3장 : 주요 운영원칙

제4장 : 기관의 구조 -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제5장 : 국제입양에서의 비용 규제

제2부 :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반

제6장 : 국내아동보호 상황과 국내입양

제7장 :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

제8장 :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

제9장 : 입양 사후 문제

제10장 : 협약의 남용 방지

제3부 : 부속서

협약 조항 색인

세부목차

17 용어정리

21 개관

25 제1부 : 협약의 기초

27 제1장 : 기본 요건

27 1.1 협약의 필요성
28 1.2 협약의 역사
30 1.3 협약의 목적
30 1.4 협약 당사국이 되기 위해 고려할 사항
31 1.5 현황 평가
31 1.6 이행 계획
31 1.7 이행 계획 수립
33 이행 과정 도표

34 제2장 : 협약의 일반 원칙

34 일반 원칙의 개요
35 2.1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입양의 보장
36 2.1.1 보충성
38 2.1.2 차별금지
39 2.1.3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한 조치
39 2.1.3.1 아동의 입양 가능성 보장 - 협약 제2장과 제4장의 요건 충족
39 2.1.3.2 정보 보존
40 2.1.3.3 적합한 가정과의 결연
40 2.2 입양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보호망 구축
41 2.2.1 가족의 보호
41 2.2.2 아동 탈취, 유괴, 매매 척결
43 2.2.3 적절한 동의의 보장
44 2.2.3.1 유도하지 않은 동의 획득

44 2.2.3.2 유인 방지
45 2.2.3.3 친가족 비용 지불
46 2.2.4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 방지
46 2.3 국가 간 협력의 구축
47 2.3.1 중앙당국 간의 협력
47 2.3.2 협약 절차에 관한 협력
48 2.3.3 협약의 남용과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48 2.4 권한당국의 권한 보장
48 2.4.1 권한당국
49 2.4.2 중앙당국
49 2.4.3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50 제3장 : 주요 운영원칙
50 3.1 점진적인 이행
51 3.2 자원과 권한
52 3.3 협력
52 3.3.1 내부협력의 증진
52 3.3.2 외부협력의 증진
53 3.3.3 회의와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증진
53 3.4 의사소통
54 3.5 효율적인 절차
54 3.6 투명성
55 3.7 최소 기준

56 제4장 : 기관의 구조 -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56 A. 중앙당국
57 4.4 중앙당국의 설립과 강화
57 4.1.1 중앙당국의 설립
57 4.1.2 권한과 자원
58 4.1.3 지정
59 4.1.4 연방 국가에서의 지정
59 4.1.5 중앙당국의 선택
60 4.1.6 직원

61 4.1.7 물적 자원
62 4.2 중앙당국의 역할
62 4.2.1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금지
63 4.2.2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의 제공
64 4.2.3 국제 협력과 공조
65 4.2.4 통계의 수집과 유지
66 4.2.5 사적 입양에서 중앙당국의 역할
66 4.2.6 독립 입양에서 중앙당국의 역할
66 4.2.7 다른 절차적 기능
67 B.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67 4.3 인가단체
68 4.3.1 인가단체의 기능
69 4.3.2 기준
69 4.3.3 인가 기준
70 4.3.4 인가단체의 감독과 검토
70 4.3.5 출신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인가단체의 승인
71 4.4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73 4.5 중재자

74 제5장 : 국제 입양에서의 비용 규제
74 5.1 입양서비스에 대한 지급
75 5.2 국제 입양을 위한 운용자금
77 5.3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 설정
79 5.4 아동 보호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금
80 5.5 기부금(Donation)
81 5.6 부패

83 제2부 :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반

85 제6장 : 국내 아동보호 상황과 국내 입양
86 6.1 1단계 : 아동의 보호체계 입소
86 6.1.1 아동의 보호체계 입소 :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확인
86 6.1.2 유기와 유괴

88 6.1.3 자발적인 친권 철회
89 6.2 2단계 : 가족 보존
89 6.2.1 가족 보존과 재결합
90 6.2.2 가족 보존과 재결합 지원 전략
90 6.2.3 가족의 온전성 유지
90 6.2.4 가족 재결합
91 6.2.5 가족 보존 프로그램 개발
91 6.2.6 서비스의 제공
91 6.2.7 기타 자원의 이용
91 6.2.8 협력 협정
92 6.3 3단계 : 일시 보호와 시설 보호
92 6.3.1 일시 보호의 사유
92 6.3.2 일시 보호시설
93 6.4 4단계 : 국내 입양이나 영구 보호
93 6.4.1 영구 배치
94 6.4.2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영구 배치의 지연
94 6.4.3 국내 입양시스템의 설계
95 6.4.4 국내 입양의 촉진
95 6.4.5 입양가정의 훈련과 승인
96 6.4.6 아동과 부모의 결연
97 6.4.7 서비스 제공

98 제7장 :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
98 7.1 국제 입양 절차
99 7.1.1 협약 제4장의 절차 요약
100 7.1.2 과도한 지연의 금지
101 7.2 아동
101 7.2.1 입양 대상 아동 여부의 확인(제4조 a)항)
103 7.2.2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였는지 확인
103 7.2.3 아동에 관한 보고서 준비
105 7.2.4 정확한 보고서의 보장
107 7.2.5. 아동과 가족의 “결연”
109 7.2.6 아동 보고서의 전달
109 7.2.7 결연의 수용(제17조 a)항과 b)항)

110 7.2.8 입양 진행 합의(제17조 c)항)
111 7.2.9 아동의 입국과 영주 허가
111 7.2.10 양친될 자에게 아동을 위탁(제17조)
112 7.2.11 아동의 수령국 이동
112 7.2.12 제23조의 증명서 발행
113 7.3 특수욕구 아동
113 7.3.1 특수욕구 아동
114 7.3.2 특수욕구 아동의 예비입양부모
114 7.3.3 입양 지원을 위한 협력
115 7.3.4 입양 전/후에 고려해야 할 요소
115 7.4 예비입양부모
116 7.4.1 입양 부모 신청과 평가
117 7.4.2 예비입양부모의 준비
118 7.4.3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보고서 작성
119 7.4.4 입양 부모에 관한 보고서 전달
120 7.4.5 출신국에서의 신청서 접수
120 7.4.6 결연의 공지
121 7.4.7 결연의 수용과 중앙당국의 합의(17조 a), b)항)
121 7.4.8 아동의 이민 절차(제5조, 제17조 d)항, 제18조)
121 7.4.9 중앙당국의 입양진행에 대한 동의(17조 c)항)
122 7.4.10 출신국 방문
122 7.4.11 제23조의 증명서 발행

124 제8장 :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
124 8.1 협약의 일반적인 본질
124 8.1.1 기본 절차와 최소 기준
125 8.1.2 협약은 획일적인 입양법이 아니다.
125 8.2 국제 입양에 대한 배치 제한
126 8.2.1 체약국은 국제 입양에 특정 수준으로 관여할 의무는 없다.
126 8.2.2 출신국은 협약의 당사국인 모든 수령국과 국제 입양조약을 맺을 의무가 있는가?
127 8.2.3 수령국은 협약 당사국인 모든 출신국과 국제 입양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128 8.2.4 출신국은 국제 입양의 (임시적)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가?
129 8.2.5 수령국은 특정 출신국으로부터의 입양을 제한할 수 있는가?
129 8.3 협약의 발효에 관한 질문들

130 8.3.1 어떠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하는가?
130 8.3.2 제46조 (2)항과 제44조 (3)항과의 관계
131 8.3.3 누가 제44조 (3)항에 따라 이의를 제할 수 있는가?
131 8.3.4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이미 계류 상태에 있는 국제 입양에 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32 8.4 상거소와 국적
132 8.4.1 아동 또는 예비입양부모의 국적이 협약의 범위 결정에 관계가 있는가?
133 8.4.1.1 상거소와 임시근로자
133 8.4.2 아동의 국적이 아동의 입양 대상 여부 결정과 관련이 있는가?
134 8.4.3 입양 부모의 국적이 입양 부모의 입양 적격성과 관련이 있는가?
134 8.4.4 예비입양부모가 체약국에 상거소를 구하는 것이 수월한가? 그리고 상거소를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이하며, 이는 해당 체약국에 상당 금액의 자금을 이체 또는 투자함으로써 가능한가?
135 8.4.5 협약 입양은 아동의 국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어떠한 경우의 입양이 아동에게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기존 국적을 잃게 하는가?
138 8.5 재난 상황에서 그리고 재난 상황 중 난민이 된 아동에 대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적용에 관한 제언
140 8.6 아동의 입양 적합성과 '친인척'입양을 포함한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
140 8.6.1 협약은 체약국이 입양 적격성에 대해 획일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가?
140 8.6.2 협약은 체약국이 아동의 입양 적합성에 관한 획일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가?
141 8.6.3 HIV 양성과 같은 심각한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의 국제 입양을 금지하는 국제 규정이 존재하는가? 협약은 수령국이 이러한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141 8.6.4 "in-family(가족 내)" 입양("relative(친인척)" 입양)인 국제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143 8.6.5 전혼자녀입양
143 8.6.6 사적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가? 그리고 협약의 기준 및 절차와 양립할 수 있는가?
144 8.7 협약 준수 불이행
144 8.7.1 협약의 위반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145 8.7.2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입양이 수령국에서 국내 입양으로 잘못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6 8.8 기타 사항
146 8.8.1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입양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가?
147 8.8.2 17조 c)항의 해석
147 8.8.3 제23조의 증명서는 언제 발행되어야 하는가?
148 8.8.4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한 후 입양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가?
148 8.8.5 제7조 (2) a)항에 따라 입양 관련 국내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중앙당국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149 8.8.6 인가단체에 대한 요건은 중앙당국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150 8.8.7 3국이 관여하는 입양
150 8.8.8 일반 입양(simple adoption)과 친양자 입양(full adoption)

151 8.8.9 해외 임시 위탁은 언제 아동의 입양으로 연결되는가? 협약의 적용을 받는가?

153 제9장 : 입양 사후 문제
153 9.1 정보의 보존
154 9.1.1 정보에 대한 아동의 권리
155 9.1.2 기록 접근
155 9.1.3 자료 보호
156 9.2 입양 사후 서비스
157 9.2.1 상담
157 9.2.2 출신국과의 연계
158 9.2.3 서비스 제공자
158 9.3 출신국에 보내는 입양 사후 보고서
161 9.4 입양의 실패 또는 중단

163 제10장 : 협약의 남용 방지
163 10.1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의 방지
163 10.1.1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방지를 위한 전략
164 10.1.1.1 비용의 투명성
164 10.1.1.2 기관과 개인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165 10.1.1.3 처벌은 법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165 10.1.1.4 수수료 규제
166 10.1.1.5 입양 부모의 입양 사후 조사
166 10.1.1.6 사적 입양과 독립 입양의 금지
166 10.2 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
167 10.2.1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관행
168 10.3 비체약국에 대한 협약 원칙의 적용
168 10.4 출신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 방지

171 제3부 : 부속서

172 부속서 1: 서명과 비준/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
173 1.1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용어 이해
174 1.2 협약 서명 전에 이행해야 할 조치
174 1.3 협약 비준 또는 가입 전에 이행해야 할 조치
175 1.4 발효
175 1.5 이행 방법

179 부속서 2 : 이행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모델
180 2.1 이행 계획 마련
181 2.2 평가 도구와 전략
182 2.3 내부 평가의 이용
183 2.4 긴급 조치
183 2.5 장기적인 개혁
185 2.6 단기/임시(중간) 계획
186 2.7 공식적인 이행 계획의 작성
187 2.8 국제 입양 기술지원 프로그램(ICATAP)
188 2.9 서명과 비준/가입에 대한 도표

189 부속서 3 :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 - 실제 사례
190 3.1 국가 : 알파(Alpha)
196 3.2 국가 : 델타(Delta)
200 3.3 국가 : 오메가(Omega)
202 3.4 국가 : 파이(Phi)
203 3.5 국가 : 세타(Theta)

205 부속서 4 : 가족 보존 지원 정책
206 4.1 가족 유지
206 4.2 가족 재결합
207 4.3 가족 보존 프로그램의 개발
209 4.4 서비스 제공

209 4.5 다른 자원의 활용
209 4.6 협력 협정
210 4.7 인가단체의 이용

211 부속서 5 :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
212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1994년 10월 21일 채택)

214 부속서 6 : 조직도
215 도입과 설명
216 1993 헤이그 국제 입양협약에 따른 조직과 책임

222 부속서 7 : 권고 양식
223 권고 양식 - 입양 동의서
225 권고 양식 - 국제 입양 준수 증명서
227 표준 양식 - 아동에 관한 의료보고서
231 표준 양식 - 아동에 관한 일반적인 의료보고서의 추가보고서

233 부속서 8 : 협약 이행에 관한 1994 확인 목록

241 부속서 9 :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와 아동의 법적 보호
242 언론 발표

244 부속서 10 : 국제 입양에 대한 유니세프의 입장 2007년 성명서
245 성명서 2007

247 협약 조항 색인

용어정리

인가단체(Accredited body) :

협약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인가 절차를 거치고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입양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국가가 부과한 인가 기준을 충족하고, 중앙당국을 대신하거나 중앙당국과 함께 협약의 특정 기능을 이행 함.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Approved(non-accredited) person) :

중앙당국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약 제22조(2)항에 따라 임명된 개인(혹은 기관). 이러한 개인(혹은 기관)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것은 아니나 제22조(2)항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4장 4.4절을 참조.

당국(Authority) :

중앙당국, 권한당국, 공공당국의 정의 확인.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 최선의 이익은 각 사례 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다양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는 국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해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되어야 함. 협약에 포함된 이러한 요건들은 아동을 친가족과 유지시키거나 재결합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내의 해결책을 먼저 고려하고(보충성의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입양에 필요한 동의 여부 획득 확인,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정보 보존,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면밀한 평가, 적합한 가정에 아동 결연, 입양 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망 구축, 전문적 서비스 제공. 설명서(The Explanatory Report)* 제50항에서는 "'최선'이라는 단어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일부 건전한 입양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선'이라는 단어는 해당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혹은 '진정한' 이익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패러아구렝(G. Parra-Aranguren)이 작성한 "아동보호와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의 헤이그 협약 설명서", 17차 세션 과정, 2권, "입양-협력" pp.539-651 참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설명서"에서도 볼 수 있음.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

협약 제7조, 제8조, 제33조의 의무 이행을 위해 제6조에 따라 체약국이 지정한 사무소 또는 기관. 중앙당국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다른 기관(공공기관 또는 인가단체)이 있지 않는 한, 제9조와 제14조~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4장 : 제도적 구조 :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를 참조.

권한당국(Competent authority) :

권한당국은 협약에서 규정한 해당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약국이 임명한 당국임. 일부 의무의 경우, 권한당국은 반드시 공공당국이어야 함.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종 입양 명령을 내리는 권한당국은 법원이며 몇몇 국가의 경우는 행정당국(공공기관)임. 입양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제23조의 인증 시, 체약국은 협약의 수탁자에게(네덜란드 외무부) 제23조에 따른 인증 권한을 가진 당국의 이름을 공지해야 함.

불법 입양(Illegal adoption) :

이 지침에서, '불법 입양'은 아동의 탈취, 매매, 거래 혹은 기타 불법적 행위와 같은 아동학대로 말미암은 입양을 의미함. 협약이 추구하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임*. 2004년 12월 26일 아시안 아프리칸 쓰나미 재난 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은 "아동과 그 가족들은 1993년 5월 29일 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의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시기상조의 또는 준비되지 않은 해외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음.

독립 입양(Independent adoption) :

이 지침에서, '독립 입양'은 예비입양부모가 자국의 중앙당국이나 권한당국에 의해 입양 자격이 있거나 적합하다고 승인받은 경우를 의미함. 이러한 승인을 받은 예비입양부모는 출신국의 중앙당국이나 권한당국의 지원 없이 입양할 아동을 찾기 위해 독립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함. 독립 입양은 모범 관행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독립 입양은 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제23조에 따라 입양으로 인증될 수 없음. 사적 입양(private adoption)은 결코 제23조에 의한 인증을 받을 수 없음. 실제로 독립 입양과 사적 입양의 용어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함.

결연 (Matching) :

이 용어는 프랑스어로 이를 표현할 적절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에는 사용되지 않음. 본 지침의 프랑스어 버전에서 이 용어는 "apparentement"로 번역되었으며, 용어정리에 명시되어 있음. 결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7장 7.2.5절 참조.

---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패러아구렌(G. Parra-Aranguren)이 작성한 "아동보호와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의 헤이그협약 설명서", 17차 세션 과정, 2권, "입양-협력" pp.539-651 para. 70 참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국제 입양섹션"과 "설명서"에서도 볼 수 있음.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 :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에 대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국.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음 : secretariat@hcch.net

배치(Placement) :

이 지침에서 배치는 결연 이후, 그리고 특정 입양부모에게 특정 아동을 '위탁(물리적 인계)'하기 전 단계를 의미함. 또한, '위탁'과 최종 입양 명령 사이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함.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구상중인 배치"가 제16조(1) d)에 따른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수령국의 입양가족과 중앙당국은 제안된 배치를 수락하기 전 반드시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사적 입양(Private adoption) :

이 지침에서 '사적 입양'은 입양이 한 체약국의 친생부모와 다른 체약국의 입양부모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친부모와 입양부모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입양이 만약 제2조에 명시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특히, 해당 아동이 출신국에서 수령국으로 이동했거나 이동 중일 것임)에는 협약의 범위에 속하나, 이러한 입양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음. 이 지침에서는 순수한 사적 입양과 독립 입양(상기 정의 참조) 간의 차이를 두고 있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8장 8.6.6절 참조.

공공당국(Public authority) :

정부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국이나 기관. 정부 부처 내에 위치할 수도 있고 독립된 법적 당국일 수도 있음. 공공당국은 정부 기관으로서 정부에 의해 자금을 충당하며 정부에 책임이 있음.

일반 입양(Simple adoption) :

일반 입양은 입양 전에 존재하던 부모자녀 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에 새로운 법적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을 의미하며, 입양부모는 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지게 됨.

개 관

001.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은 협약의 목적인 국제 입양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각 국가(체약국 여부와 관계없이)들이 협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의해 협약 후속 지원 프로젝트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이며,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의 계획, 수립,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체약국의 상황에 따라 이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지침이 언제나 최선의 모범 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각 체약국마다 각자의 자원과 기술에 차이가 있고, 각 국가별 장단점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비록 모든 국가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지침의 이행이 협약의 전반적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 지침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안들은 비준이나 가입 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 협약 이행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협약 이행의 실제적 또는 법적 측면에 대한 지침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 행정전문가, 사례관리자, 기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또한 이 지침을 활용하여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02. 이 지침은 또한 자국 기존 입양 절차의 개선을 바라는 체약국을 위한 모범이행 기준 설정, 또는 이 지침의 모범 이행과 비교하여 추가 자원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당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지침은 잘못된 관행 및 절차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중앙당국이 협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국제 입양을 결정하는 수령국과 출신국의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건에서 협약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003. 국제 입양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국내의 아동보육 및 보호전략의 일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협약의 발효 이전에 국가가 반드시 국내외 입양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은 법적・행정적 체계에 대한 적절한 준비(법률 및 절차 이행, 당국 설립, 인적·물적 자원 조달 등)를 권장하고 있다.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준비 작업은 비준이나 가입 후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004. 이 지침은 새롭게 수립 및 개발되는 중앙당국들이 출발 시점에서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경험적으로, 현재 운영 체계의 현실과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고려한 면밀한 계획과 점진적 이행을 통해 체약국들은 국제 입양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05. 이 지침은 윤리적인 국제 입양 이행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수령국과 출신국이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며 이는 국내 아동 양육 및 보호 체계 발전, 국제 입양에 대한 윤리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접근을 뒷받침해주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006. 이 지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구조를 다루는 '협약의 프레임'이며, 제2부는 국제 입양의 절차 이행 및 법적 이슈와 입양사후 서비스를 다룬 '아동보호의 프레임(국내 및 국제적 기반)'이며, 제3부는 부속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협약의 원칙과 구조의 폭넓은 틀을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모범 이행을 통한 아동 보호의 기반 및 각 사례에 적용되는 절차를 검토함으로써 국내외 혹은 지역을 망라하여 협약 이행 정책 및 실행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개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07. 지침은 국제 입양의 모범적 이행을 옹호하기 위한 여러 자원들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과 협약의 설명서는 어떤 것이 필수 모범 이행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권고 역시 참고해야 할 자료이다. 이 권고는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국가들의 동의로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약을 위한 모범 이행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타 모범 이행은 특별위원회 설문지 응답과 중앙당국, 인가단체, 경험이 있는 정부 기관이 제공한 정보로부터 유래했다. 법적 이슈에 관한 장에 나와 있는 이행들은 특정 요청에 대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자문에서 얻은 것이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이러한 자료들과 국가들의 기존 이행을 종합하여, 협약의 목적달성을 원활하게 하느냐 아니면 보호망을 저해하거나 우회하느냐에 따라, 이 지침에서 따라야 할 이행과 피해야 할 이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008. 200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작업 완료 지침과 함께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초안을 승인 권고하였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특별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009. 전문가 집단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국가는 국제사회봉사회와 북유럽 입양 이사회,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독일, 인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미국과 남아프리카이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벨기에의 앤 오트베라(Anne Ottevaera), 캐나다의 패트리샤 폴칼슨(Patricia Paul-Carlson), 중국의 리우캉쉥(Liu Kang Sheng), 독일의 안젤리카 슈렁크(Angelika Schlunck), 리투아니아의 오데타 타비덴스(Odeta Tarvydience), 노르웨이의 모르텐 스테판센(Morten Stephansen), 미국의 존 벨리프(John Ballif), 국제사회봉사회의 선임 이자벨라 라메런트(Isabella Lammerant)와 후임 에르베 보에샤(Hervé Boéchat), 북유럽 입양이사회의 스텐줄 피터슨(Sten Juul Petersen)에게 특히 감사를 표한다.

010.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또한 2004년 9월 헤이그에서 만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를 위해 지침의 초기 초안을 작성한 트리쉬 매스큐(Trish Maskew), 2005년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 특별위원회가 검토할 지침 초안을 작성하고, 지침 출간 작업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협업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수석 법무관 제니퍼 드겔링(Jennifer Degeling), 지침 마련의 과정에서 조언을 주신 한스 반룬(Hans van Loon) 사무총장과 윌리엄 던칸(William Duncan) 부사무총장, 입양 프로그램 기획자 로라 마르티네즈-모라(Laura Martínez-Mora), 주석과 출간 준비를 담당해주신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국제 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의 입양프로그램 부행정실장 소피 몰리나(Sophie Molina)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011. 이 지침은 특정 국가나 중앙당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협약의 조항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게 자국의 관행을 검토하고,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수정할 것을 권장한다. 기존 및 신규 중앙당국 모두에게 협약의 실행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의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제1부

협약의 기초

012. 본 지침의 제1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기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 탈취 및 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당국 간 협력의 기반 마련, 국제 입양 승인을 위한 권한당국의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제1부는 체약국이 설립하고, 협약에 따른 원칙을 이행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구조(중앙당국 및 인가단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부에서는 국제 입양비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방지하여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는 기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제1장 : 기본 요건

1.1 협약의 필요성

013.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 입양의 급증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 입양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제 입양의 급증으로 아동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하고 복잡한 인적・법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할 국내 및 국제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다자적인 접근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었다.[1)]

014. 1987년 12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 사무국은 국제 입양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다.[2)] 이 문서는 1965년 헤이그 국제 입양 협약[3)]의 결점을 분석하고 국제 입양에 대한 실질적 보호망 및 출신국과 수령국 간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015.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한 설명서(Explanatory Report)는 국제 입양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 1989년 11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작성한 문서(Memorandum)에서 인정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들을 거론하였다;

(a) 국제 입양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 수립의 필요성(어떤 경우 이러한 입양이 적절한지, 입양자와 관련된 동의 및 협의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지 등)

(b) 이러한 기준의 준수를 위한 감독시스템의 필요성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사기, 협박, 금전적 보상에 의한 입양으로부터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것인지, 아동의 출신국과 수령국 양국의 국제 입양 기구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등)

(c) 아동의 출신국과 이들이 입양 후 거주할 국가의 당국 간 의사소통 채널 수립의 필요성(예컨대, 다자간 협약을 통해 국제 입양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중앙당국의

1)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패러아구렌(G. Parra-Aranguren)이 작성한 "아동보호와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의 헤이그협약 설명서", 17차 세션 과정, 2권, "입양-협력" pp.539-651 para.6 참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설명서"에서도 볼 수 있음. (이하 "설명서"). 또한 반룬(H. van Loon)의,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해외 입양 보고서",1990년 4월 1일 문서번호 1, 17차 세션 과정, 2권, "입양-협력", pp.11-119도 참조..

2) 반룬(H. van Loon)이 1998년 1월 특별위원회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국제 입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약 준비의 필요성", 1987년 12월 문서 9호, 제16차 세션 과정, 1권, 기타사항, pp. 165 이하 참조.

3) 입양 관련 관할권, 관련법, 법원결정의 인정에 관한 1965년 11월 15일 헤이그 협약.

시스템을 마련)

(d) 출신국과 입양 후 거주국 간 협력의 필요성(상호 존중 및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의 준수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이들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음. 이러한 협력이 이미 이루어져 양국 모두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하고 있음).[4]

1.2 협약의 역사

016. 1988년 10월에 열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16차 회기에서 새로운 협약에 관한 작업을 17차 외교회의 작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협약 준비 과정에서 비체약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중요시 하도록 했다.[5] 외교회의 준비로 1990년, 1991년, 1992년에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17차 회의는 1993년 5월 10일에 개최되었고 협약의 초안이 총회에서 검토되어 1993년 5월 29일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017. 국제 입양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였으나, 참여국들은 전 세계의 가정이 없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가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로 하나가 되었다.[6]

018. 참여국들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국제 입양은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동이 자신이 출생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동의 출신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한다. 이것 역시 불가능할 경우에 국제 입양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을 연결시켜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국들은 국제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과 남용 근절을 위해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였다.[7]

019. 최대한 많은 참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며 국제협력의 틀을 수립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993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은 다른 나라로의 아동의 배치가 권한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8] 제21조 (e)항의 목적을 달성한다.

4) 설명서, supra, note 1, para. 7 참조.
5) 상게서, para. 8.
6) 반룬(H. van Loon), <국제 입양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아동보호 Recueil des cours de l'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Vol. 244 (1993-VII), p. 335, para. 181.
7) 설명서, supra, note 1, paras 37-54 참조.
8) 1989년 11월 20일 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링크 < www.ohchr.org > (이하, UNCRC.)

020. 사실상,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실질적인 보호망과 절차[9]를 추가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전반적인 원칙들과 규범들을 정리, 강화 및 확대하고 있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 법률의 표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동 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시 하면서, 동시에 원가정과 입양가정의 권리 또한 존중하고 있다.

021. 그리하여, 명백하게 상이한 목표들을 모두 합한 참신한 특별협약이 마련되었다. 특별협약은 인권, 사법 및 행정적 협력, 국제사법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022. 그 결과는 전문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 "협약 체약국들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행복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분위기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며,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 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 국제 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국제 문서,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과 국내·외 양육위탁과 입양을 특별히 언급하는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유엔선언(1986년 12월 3일의 총회 결의 41/85)에서 정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공통의 규칙을 정립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023. 협약 승인의 중요성과 함께 모든 참가국들은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 기관 그리고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협약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10], 특히 출신국들이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11]

024. 협약 승인 후, 협약을 이행한 국가들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출신국의 어려움이 컸으며, 이들 국가가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이행 지침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025. 협약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세 번의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회의는 협약

9) 반룬(H. van Loon), supra, note 6 참조. 또한 던칸(W. Duncan), <국제 입양에서 아동권리보호 (L. Heffernan (ed.), 인권. 유럽의 관점에서>, 라운드홀 프레스 / 아일랜드 유럽법률센터, 1994.

10) 반룬(H. van Loon), supra, note 6, p. 371, para. 255 참조.

11) 던칸(W. Duncan), "국제 입양의 규제 – 국제적인 관점", 제3장 A. Bainham, D. Pearl (eds.), 가족법의 경계, John Wiley and Sons, 1993.

실행에 관한[12] 이슈와 난민아동[13]에 대한 적용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개최되었고, 두 번째 회의는 협약의 실제적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2000년에 개최되었다.[14] 2005년에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Guide to Good Practice) 초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15]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에서는 다수의 중요한 결론과 권고사항들 그리고 이 지침에서 언급된 표준 양식들이 마련되었다.

1.3 협약의 목적

026. 협약의 목적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출신국과 수령국의 당국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며, 국제 입양에 대한 국제 사법을 통일하는 다자간 협약을 만드는 것이다.

1.4 협약 당사국이 되기 위해 고려할 사항

027. 협약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협약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국의 역량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은 기존 국내 법률 및 행정 체계가 협약의 이행과 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와 필수적인 법률 개정에 필요한 일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협약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한 지원 및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상이한 이해당사자 간, 특히 정부와 비정부기관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연방국가의 경우, 협약의 일관적인 이행을 위해 주(州), 영도, 지역의 충분한 지지, 동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8. 협약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속서 1: 서명, 비준/가입에 대한 상세 설명에 명시되어 있다.

12)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작성한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에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18차 세션 과정, 1권, 기타사항, pp.277-315 참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특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음(이하,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13) 상게서. paras 10-14. 본 지침 부속서 5 난민아동에 대한 권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국제 입양섹션"과 "특별위원회"

14)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협약의 실제 운영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및 결론", 19차 세션 과정 1권 기타 사항, pp.481 및 seq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특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음 (이하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15) 2006년 8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작성한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의 실제 운영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및 결론"(2005년 9월 17일 - 23일)", 제언1 참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특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음. (이하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1.5 현황 평가

029. 국가는 부모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 예비입양부모 평가 및 준비 절차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계획 등, 현 입양 관행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어떻게 중앙당국을 설립할 것인지,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활용할 것인지, 아동보호와 입양 정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030. 평가에는 국제 입양이 되어야 하는 입양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아동의 수, 나이, 프로필 및 장애); 원가정 보존과 재결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일체, 현재 국내 입양 프로그램 또는 아동 양육서비스, 현 입양 관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031. 또한 현 절차의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분석 역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6 이행 계획

032. 평가가 마무리 되면, 국가는 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 및 변화, 협약 발효와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간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033. 이러한 결정을 보면 중앙당국으로 지명될 곳과 중앙당국에 할당될 자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는 공공당국, 인가단체 또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당국 및 인가단체와 관련된 사항들은 제4장: 제도의 구조: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034. 현재 입양 및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내부평가 그리고 협약의 원칙 및 요건 검토 후, 국가는 점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새로 가입하는 체약국 그리고 아동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이점을 확인한 기존 협약 당사국에게 유의미한 것일 수 있다.

1.7 이행 계획 수립

035.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평가전략, 메커니즘, 도구의 개발
- 내부 상황 평가
- 내부 평가 결과 검토
- 긴급조치 필요여부 결정
- 장기계획 수립
- 단기계획 수립
- 서면 이행계획 작성
- 계획 이행을 위한 자원 할당
- 상시 평가 및 통제에 대한 관리

036.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지침의 부속문서 2를 참조.

[이행 과정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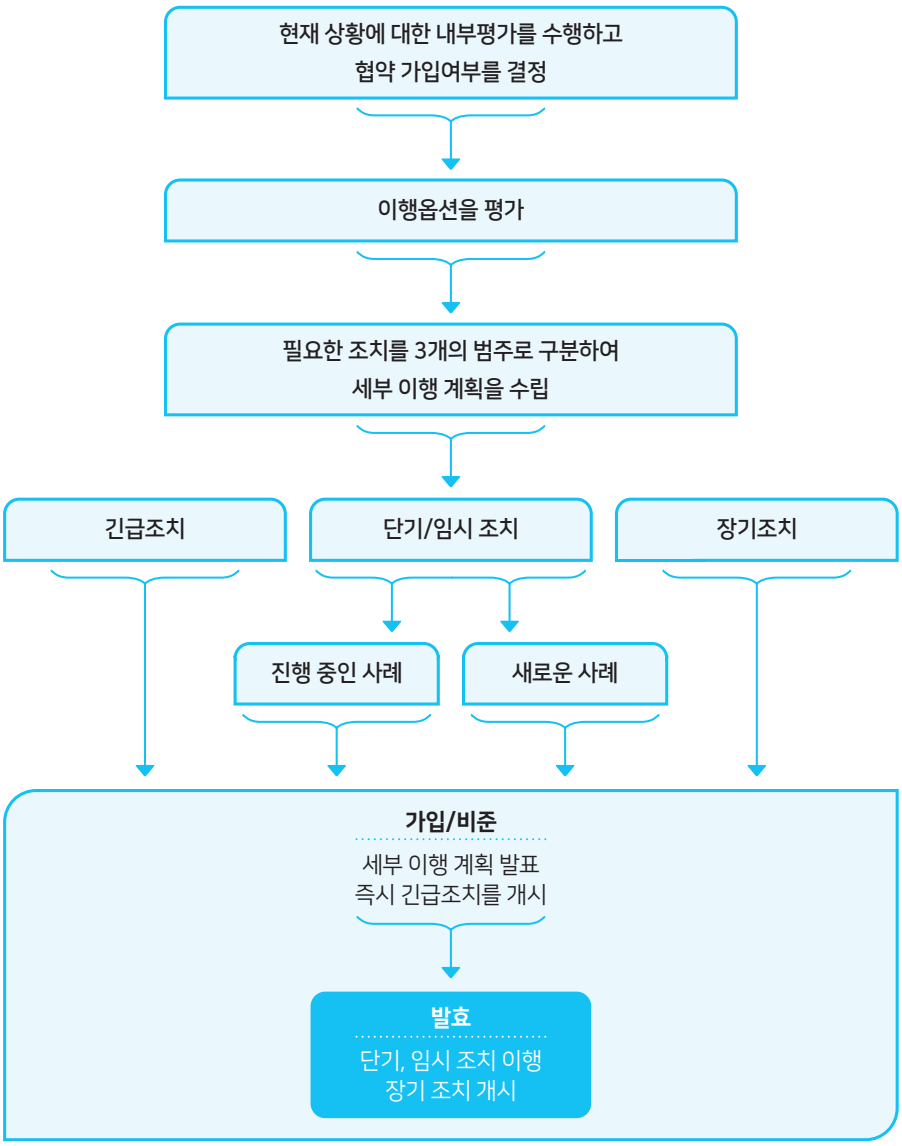
현재 상황에 대한 내부평가를 수행하고
협약 가입여부를 결정
이행옵션을 평가
필요한 조치를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긴급조치
단기/임시 조치
장기조치
진행 중인 사례
새로운 사례
가입/비준
세부 이행 계획 발표
즉시 긴급조치를 개시
발효
단기, 임시 조치 이행
장기 조치 개시

제2장 : 협약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의 개요

2.1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입양의 보장

2.1.1 보충성
2.1.2 차별금지
2.1.3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한 조치

2.2 입양 시 탈취, 아동 탈취 및 매매 방지를 위한 보호망 탈취 구축

2.2.1 가족 보호
2.2.2 아동의 탈취, 유괴, 매매 척결
2.2.3 적절한 동의
2.2.4 부적절한 이득과 부패 방지

2.3 국가 간 협력 구축

2.3.1 중앙당국 간 협력
2.3.2 협약 절차에 관한 협력
2.3.3 협약의 남용과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2.4 권한당국의 권한 보장(UNCRC, 제21조 (a)항)

2.4.1 권한당국
2.4.2 중앙당국
2.4.3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037. 이 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절차 및 기타 조치를 마련할 때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일반 원칙들을 포괄적인 맥락에서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역 또는 양자 간의 문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원칙은 핵심 이행 원칙에 의해 보완된다(제3장 참조).

038. 일반 원칙은 전반적인 협약 이행을 안내하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된다. 협약 서문에 이러한 원칙들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문이 특정 상황에 협약을 적용하는 경우 해석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어떤 원칙들은 개별 조항(특히 협약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039. 협약의 일반 원칙은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원칙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개발, 행정 절차와 실제적인 측면 등을 포함한 체계 내에서의 국제 입양의 역할은 이 지침의 제2부 제6장과 7장 '아동보호의 프레임'에서 논의된다.

040. 핵심 이행 원칙들은 본 지침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협약 절차의 상시적 운영, 문서 파일 관리 및 기타 요청사항 처리에 적용된다. 또한 중앙당국과 권한당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수립 또는 지정되는 경우 이러한 원칙들을 유념해야 한다.

2.1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입양의 보장

041. 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아동 최선의 이익과 국제 법률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다.[17]

042. 협약 서문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이 언급되어 있다. 동 협약의 후반부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권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아동에게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8]
-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 및 법적 후견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재산, 장애, 출생이나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19]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아동의 의견은 해당 아동의 연령과**

16)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6 참조.
17) 제1조 a)항
18) UNCRC, supra, note 8, 제3조 (1)항.
19) 상게서, 제2조 (1)항.

성숙도에 따라 그 비중을 정한다.[20)]

043. 국제 입양에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다음을 명시하였다.

- 아동은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21)]
- 영구 조치는 임시 조치보다 선호된다.[22)]
- 국제 입양은 출신국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 가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3)]

044. 체약국과 중앙당국은 협약 적용 시 아동의 기본권을 무시하기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045. 협약이 어떻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아동의 기본권을 지지하고 있는가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2.1.1 보충성

046. 보충성의 원칙은 협약 서문과 제4조 b)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047. "보충성"은 협약의 당사국이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친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친가족 또는 친인척의 양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출신국 내에서의 기타 형태의 영구적인 가정 양육을 고려해야 한다. 출신국 내 가능한 조치가 모두 고려된 후에 국제 입양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일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국제 입양이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20) 상게서, 제12조 (1)항
21) 협약 서문과 UNCRC 서문 supra, note 8 참조.
22) 설명서, supra note 1, para. 43 참조, 또한 UNCRC, supra, note 8, 제20조 (3)항 참조.
23) 협약 서문 참조

제공할 수 있다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24] 국제 입양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열려있는 양육 선택사항 중 하나이다.[25]

048. 보충성의 원칙은 협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이는 아동의 가족이 유지되거나 재결합 하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출신국 내에서 입양 또는 양육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또한 국제 입양 절차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통합 아동보호 및 양육시스템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국제 입양을 통한 영구적인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아동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가정이 없는 각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계획이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정책은 국제입양의 저지보다 원가정 보호와 국내 해결책 강구를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049. 이 지침은 국제 입양이 포괄적인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내에 포함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법안 마련, 상호보완적 절차,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위기가정지원, 가족으로부터 아동의 분리 예방, 원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양육, 국내 입양, 위탁과 거주 보호 등의 임시 조치를 포함한다. 국내 및 국제 입양을 위한 결연은, 아동과 입양 가정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결연 절차의 이행 방식이 해당 아동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건별로 최대한 단시간 이내에 전문적, 다면적, 정성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보충성 원칙의 체계적인 이행이 포함된다.

050. 협약은 출신국 내 아동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모든 배치 가능성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이는 비현실적이며 당국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아동을 위한 국외의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가능성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다.

051. 보충성의 원칙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친인척에 의한 영구 보호는 바람직하나, 양육자가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양육에 부적합하거나 해당 아동의 필요(의료 요구 등)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국내 입양 또는 기타 영구적인 가정 양육이 바람직하나, 적절한 국내**

24) 예컨대,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와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의 실제적 운영에 대한 2005년 질문지 4(b) 대한 칠레,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인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응답을 참조. 질문지와 응답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 > "국제 입양 섹션"과 "특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음.(이하 '2005년 질문지').

25) 이 지침 부속서 10의 국제 입양에 대한 유니세프의 입장 발표문, <www.hcch.net>의 "국제 입양섹션" 과 "관련 문서 및 링크"

입양가정이나 양육자가 부재하고, 해외에 영구 배치할 수 있는 적합한 가정이 존재할 경우 아동을 시설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

- 출신국에서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는 것은 긍정적이나, 대부분의 경우 출신국 내의 가정에서 임시적으로 양육되는 것은 해외의 영구 가정에서의 양육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다.
- 영구 보호의 옵션으로서의 시설보호는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052. 친족 간 입양(친척에 의한 입양)은 협약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이 지침의 제8장 6.4절 참조). 출신국 내 가정과 외국에 거주하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아동에 최선이 되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정이 동일하게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외국에 거주하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에게 양육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협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보충성이라기보다는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이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3. '보충성'의 정확한 해석은 국제 입양을 '마지막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이는 협약의 목적이 아니다. 영구적으로 시설에 남아있거나 여러 임시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등의 국내 해결책은 대부분의 경우, 국제 입양보다 우선시 되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보호를 '마지막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27)]

2.1.2 차별금지

054.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21조 (c)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1조 (c)항은 체약국들에게 국제 입양이 고려되는 아동에 국내 입양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망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055. 동 협약 제2조는 일반적인 차별금지 조항으로 체약국이 아동의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관할권 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또는 국제 입양 대상 아동들은 다른 아동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28)]

26) 한 출신국은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유기아동, 고아아동, 극빈 부모의 자녀와 같은 많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해결책 미흡으로 당시 이러한 아동들에게 국제 입양이 최선의 해결책이었음을 밝힘.

27) 유니세프 발표문, supra, note 25.

28) 국가는 또한 국내 입양된 아동이 받는 법적, 사회 심리적 서비스 및 절차의 혜택이 국제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함. 국제사회서비스 / 부모를 잃은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연구센터(이하 ISS/IRC), "사설: 아동은 평등하다: 입양에 차별금지 원칙 적용되어야", 월간 리뷰 2/2005호, 2005년 2월.

056.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26조 (2)항은 협약에 따라 기존 부모자녀 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입양으로 인한 해당 아동의 권리는 수령국 국내법에 따른 유사한 입양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와 동등한 것이어야 함을 취지로, 보다 구체적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057. 국제 입양의 맥락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입양 아동의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취약하고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약국은 장애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2.1.3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한 조치

058.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명시된 여러 특별 조치들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 원칙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1.3.1 아동의 입양 가능성 보장 – 협약 제2장과 제4장의 요건 충족

059. 입양에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아동 탈취, 매매 또는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아동이 진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60. 협약은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의무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 a)항의 의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을 요한다. '입양 가능한' 또는 '입양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29] 입양 가능성을 규정하는 절차는 제7장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2.1.3.2 정보 보존

061.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아동의 출신, 배경, 가족력과 의료기록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장・단기 이익은 협약 제9조 a)항과 제30조에 명시된 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유기된 아동과 그들의 개인적 정보 유실에 관한 제6장 1.2절을 참조).

29) 이 문제는 이행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룬 제8장(8.4.2, 8.6절)에서 다시 논의한다.

062. 아동에 대한 일반 정보를 통해 해당 아동의 과거를 알 수 있으며, 출생과 정체성,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언제라도 모국에 돌아왔을 때 개인적인 연결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063. 아동의 의료기록은 아동의 현재 건강상태와 아동기 동안 혹은 그 이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진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의 보관은 제9장 9.1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2.1.3.3 적합한 가정과의 결연

064. 아동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입양부모 및 가족을 결연시키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아동 입양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065. 결연은 예비입양부모가 끌리는 아동을 직접 혹은 사진 목록을 통해 선택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진 목록은 예비입양부모의 아동 입양 촉진 및 관심 촉발에 유용한 방법일 수 있으나, 출신국은 실제 결연 결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아동의 필요가 예비입양부모의 자질과 잘 맞는 조합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연은 컴퓨터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연 절차는 제6장과 제7장(6.4.6, 7.2.5, 7.2.7, 7.4.6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2.2 입양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보호망 구축

066. 협약의 중요한 목적은:

> "보호망이 마련되어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될 수 있도록 체약국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30]

067. 이를 위하여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공공당국을 통하여 입양과 관련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및 기타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가지 예방적 조치가 아래 언급되어 있다.[31]

30) 제1조 b)항
31) 제8조

06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이 기본적인 보호망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
> (a) 아동의 입양은 권한당국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당국은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과 관련한 아동의 신분을 고려할 때 입양이 허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입양자가 관계자들의 필요한 협의를 거쳐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하였음을 결정하게 된다."

069. 협약의 남용을 방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는 제10장 협약 남용방지에서 논의할 것이다.

2.2.1 가족의 보호

070. 가족 보호는 입양의 목적을 위해 협약에서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보호망 중 하나이다. 가족과 아동은 보다 교묘한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며 친가족에게 아동을 포기하도록 부당한 압력, 강제, 유도, 교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조치도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제2장 2.2.3절 적절한 동의 부분을 참조). 협약은 아동 입양을 위한 배치 결정은 금전 지급 또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에 의해 유도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32]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는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의 문제와 관련되며 각국의 이행 조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071.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33]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및 이행은 헤이그 협약 등의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국내 및 국제 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교사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34]

2.2.2 아동 탈취, 유괴, 매매 척결

072. 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약의 기본 목적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망 구축과 이의 준수를 위한 체약국 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러므로 협약은 '아동의 탈취, 매매

32) 제4조 c)(3)와 d)(4)항

33) 2000년 5월 25일 총회 결의로 채택된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서의 선택의정서 A/RES/54/263. <www.ohchr.org> (이하 아동 매매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서의 선택 의정서).

34) ISS/IRC, 뉴스 공지 No 49, 2002년 8월. 이 의정서의 비준 현황에 관한 업데이트는 <www.ohchr.org> 아동 권리에 관한 인권 기구 및 위원회 참조.

또는 거래'를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방지한다. 그 이유는 협약의 준수를 통해 이러한 남용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35]

073. 협약을 위한 사전 작업에서, "선진국의 아동에 대한 수요와 개도국의 가정이 없는 많은 아동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제 입양 외에 해외 입양을 위한 또는 입양을 명분으로 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의 국제적인 아동 매매 관행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36]

074. 이러한 맥락의 아동 매매는 불법 입양을 초래할 수 있다. 입양을 위한 아동의 탈취나 매매가 단발성 사건으로 일어 날 수 있다. 입양을 위해 아동을 탈취하거나 거래와 다름없이 아동을 사고파는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37] 여기서 '거래'란 불법 입양 또는 기타 착취를 위해 아동의 불법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38] 이는 모두 범죄에 해당하며, 각 체약국은 자국 형사법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엄격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39] 사법 제도를 통해 이러한 범죄자를 척결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 입양"의 의미는 용어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협약 협상 기간 동안, 국제 경찰(인터폴)은 "엄격한 국제 민사 및 행정절차 수립이 국제 입양 절차를 아동 매매 또는 아동의 국가 간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중앙당국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를 관계 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제경찰이나 사법 당국의 협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40]

075. 수령국과 출신국은 입양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탈취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 정책에서 아동의 탈취를 통한 입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076. 국가가 형법상의 제재가 있으며 이러한 제재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타 당국, 인가단체 또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에 기반을 둔 이러한 정보는 향후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례 발생을 방지하는 강력한 보호망이 된다.

---

35)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2.

36) 반룬(H. van Loon), supra, note 1, para. 78.

37) 예를 들어 스몰린(D. Smolin), 아동세탁: 국제 입양이 아동 매매, 납치 및 탈취 관행을 어떻게 합리화 및 장려하는가, The Wayne Law Review, Vol. 52(1), Spring 2006, pp.113-200 참조. 또한 ISS/IRC, 사설: 국제 입양은 아동 착취를 위한 아동의 매매와 연계되어 있는가?, 월간 리뷰 11-12/2005호, 2005년 11월-12월.

38) 인신 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 매매 방지, 감소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참조. 동 의정서는 국제 조직범죄에 대한 유엔협약을 보충하는 것임. <www.ohchr.org> 참조, 동 협약 제3조 (a)항에서는,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어떤 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위협, 무력행사, 기타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남용, 취약한 입지 악용, 금전 및 이익 수수의 방법을 통해 그를 모집, 이동, 이전, 포섭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매춘을 착취하거나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및 서비스, 부역, 부역과 유사한 관행, 노예상태 또는 장기 제거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4를 참조.

39)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불법 중개기관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이 부과되며(형법 제391조), 칠레의 경우 입양 촉진을 위한 금전 지급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이 부과되고 있다(아동입양법 19.620/1999 제42조). 리투아니아의 경우, 아동 매매에 최대 징역 8년형을 부과(형법 제157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응답을 참조.

4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4 참조.

2.2.3 적절한 동의의 보장

077. 협약에서 입양에 대한 적절한 동의 획득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동 탈취, 매매 또는 거래 척결을 위해 긴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동의 획득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아동의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제4조 c)(1)항)에 명시된 개인,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
- **동의를 하는 자가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결과나 효과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41]
- **자유롭게 동의를 하고, 금전적인 보상 등으로 동의를 유도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동의를 획득하지 않았음을 확인**[42]
- **친모는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동의할 수 없도록 함**[43]
- **필요한 경우 아동의 동의를 받도록 함.**[44]

078. 출신국이 적절한 동의가 획득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45] 동의에 대한 확인은 주로 현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의 절차를 감독하는데 신뢰할 수 있고 윤리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입양 동의 절차에서 해외 인가단체, 개인 또는 이들을 대신하는 중개자들이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이들을 감독해야 한다. 특히 친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종료되는 입양이 문화적으로 생소한 국가의 경우 이러한 감독 조치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입양 절차의 영향은 면밀히 연구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079. 수령국은 반드시 그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수령국은 높은 수준의 윤리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을 입양 담당자 또는 입양기관으로 인가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수령국은 이러한 기관이나 개인의 국내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수령국이 자국의 인가단체 또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출신국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면, 수령국은 해당 기관 및 개인의 승인과 인가 철회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46]

080.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입양에 대한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41) 예를 들어, 콜롬비아(2006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66조)는 친부모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아동의 출생 1개월 후에 동의를 할 수 있음. 케냐 (2001년 아동법 제163.1조)의 경우, 친부모는 입양 명령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친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 마다가스카르의 경우(2005년 입양법 제42조), 조건부 양육 명령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동의를 구하며, 동의하는 자에 대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을 제공해야 함. 벨기에(민법 제348.4조) 그리고 헝가리와 네덜란드의 2005년 질문지 4(d)에 대한 응답을 참조: 헝가리에서는 어머니가 동의 후 6주 이내에 동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네덜란드의 경우 친생부모는 결정 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60일 이상 가지게 됨.

42) 제4조 c)(3), d)(4)항.

43) 제4조 c)(4)항.

44) 제4조 d)항

45) 2005년 질문지 4(c)에 대하여, 핀란드는 모든 출신국이 생모의 동의서 사본을 송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

46) 예를 들어 스페인(2007년 국제 입양법 제7조) 그리고 2005년 질문지 6(1)(f)에 대한 덴마크와 핀란드의 응답, 중앙당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인가를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덴마크 국가입양위원회는 인가단체의 해외 활동을 감독한다."

한다.[47] 상담 등의 입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48] 입양이 이루어지면 부모, 시설의 친구 또는 관계자 등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므로 이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어,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081. 199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가 승인하고 1995년 3월 특별위원회 보고서 부속서 B[49]에 게재된 "동의서 양식"의 이용을 권장한다. 동 양식은 본 지침 부속서 7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에도 있다 :
국제 입양섹션의 <www.hcch.net>/협약/권장 양식.

2.2.3.1 유도하지 않은 동의 획득

082. 출신국은 담당자, 기관 또는 당국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50]

083. 입양을 위해 아동을 포기하는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나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부적절한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084. 유인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모범 이행은 동의가 필요한 자와의 상담과 독립적인 면담을 포함하는 동의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출신국은 적절한 동의가 획득되었고 이러한 동의 획득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51] 수령국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인가단체 또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그리고 이들 대리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가단체나 수령국은 일반적으로 제16조 (2)항에 명시된 필수 동의가 획득되었다는 증빙을 받게 되며,[52] 경우에 따라 동의한 자의 신원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2.2.3.2 유인 방지

085. 주요 우려 사항은 금전 지급을 대가로 아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가족을 적극적으로 찾는

47) 제4 d)조 2005년 질문지 4 d)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몇몇 응답국의 법안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48) 제4조 d)(1)항
49)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5 참조.
50) 제4조 c)(3)항. 예를 들어 에콰도르(200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61조와 162조), 과테말라(2007년 입양법 제35조 d항), 필리핀(1998년 국내입양법(RA 8552), 제3조 9절, 제7조 21절).
51)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76 참조.
52) 미국의 "2000년 국제 입양법에 따른 기관 인가 및 개인 승인" (22 CFR Part 96) 그리고 "국제 입양 – 협약기록의 보존" (22 CFR Part 98)의 최종 규정, 연방 정부 공보,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Vol. 71, 31호, 96.46(c)(1)절.

입양서비스 제공자, 변호사 혹은 고아원이 고용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관행이다.[53]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리인과 중개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공식 직원이 아니며,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려우나, 이들의 능력이나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지책을 마련할 수는 있다.

086. 입양법이나 규정 이행에 유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도 있다.[54] 몇몇 국가는 국내 입양을 규제하는 법에 이러한 금지 내용을 포함시켰다.[55] 또한 많은 국가가 이러한 활동들을 단속하는 민・형사상 처벌을 사용하여 아동 매매자들을 조사 및 기소하고 있다.[56]

087.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입양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한 결과로 야기되는 아동의 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 간 그리고 국가들의 공동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57]

2.2.3.3 친가족 비용 지불

088. 적절한 안전망을 결정할 때, 국가는 출신가정에 대한 직접적 비용 지불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 일부 국가들은 가족에게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58] 그러나 이러한 보상을 허용함으로써 입양 결정이 유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59] 보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가족 유지 및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유도 예방을 위해 법률, 의료, 서류, 번역, 이동 관련 비용이 규제되도록 해야 한다.[60]

53) 과테말라의 이전 법률제도 하에서 이는 흔한 문제였음.

54) 또한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칠레의 응답을 참조: 아동입양법 제 42조는 간청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특히 에콰도르(2003년 아동 및 청소년 법 제155조와 252조)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답변 참조.

55) 예를 들어 미국 오리곤 주 법령 109-311 (3): "개인은 입양 대상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자를 찾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 수락, 지급하거나 수수료의 부과, 수락, 지급을 제의할 수 없다. 단, 오레곤 주가 인가한 입양기관(ORS 412.001~412.161, 412.991 그리고 ORS 418장)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링크 참조 < www.leg.state.or.us/ors/109 >.

56) 호주 (1994년 입양법 (호주 서부), 122절), 캐나다(전 영토), 칠레(아동입양법 19.620/1999 제4장 제39조-제44조), 사이프러스(입양법 19(I)/95호), 과테말라(2007년 아동입양법 제34조), 룩셈부르크(형법, 제367.2조). 또한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응답을 참조: 에스토니아, "…아동 매매는 금지됨 (형법)"; 스위스, 2001년 헤이그협약 관련 연방법 211.221.31. 요약하면,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법률이 없는 국가는 모로코, 페루, 슬로바키아 공화국 밖에 없음.

57) 아동 매매에 관한 UNCRC 선택의정서, supra note 33, 제3) a)ii조.

58) 미국 46개 주가 비용 환급을 허용하고 있음을 명시한 미국 국내입양정보센터 보고서를 참조.

59) 2005년 질문지 10(3)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응답국의 대다수가 이러한 관행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60) 예를 들어, 미국(이민과 국적법에 따른 규정(8CFR) 204.3 (I)절) 규정은, "이 항의 어떠한 부분도, 입양 절차와 관련된 행정, 법원, 번역 그리고/또는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지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2.2.4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 방지

089. 협약은 국제 입양[61]과 관련된 활동에서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혹은 다른 종류의 이득을 취할 수 없으며, 중앙당국은 "직접적 또는 공공당국[62]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090. 국가 당국이 입양 절차의 경제적 측면을 통제 및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63] 출신국은 자국의 입양 구조와 절차를 통해 부적절한 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관, 인가단체, 중개인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64] 수령국은 이러한 면에서 인가단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개인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가 직접 고아원을 방문해 독립적으로 입양하거나 사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는 일부 국가의 관행은 효과적인 통제나 감시 미흡의 이유로 권장되지 않는다.[65]

091. 경제적인 보상을 별개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스템에 아동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입양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입양과정의 모든 단계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성 여부를 떠나 수수료 및 성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정책은 반드시 국가의 아동보호전략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092. 국가는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과 부패 방지를 위해 입양 과정의 각 단계에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고 적절한 구조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93. 부적절한 경제적 혹은 기타 이익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제안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관한 제4장 4.2.1절과 10장 10.1.1절: "부적적한 경제적 이득 방지 전략"에서 논의할 것이다.

2.3 국가 간 협력의 구축

094. 국가 간 협력은 협약의 세 번째 원칙이다. 협약에 따른 협력 체계는 모든 체약국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61) 제32조 (1)항
62) 제8조.
63) ISS/IRC, "국제 입양비용에 대한 검토", 월간 리뷰 72-73호, 2004년 11월-12월.
64) 예를 들어, 퀘백(캐나다)과 리투아니아 중앙당국이 리투아니아 중개기관의 합리적인 수수료 정립을 위해 협력함.
65) 제4장 4.2.6절과 10장 10.1.1.6절 참조. 4.2.6절은 독립 입양의 문제도 다루고 있음.

- 다른 체약국이 이행한 보호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자국의 입양 규제 혹은 이러한 규제의 미비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다른 당사국과 입양·아동양육·보호시스템 이용자에게 정보 및 통계 수집과 보급을 위한 체제를 제공한다.
- 절차, 위기상황, 형법상 제재 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력한다.
-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제공한다.

095. 협약은 수령국과 출신국이 국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 수립의 부담과 혜택을 동일하게 분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 그리고 중앙당국 간 협력이 명백히 필요하다.

096. 또한, 국가는 수령국이 출신국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제공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어떠한 지원도 국제 입양 계획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6]

2.3.1 중앙당국 간의 협력

097.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설립은 모든 체약국의 의무사항이다.[67] 중앙당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 받는다. 중앙당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장 기관의 구조: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에 나와 있다.

2.3.2 협약 절차에 관한 협력

098. 다양한 정부 당국과 민간 기관들이 국제 입양 과정 등을 포함한 아동 보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당국과 기관 간의 협력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 입양 과정을 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제7장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099. 입양 후의 협력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양 부모는 입양사후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출신국은 사후보고서를 요청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제9장 입양 사후 문제에서 다룰 것이다.

66) 예를 들어,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출신국에 개발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아동양육, 산모관리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국제 입양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입양 부모의 입양 성금으로 지원되지 아니한다. 본 지침 제5장을 참조.

67) 제6조 (1)항은 체약국이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수행할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강조).

2.3.3 협약의 남용과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100. 중앙당국은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68] 국가와 중앙당국은 협약이 규정한 보호망과 기준을 회피하여 협약의 틀 밖에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관행의 근절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10장 협약 남용방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며, 동의 절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남용의 문제는 제2장 2.2.3절: 적절한 동의 보장을 참고한다.

2.4. 권한당국의 권한 보장

101. 국제 입양을 허가하는 권한당국의 임명 및 지정 의무는 협약의 네 번째 원칙이다. 체약국은 권한당국을 임명 또는 지정하고, 이들이 맡은 바를 이행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2. 제2장 2.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제21조 (a)항은 당사국들은 적합한 모든 보호망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입양이 권한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4.1 권한당국

103. 여기서 '권한이 있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104. 각 체약국에는 다양한 협약 이행을 위한 여러 권한당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입양명령을 하는 권한당국은 법원이다. 한편, 제23조의 승인의 주체가 되는 권한당국은 중앙당국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위한 권한당국은 반드시 공공당국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제14조부터 제21조의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된 권한당국은 때로 인가단체일 수 있다.

105. 각 체약국은 중앙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 간에 협약에 따른 여러 역할과 책무가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협약의 특정 조항 이행을 담당할 기관과 상호작용에 사용될 기제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9]

68) 제8조
69)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 참조.

106. 체약국은 협약을 이행하는 각 당국을 조직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 조직도는 2005 질문지에 첨부되었으며 이 지침의 부속서 6에 나와 있다. 완성된 조직도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07. 권한당국의 역할과 기능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www.hcch.net>의 국가프로필 양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4.2 중앙당국

108. 중앙당국은 입양진행절차 동안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양이 끝까지 진행(제17조)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중앙당국이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체약국은 이행조치를 통해 중앙당국에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여 중앙당국이 주어진 의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당국의 설립과 역할은 제4장 기관의 구조: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에서 다루고 있다.

109.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14조~제21조에서 명시된 중앙당국의 기능은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5조~제21조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2.4.3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110. 국내 아동보호전략에서 국제 입양을 고려함에 있어, 체약국은 인가단체의 역할과 이들이 제도의 일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22조 (2)항에 따라 운영되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3장 : 주요 운영원칙

111. 제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요 운영원칙은 협약 절차의 운영과 문서 정리 및 기타 요청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체약국은 법률 및 조치의 이행 시 반드시 주요 운영원칙을 감안하여야 한다. 주요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점진적인 이행
- 자원과 권한
- 협력
- 의사소통
- 효율적인 절차
- 투명성
- 최소기준

112. 일반 원칙과 마찬가지로 주요 운영원칙 또한 협약 하에 이루어지는 국제 입양에 관여하는 모든 당국과 기관, 개인에게 적용된다.

113. 중앙당국의 설립과 강화,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4.1과 4.2절에 나와 있다.

3.1 점진적인 이행

114. 모든 체약국은 협약의 이행을 발전과 개선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도록 권장 받고 있다.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 내에서의 협약의 운영을 평가하고자 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기존 이행 조치의 개정 및 수정을 통해 협약의 기능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자 할 수도 있다.

115. 특히 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을 고려하는 국가의 경우, 협약 비준 또는 가입 이전에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116. 체약국은 점진적인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체약국의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70]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또한 일반적인 자문 및 지원, 또는 국제입양 기술지원프로그램(ICATAP)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71]

117. 점진적인 이행이라고 해서 해당 국가가 협약의 모든 의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한 권한당국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특히, 수령국은 출신국이 입양과 관련하여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점진적인 이행의 원칙은 일부 출신국들의 경우 수준 높은 서비스, 아동의 배경과 상황에 관한 철저한 조사, 원가족 재결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72]

3.2 자원과 권한

118. 이행 조치와 법률은 협약 이행에 관여하는 모든 당국 또는 개인에게 협약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19. 중앙당국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많은 국가의 경우 이행 정책에 협약에 명시된 중앙당국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암묵적이거나 보조적인 권한 및 기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73] 협약 비준 또는 가입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중앙당국의 구조, 위치, 자원에 대해 경험이 있는 기존 체약국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협약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개인을 활용하여 중앙당국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제4장 4.3절(인가단체)과 4.4절 승인된(인가받지 않은)개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능 수행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중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70) 2005년 질문지 2(d)에 따르면, 에콰도르, 헝가리, 몰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을 명백히 요청하였음.

71)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본 지침 부속서 2.8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국제 입양프로그램"과 "국제입양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참조.

72) 캐나다는 이러한 원칙은 출신국이 입양을 처리할 때 모든 협약 과정을 준수하지 않음을 종종 의미한다고 여김. 캐나다 이민법은 해당 주에서의 입양이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한 서한을 연방 이민국에 발송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민담당 관리자들은 이러한 서한이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음. 출신국의 해당 입양 진행에 동의하는 서한(1993 헤이그 협약 제 17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입양의 다른 모든 측면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에서는 연방 이민담당 관리자에게 제출할 필수 서한을 발급할 수 없음. 또한 이는 캐나다의 주가 해당 입양의 진행에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제17조).

73) 호주의 가족법규(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를 참조, 국가 법령 1998, 제249호, 규정 6에는 연방 중앙당국의 기능 및 주 중앙당국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캐나다(퀘벡)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협약 이행법 (R.S.Q., M-35.1.3장), 청소년보호법(R.S.Q., P-34.1장, 71.4절에서 72.3절).

121. 국가는 반드시 협약의 이행과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을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아동 양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가족보존 서비스와 입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3.3 협력

3.3.1 내부협력의 증진

122. 중앙당국, 공공당국, 법원, 인가단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시설이나 아동보육기관과 경찰 등 수많은 당국과 기관들이 입양과정에 개입되어 있다. 각 당국과 기관은 협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 전 이행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는 다양한 당국과 기관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연방국가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123. 협약 제7조 (1)항은 중앙당국이 "아동을 보호하고 협약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 내 권한당국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당국이 기타 모든 당국과 기관이 입양에 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관련 당국과 기관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

3.3.2 외부협력의 증진

124. 체약국들의 중앙당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74] 협력 증진 및 협약 적용에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할 의무는 중앙당국에 있다.[75] 이러한 의무는 인가단체나 다른 당국에 위임될 수 없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 또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25. 중앙당국의 협력에 관하여 제4장 4.2절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74) 제7조 (1)항.
75) 제7조 (2)b)항.

3.3.3 회의와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증진

126. 협약의 운영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 회의(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이 정기적으로 소집)[76], 중앙당국 간 회의[77], 국제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회의와 정보교환을 통해서도[78]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회의는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모범 이행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된다.[79] 또한, 이러한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중앙당국 또는 기타 기관 간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을 촉진할 수 있다.

127. 중앙당국은 자원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요청하는 협약 운영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 의사소통

128.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란, 개인 또는 당국 간 직접적인 연락, 협약 및 협약의 목적 촉진, 지정 당국 및 체약국 내 입양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80]

129. 체약국은 협약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협약의 목적과 법적 영향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협약 발효와 관련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130. 모든 중앙당국의 연락 정보 및 다양하게 구성된 국가나 연방의 '주요한' 중앙당국 지정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변경사항은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연락처 역시 동 사무국에 전달해야 한다. 정확한 연락정보는 당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13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절차, 신청절차, 적격성 지침, 비용과 수수료 구조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국가 프로필 양식은 이러한 목적을

76) 제42조

77) 유럽중앙당국은 보다 나은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 문제를 논의하는 연례 회의를 개최함. 스페인 중앙당국은 남미 중앙당국들과 연례회의를 조직하고 있음.

78) 제7조(2)항 참조. 또한 2005년 질문지 5(c)에 대한 멕시코의 응답을 참조: "멕시코는 입양과 중앙당국의 정보교환을 주제로 교육 코스, 워크숍, 워크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79) 예를 들어, 라트비아에서는 경험 공유를 위해, 라트비아와 마찬가지로 협약에 따라 입양 대상인 아동의 출신국인 다른 체약국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리투아니아의 경우, 입양청(Adoption Service)에서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입양관련 교육을 제공함. 2005년 질문지 5(c)에 대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응답을 참조.

80) 모범적 이행의 예로, 스위스의 연방 중앙당국은 출신국의 모든 중앙당국에 서신을 작성하여 절차, 입양 가능한 아동의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음. 2005년 질문지 5(e)에 대한 스위스 답변 참조.

위해 사용될 수 있다.[81] 다른 국가에게 특정 양식 및 필수 정보를 요구하는 체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당국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며, 제4장 4.2.2절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3.5 효율적인 절차

132. 효율적인 절차는 입양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이다.[82]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는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협약의 목적을 충족시키나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는 않는 절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 공문서의 인증 의무를 폐지하는 1961년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이 유익한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133. 협약은 특정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35조의 "신속하게 조치"라는 구절은 "(사안에 대해) 적절한 고려 후 가능한 빨리 조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83] 아동에게 최적의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필요한 지연과 복잡하고 느린 절차나 부적합한 자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요한 지연에는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양측의 성실한 입양 준비를 위한 지연이 포함된다. 사례별로 적절한 시간의 의미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기된 아동은 고아인 아동에 비하여 입양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3.6 투명성

134. 시스템의 남용과 아동착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 규정, 정책, 수수료와 절차는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명백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사용자들이 어떠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실제 혹은 잠재적인 남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81) 헤이그 협약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국가 프로필" 참조. 2005년 특별위원회에서 중앙당국이 인가단체가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신청서 수를 국가 프로필에 명시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가 있었음.

82) 제35조.

83) 아동 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2007년 협약 제12조 (6)항 참조.

3.7 최소 기준

135.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과 기본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서, 제2장 국제 입양의 요건, 제3장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의 기준, 제4장 국제 입양 절차 요건은 기초적인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136.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외에 각국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보호망과 요건이 무엇인지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국가는 앞 장에서 명시한 협약의 주요 원칙을 강화 및 이행할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137. 협약의 조항을 보강하는 경우 국가는 1조에 명시된 목적,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협약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 기관의 구조 -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138. 협약에 규정된 특정 기관이란 바로 이 장의 주제인 중앙당국과 인가단체이다. 협약에서 비특정 기관이라 함은 공공당국과 권한당국이다. 이들은 이 장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적절한 공공당국과 권한당국을 각 체약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139. 각 체약국은 협약에 따른 다양한 책임과 업무를 공공당국, 권한당국, 인가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설명하여, 협약의 특정 조항에 따라 조치할 책임이 있는 단체와 이들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4)]

140.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국가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도를 마련하였다.[85)] 각 체약국은 이 조직도를 이용하여 자국 관할권 내에서 어느 당국이나 기관이 협약의 특정 부분의 이행을 담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이 조직도가 나와 있다.[86)] 조직도와 조직도 내의 정보는 국가 프로필의 보다 구체적인 절차로 보강될 수 있다.

141. 제4장은 중앙당국, 인가단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4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 계획과 준비 또는 발효 이후의 상황과 관련한 사안들을 규명하는 것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A. 중앙당국[87)]

142. 협약은 모든 체약국에 중앙당국의 체계를 제공하고 이들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중앙당국의 의무는 국제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협력, 협약의 적용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의 제거,[88)]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의 중지 등을 포함한다.

84)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1 참조.

85) 본 지침 부속서 6에 나와 있음. 조직도는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를 위해 질문지의 일부로 처음 마련됨.

86)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 "특별위원회">>"질문지와 응답", "2005년 질문지에 대한 응답 (국가별)"에서 볼 수 있음.

87) 본 장의 A장은 "1980년 10월 25일 국제아동납치의 민간적인 측면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모범이행 지침", 제1장 중앙당국의 이행과 "국제 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따른 베트남 입양 중앙당국의 설립""에 기반함(2003년 11월 12-13일 하노이 법무부에서 개최된 세미나, 발표자: 윌리엄 던칸,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부사무총장. 제니퍼 드겔링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호주 중앙당국 법무관).

88) 제7조 (2)b)항.

143. 중앙당국은 또한 특정 입양에 관한 의무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의무는 권한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89],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90] 의해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중앙당국"이라 함은 협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4.4 중앙당국의 설립과 강화

4.1.1 중앙당국의 설립

144. 중앙당국은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직위나 사무국이다. 협약은 어떻게 중앙당국을 설립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립은 각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법이나 행정법령 혹은 행정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145. 중앙당국은 협약이 체약국에서 발효되는 시점에 설립되어 서류를 송수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중앙당국의 직위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46. 중앙당국은 새로운 법적・행정적인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설립되어야 하며, 중앙당국이 입양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앙당국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절차를 개발하고 새로운 직원을 훈련시키며 국제 입양에 연관된 모든 개인, 단체, 기관에 중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통지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4.1.2 권한과 자원

147. 협약이 중앙당국에 부여한 의무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적인 협정은 중앙당국이 책임과 기능, 국제적인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협정)은 새로운 상황의 전개 또는 협약 이행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중앙당국의 권한을 확대 및 증진하기 위해 개정될 수 있다.

89) 제10, 11, 22조 (1)항. 2005년 질문지 5(a)에 대한 응답 특히 덴마크의 응답을 참조.
90) 제22조 (2)항. 또한 2005년 질문지 6(6)에 대한 캐나다(마니토바와 온타리오)와 미국의 응답을 참조.

148. 중앙당국이 협약절차의 통제(제14-22조), 장애물 제거(제7조 (2)b)항),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실행의 중지(제8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몇몇의 국가에서 중앙당국은 협약에 따른 친족 간 입양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149. 지정된 중앙당국은 효과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보장받아야 한다.[91] 중앙당국이 부적절한 정치적 혹은 외교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3 지정

150. 중앙당국의 지정은 제6조에 따른 필수적인 협약의 의무이다.[92]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명백히 확인되어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51. 제13조는 각 체약국이 중앙당국의 지정, 그 권한의 범위, 인가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52.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그 연락정보는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이 이루어지는 때에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이러한 정보를 통지받은 즉시 새로운 중앙당국에 환영 메시지를 송부하며 향후 의사소통 담당자의 연락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153. 제13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지정, 연락정보는 해당 국가의 협약 발효일자까지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93]

154. 제13조와 설명서 274항에 따른 이러한 정보 전달에는[94]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중앙당국에 배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당국(이들의 연락정보 포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95]

155. 위에 언급된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이어야 하며,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특히 조치의

91) 중앙당국의 기능은 제6-9조, 14-22조, 33조에 명시되어 있음.
92) 제6조 (1)항.
93)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a 참조. 제언 2는 2005 특별위원회 제언 3 supra, note 15에서 재확인되었음.
94) 설명서 참조설명서 supra note 1 참조.
95)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b 참조.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제언 2는 2005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제언 3으로 재확인됨.

인가 및 승인 철회 등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신속히 통지를 받아야 한다.[96)]

4.1.4 연방 국가에서의 지정

156. 연방 국가나 복수의 자치구역을 가진 국가는 하나 이상의 중앙당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나, 협약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 또는 의견 교환 전송을 담당하는 "주요(central)"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97)]

157. 연방 국가는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 시 "주요" 중앙당국의 지정이 명백히 이루어져 있도록 한다. "주요" 중앙당국과 주, 지방의 중앙당국 각각의 역할이 규정되어 다른 체약국들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반드시 "주요" 중앙당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입양 서류는 지방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전달될 수 있다.

4.1.5 중앙당국의 선택

158. 각 국가의 중앙당국 사무소의 최적의 위치는 협약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을 갖는 사무소가 될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떠한 위치가 선정이 되었든지,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와 협약을 위한 중앙당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는 긴밀히 연결되어야한다.

159. 보통 중앙당국은 가족사회부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부처 내에 설립된다.[98)]

160. 최선의 위치 선정은 체약국이 부여한 권한과 기능의 범위 등, 다양한 기타 요인들에 달려있다. 중앙당국의 역할은 협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전, 아동보호체계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이다. 평가과정 동안 국가는 중앙당국이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161. 중앙당국은 체약국의 사법제도, 보육 및 보호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중앙당국, 법원, 아동보호망, 아동 양육 시설, 관련 비정부 기관,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간 협력은 협약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96)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g 참조.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제언 2는 2005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제언 3으로 재확인됨.

97) 제6조 (2)항.

98) 중앙당국에 대한 상세 설명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의 "국제 입양" 클릭 후 "당국".

162. 국제입양은 국제 문제이기에, 중앙당국이 외교 구조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된다.

4.1.6 직원

163. 중앙당국 직원은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협약 요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원은 협약이 국내의 법적, 행정적 기반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99)]

164. 직원들은 사회복지, 심리학, 아동보호 등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

165. 능숙한 외국어 실력은 다른 중앙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협력관계와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중앙당국 모범 이행의 최소 기준은 협약의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원 확보이다.[100)]

166. 중앙당국은 효과적인 운영, 전문성 개발, 수준 유지, 현장 경험 획득, 국내외 기관 및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직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67. 중앙당국의 적절한 자원과 훈련된 직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들의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101)]

168.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절차에 보호망을 구축하여 입양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탈취, 매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02)] 이러한 목표 달성 및 부적절한 경제적인 이득 방지, 아동 최선의 이익 증진을 위해 중앙당국의 직원들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9)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신규 직원은 신입직원 교육을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받게 됨. 캐나다의 경우 직원들은 상시 훈련을 받고 해외 출장, 국제회의, 국내외 컨퍼런스에 참석함. 전 세계 상황은 2005년 질문지 5(c)의 답변을 참조.

100)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외국어로 코스를 수강해야 함. 2005년 질문지 5(c)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답변 참조.

101)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3참조.

102) 제1조 a) 및 b)항 참조.

4.1.7 물적 자원

169. 모든 중앙당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전화
- 팩스[103)]
- 문구
-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혹은 타이프
- 이메일
- 인터넷

170. 모든 중앙당국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자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 1993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 사본과 입양 관련 양자협정의 사본
- 협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 해당 이행 법률 및 절차의 사본
- G. Parra-Aranguren의 협약 설명서 사본
- 협약파일 처리 서면 절차
- 서신 왕래 및 파일 손실과 배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서면 절차
- 파일 번역을 위한 전문 번역가 명단
- 국가 당국과 기관, 기타 중앙당국의 연락정보
- 통계 수집과 보고 체계
- 모범이행 지침 사본

171. 자원이 적절히 갖춰진 중앙당국은 상기 명시된 필수 사항과 더불어 다음을 구비한다.

- 도서나 협약자료의 모음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자료
- 협약파일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매뉴얼
- 전자 사례관리 시스템
- 입양법과 절차에 관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103) 모범 이행에 따르면, 전화와 팩스의 라인이나 번호를 다르게 유지하여야 함. 팩스 기기는 24시간 켜두어 시간대가 다른 국가로부터 문서 전송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함.

172. 가능한 경우,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다양한 언어로 된 헤이그 협약과 관련 자료의 사본을 구비하고 이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에 올려놓는다. 비록 이러한 자료가 비공식적인 해석일지라도, 체약국과 중앙당국에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

4.2 중앙당국의 역할

173. 중앙당국은 보통 입양 과정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 지침 마련에 자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104)]

174. 중앙당국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출신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관이나 기구의 인가, 통제, 검토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105)]

175. 제13조에 따라 중앙당국 및 공공당국의 역할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106)] 다른 체약국을 위해 국가 프로필 양식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4.2.1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금지

176. 중앙당국은 입양과 관련된 부적절한 경제적 혹은 기타 이득을 방지하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혹은 공공당국을 통하여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107)]

177. 중앙당국은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단계와 같은(전체 혹은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인가단체의 비영리적인 목적을 규제**

104) 예를 들어, 페루에서는 중앙당국이 국내외 입양의 감독기관으로서 국제 입양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을 제안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음(2005 사법적으로 유기된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제3조).

105)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중앙당국이 외국 입양 인가단체를 승인함(2006 아동 및 청소년 법률 제72조). 스페인 (2007 국제 입양법 제7조. 2005 설문지 6(1)f 문항에 대한 답변 참조. 칠레 중앙당국은 자국 내 활동하는 인가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의 책임이 있음. 덴마크 중앙당국은 인가단체들의 경제적 조직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의 책임이 있음. 덴마크 법무부 산하 중앙자치 위원회인 덴마크 국가입양위원회는 인가단체의 해외 활동을 감독함. 노르웨이 중앙당국은 인가단체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이행함.

106)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c 참조.

107) 제8조. 2005 질문지 10(1)에 대한 캐나다(Saskatchewan)와 노르웨이의 응답을 참조. 예비입양부모와 권한당국에 비용, 경비,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자유롭게 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체약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10장 10.1.1.3절을 참조.

-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관한 일반적 금지사항 준수[108)]
- 입양과 관련된 합리적인 전문가 비용을 포함하는 입양 비용 청구와 지급 확인[109)]
- 입양 관련 기관의 책임자, 행정담당자와 직원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망 구축[110)]
- 개인, 시설이나 기관이 보상이나 금전 지급에 의해 유도되어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망 구축[111)]
-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보상이나 지불을 받고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구축[112)]
-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웹사이트 또는 브로슈어 게재용 수수료 및 비용 목록 제공을 요청[113)]

178. 수령국은 국가들의 공동책임의 원칙과 일부 출신국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모범 이행을 위해 출신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약의 원칙인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은 제2장 2.2.4절에서 논의하였다.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방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은 제5장 국제 입양의 비용 규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4.2.2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의 제공

179. 제7조 (2)항은 중앙당국이 자국의 입양 관련법에 관한 정보 및 통계, 표준 양식 등의 기타 일반 정보 제공, 상호간 협약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를 비롯하여 협약 장애물 제거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80. 각국의 국제 입양 절차와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는 경우 중앙당국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것이 명백하다.

181. 국제 입양정보는 웹사이트, 브로슈어나 전단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114)] 외국인 배포용 정보는 자국어 뿐 아니라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5)] 제공되는 정보는

108) 제32조 (1)항 : "그 누구도 국제 입양에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109) 제32조 (2)항.
110) 제32조 (3)항.
111) 제4조 c)항.
112) 제4조 d)항.
113)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노트 14, 제언 8 참조.
114)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중앙당국 및 기타 공식기관 웹사이트 목록을 참조.
115) 스웨덴이 이러한 경우의 예임 < www.mia.eu >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임. < www.commissioneadozioni.it >.

다음과 같다.

- 중앙당국 지정과 연락정보
-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수령국 – 수령국의 국제 입양정책, 예비입양부모 선정 및 평가기준, 입양 사후서비스 및 지원
- 출신국 – 출신국의 국제 입양정책, 국제 입양에 대한 실제적 필요성, 특수 욕구가 있는 입양 대상 아동을 포함한 국제 입양이 필요한 입양 대상 아동들의 프로필, 예비입양부모 신청 절차, 구비서류, 표준 양식, 언어 요건
- 출신국 – 입양신청에 적용되는 행정 및 법적 절차와 처리 기간

182. 또한 체약국은 국가프로필 양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양식은 200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의 권고 8을 근거로 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및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권고 8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조직도 마련으로 시작된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절차, 웹사이트 주소, 협약에 따른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중앙당국, 공공당국, 인가단체, 제22조 (2)항 하의 단체 및 개인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체약국으로부터 수집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4.2.3 국제 협력과 공조

183. 제7조 (1)항은 중앙당국이 아동 보호와 협약의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권한당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84. 당국 간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촉진될 수 있다.

- 입양 담당 당국 및 직원을 명백히 규정하고 연락정보를 제공
- 국가 그리고 중앙당국 직원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
- 원활한 의사소통 촉진, 특히 출신국 중앙당국 직원들과 그들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증진
- 컨퍼런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양자 및 지역 단위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교환

4.2.4 통계의 수집과 유지

185. 중앙당국은 협약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한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이를 위한 모범 통계 양식을 개발하였다.[116] 통계 정보는 중앙당국이 자국 내 아동의 필요를 이해하도록 돕고 국제 입양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86. 최소한 다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시설, 양육기관, 위탁양육 하에 있는 아동의 수**
- **국내 입양 아동의 수**
- **국제 입양된 아동의 수와 대상 국가**
- **연령과 성별**

187. 자원이 허용된다면, 위탁 양육, 시설 또는 기타 양육 시설에 영구적으로 배치된 아동 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재결합한 가정의 수와 가정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및 가정의 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아동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이슈를 수량화하여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117]

188. 협약은 국제 입양 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도록 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당사국이 취할 것과[118] 통계자료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119]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과의 통계자료 공유를 장려하며 "일반적 통계정보의 수집을 위한 양식의 초안 작성을 환영하며 당사국이 이러한 양식을 이용하여 매년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20]

189. 당사국이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연례 통계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무국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의 노력을 조직하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해할 수 있다.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송부하는 것은 중앙당국의 자원에

116) S2005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9을 참조. 통계 자료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과 "통계"에서 볼 수 있음.

117) 이러한 통계는 노르웨이와 같은 수령국 보다는 많은 아동들이 부적절한 양육, 학대, 폭력,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위탁 양육에 맡겨지고 있는 출신국에 보다 유의미할 수 있음. 아동이 생물학적 가족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이러한 연결 및 연락이 해당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러한 아동 중 입양되는 아동은 거의 없음. 이러한 통계 자료를 국가 간에 공유하는 경우, 그 맥락과 원천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왜 그렇게 많은 아동들이 위탁 양육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수가 적은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움.

118) 제9조 d)항.

119) 제7조 (2)a)항.

120)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9 참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당국은 정확한 통계기록 방법과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중앙당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21] 통계의 수집과 분석은 협약 이행의 효과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2.5 사적 입양에서 중앙당국의 역할

190. 사적 입양에 관한 중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은 제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출신국이 수령국의 중앙당국을 통한 입양만을 선호할 경우, 출신국은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입양 절차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2.6 독립 입양에서 중앙당국의 역할

191. 독립 입양은 협약, 특히 제29조에서 규정한 보호망 체계를 약화시킨다. 독립 입양은 예비입양부모가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예비입양부모 적합성을 승인받은 후, 출신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 혹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도움 없이 아동의 출신국에 방문하여 입양할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입양부모가 어떻게 아동을 찾는지, 누가 입양을 주선하는지, 지불되는 비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는 각국의 당국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절차의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독립 입양은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출신국와 수령국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독립 입양을 허용하는 관행은 협약에 따라 마련된 보호망에 모순되며, 중앙당국은 이러한 형태의 국제 입양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122] (제8장 8.6.6절과 제10장 10.1.1.6절 참조)

4.2.7 다른 절차적 기능

192. 정보의 보존을 포함하는 사후배치 책임과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이슈는 제9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121)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supra, note 14, 제언 21 참조.

122) 참고자료 I. Lammerant, M. Hofstetter, <입양: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국제 입양에서 수령국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Terre des hommes, Lausanne, Suisse, 2007, p.11, 이 연구에서는 독립 입양을 사적 입양이라 부르고 있음.

B.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4.3 인가단체

193. 많은 국가에서, 인가단체는 협약 하에 이루어지는 특정 입양에서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체의 승인 과정은 입양 과정 중 아동 보호를 위한 협약의 또 다른 보호망이다. 협약은 국제 입양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설기관 및 단체가 반드시 감독 당국이나 승인 당국의 책임 하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승인 절차를 안내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약국들이 기본적으로 협약 기준에 근거하여 자국의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각 국가의 요건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확대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194.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자국 내에서 아동보호나 입양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지에 관한 결정은 각 국가의 정책적인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한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단체가 다른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국의 권한당국에 해당 승인을 받아야 한다.[123)]

195. 가장 수준 높은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협약의 성공적 이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선정된 기관은 입양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방지하고 협약의 원칙을 옹호하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가단체는 중앙당국을 대신하여 협약의 기능을 수행할 때 자국의 조약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6. 승인을 부여하거나 인가단체를 감독 또는 감독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당국은 법적 권한에 따라 지명되어야 하고, 그들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인 권한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다.[124)]

197. 법적인 권한은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권한이나 법에 따라 인가나 승인의 철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감독 기관의 경우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125)]

198.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의 중요성과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의 별개 영역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23) 제12조
124) 2000년 특별 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4a 참조.
125) 상게서, 제언 4b.

"특별위원회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승인 사안을 다루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의 이후 영역 마련을 위해 체약국으로부터 승인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 이 분야의 비정부 기구들의 경험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승인 기준 모델 개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126]

199. 모범 이행을 위한 인가 지침(Accreditation Guide to Good Practice)은 앞으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들과 체약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문서에서 승인 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4.3.1 인가단체의 기능

200. 협약은 인가단체의 지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중앙당국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7] 이들 간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당국의 모든 기능이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7, 8, 33조의 기능은 인가단체에 위임될 수 없다. 제14-21조의 기능은 중앙당국이나 공공당국 또는 인가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 (2)항에서 언급한 단체나 개인은 협약에 따라 인가되지 않으며, 제15-21조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체약국의 권한당국의 감독 하에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 제13조에 규정된 인가단체의 지정 내용 및 이들의 연락정보는 인가 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한다.[128]

202. 인가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129]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간의 역할 및 책임 분담 내용을 다른 체약국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의 국가프로필 양식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26)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4 참조.
127) 협약 제3장과 4장 참조.
128)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d 참조. 2000년 보고서의 제언 2는 2005년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5, 제언 3에서 재확인됨.
129)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f 참조.

4.3.2 기준

203. 협약 제6조-13조에 명시된 기준과 자국의 권한당국이 정한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의 일부 기능 수행을 위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204. 협약은 인가단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위임된 기능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130)]
-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하여야 한다.[131)]
-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입양 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축적한 이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132)]
- 구성, 운영, 재정 현황에 대해 권한당국의 감독을 받는다.[133)]
- 책임자, 관리자, 직원들은 수행하는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134)]

4.3.3 인가 기준

205. 협약에 대한 기사와 연구들은 종종 '인가 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협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은 만일 단체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인가되어야 하거나 제10조에 명시된 인가가 필요한 경우, 체약국은 인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인가 조건 또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암시되어 있다. 협약은 인가 기준 마련 시 체약국이 인가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 추가적인 의무나 요구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6. 인가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국제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의 결과물이어야 한다.[135)]

130) 제10조
131) 제11조 a)항
132) 제11조 b)항
133) 제11조 c)항
134) 제32조 (3)항
135)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4c 참조.

4.3.4 인가단체의 감독과 검토[136)]

207. 인가단체를 활용하는 국가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정확하고 투명하며 이행 가능한 인가, 승인,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하는 방식**[137)]
-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다른 국가들과 일반인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 **착취가 발생하기 쉬운 과정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유지하는 방법**

208. 인가단체는 인가 받은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권한당국에 제출해야 한다.[138)] 출신국은 자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가한 외국 기관의 연례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209. 권한당국은 정기적으로 인가단체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재인가를 실시한다.[139)] 적절한 기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인가단체에 대해서는 인가를 철회하거나 갱신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4.3.5 출신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인가단체의 승인

210. 출신국에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령국의 인가단체는 반드시 출신국과 수령국 모두의 권한당국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제12조). 출신국은 이러한 승인을 위해 자국의 기준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단체는 출신국에서 적절한 인가를 받은 단체이어야 할 수도 있다.[140)] 또는 해당 인가단체가 출신국의 권한당국이나 중앙당국과 협업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입양을 위한 아동의 준비,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평가, 결연 지원, 국내 입양을 위한 예비입양부모 준비,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을 교육하는 것과 같은 작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수령국에서는 해당 인가단체에게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와 입양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것을

136) 2005 특별위원회의 <인가 이슈에 관한 논문>, 2005년 8월, Prel. 문서 제3호 참조. 이 논문은 수석 법무관 제니퍼 드젤링이 인턴 칼로타 알로에로의 도움을 받아 쓴 것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의 "국제 입양섹션"과 "특별위원회"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이하 "인가 이슈에 관한 논문" 이라 함).

137) 예를 들어, 미국은 기관 및 개인의 인가와 승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연방규정(CFR) 22 제96장으로 포함시킴. 이러한 규정은 인가와 승인에 대한 요건, 인가/승인 과정, 인가/승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인가/승인의 갱신, 인가 기관 및 승인받은 개인에 대한 감독, 감독 과정에서 민원의 기능, 인가 기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인가 기관 및 승인받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138)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4d 참조.

139) 상게서, 제언4e.

140) 제12조. 캐나다(퀘벡)에서는 중앙당국이 출신국에 가서 현지 중앙당국과 접촉하여 인가를 희망하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단체의 업무에 대해 논의함. 2005 질문지 6(1)(k)에 대한 캐나다(퀘벡)의 답변 참조. 리투아니아의 경우, 외국 인가단체는 국제 입양 업무수행을 허가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이와 더불어 해당 단체가 승인의 조건인 의무 이행 및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승인 및 인가는 3년마다 재심사됨. 2005 질문지 6(2)(a), (b)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답변을 참조.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출신국에서 인가단체 대표의 역할과 전문적인 프로필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11. 인가단체의 서비스가 출신국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승인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 승인을 받은 외국 단체가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방의 국가 혹은 양국 모두가 동 단체에 부여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수령국은 반드시 인가단체와 승인받은(인가되지 않은) 개인의 윤리적인 부분을 규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에서 활동을 허용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41)]

212. 제12조에 따라 한 체약국에서 인가받은 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승인받은 경우, 양국의 권한당국은 즉시 동 승인에 대한 내용을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142)]

213. 입양기관 인가절차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중요한 보호망 중 하나이다. 출신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려 하는 인가단체에게 양국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전장치이다. 출신국과 수령국은 허가받은 인가단체의 감독 책임을 함께 진다.

214. 인가단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 담당 당국은 해당 단체가 출신국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신국에서 국제 입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령국의 인가단체의 수와 그 프로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 당국에서 출신국의 어떤 아동들이 수령국의 입양 부모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아동의 프로필, 이러한 아동의 대략적인 수)하는 경우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양국가가 찾은 예비입양가족의 수와 프로필을 평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4.4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143)]

215.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는 제22조 (2)항에 따라 중앙당국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기관)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141) 덴마크에서는 중앙당국이 심각한 문제 발생시 인가를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덴마크 국가입양위원회는 인가단체의 해외 활동을 감독함. 2005년 질문지 6(1)(f)에 대한 덴마크의 응답을 참조. 또한 2005년 질문지6(1)(f)에 대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응답을 참조. 스페인의 경우도 참조(2007년 국제 입양법 제7조).

142)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2e 참조. 제언 2는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제언 3, supra, note 15에서 재확인됨.

143)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는 패러아구렌 교수의 설명서에서 제22(2)조의 개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음. 일부 국가에서는 "승인받은 개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함. 그러나 2005년 질문지 응답에 따르면 "승인된 개인"이라는 용어 사용 시 많은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모범 이행 지침은 이러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설명서의 용어를 사용하였음.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라는 용어는 설명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충된 용어이나 동시에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인된 개인"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고 있음.

216. 협약 제22조 (2)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임명된 개인은 단지 제15조-21조 상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는 인가단체에게 허용된 기능의 범위보다 더 제한적이다. 만약 체약국의 법률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입양 직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개인은 반드시 직무 수행을 허용한 국가 권한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입양기관이나 단체의 승인 기준과 유사할 수 있다.

217. 체약국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에게 협약 제4장(14조 제외)의 기능 수행을 허용하는 경우,[144] 체약국은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협약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인가단체에 적용되는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입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전문적 역량, 경험, 윤리성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오직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권한당국의 감독 하에서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 승인된(인가받지 않은)개인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18.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권한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체약국은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적합한 권한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가단체와 계약한 경우, 인가단체는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145]

219. 인가단체와 달리, 협약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146] 또한 출신국은 제22조 (4)항에 따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협약 제4장의 중앙당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와의 입양 진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 할 수 있다.[147]

220. 그러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을 임명한 수령국과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제22조 (4)항에 따른 선언을 한 출신국 간의 입양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언의 효력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특정 출신국과의 입양에 승인된(인가받지 않은)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가단체나 중앙당국만이 동 출신국과의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144) 제22조 (2)항.

145) 설명서 참조 supra, note 1, para. 376 (중앙당국은 위임 단체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

146) 설명서 참조 supra, note 1, para. 397 (승인받은(인가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가능하나 비인가 개인 또는 단체는 인가단체와 동일하게 제12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결론).

147)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헝가리, 파타마, 폴란드, 포르투갈, 베네수엘라는 협약 제22조 (4)항에 따른 선언을 한 출신국들임. 다음과 같은 수령국들도 선언을 하였음: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4.5 중재자

221. 체약국의 법률에는 인가단체가 그들의 대리인이나 중재자의 조치에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148] 한 국가는 자국의 인가단체가 이들의 해외 중재자 및 협력자들이 헤이그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법령을 마련한 적이 있다.[149]

148) 2005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상세 연구가 필요하다고 논의됨.

149) 2004년 3월 31일 입양에 관한 벨기에 프랑스 커뮤니티의 법령은(제17, al. 2, 3° 그리고 제19조) 인가단체는 그들의 해외 중개기관과 협력기관이 헤이그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5장 : 국제 입양에서의 비용 규제

222. 체약국과 중앙당국은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국제 입양의 비용을 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부는 제4장 4.2.1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제 입양에 관계된 모든 기타 단체는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223. 본 장에서, "성금(contribution)"이라는 용어는 입양 신청 시 출신국에서 요청하는 금액의 총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성금은 고정금액으로 출신국 당국에 직접 지불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금은 보통 아동 보호 또는 입양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인 부담금이다. 따라서 이는 매우 투명한 자금이다. 성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유지 원칙은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제5장 5.4절 참조).

224. "기부금(donation)"은 입양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부모가 제공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기부는 비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기부는 입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투명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기부금과 입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부금은 적합하지 않다. 입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명하며, 기록되고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는 기부금은 국제 입양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이다(제5장 5.5절 참조).

5.1 입양서비스에 대한 지급

225. 국제 입양과 관련된 정부/비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신국과 수령국은 제공된 서비스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협약은 국제 입양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인가, 규제 및 감독 등을 통해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획득을 방지하여 비용과 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26. 일부 국가 특히, 입양 개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 지급 없이는 중앙당국의 의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수료와 비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 특히 원가정에 대한 금전 지급, 돈을 지불하는 것과 특정 국가나 고아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을 보내기 위한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이 어떠한 양육체계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국가는 아동에게 어떠한 학대가 발생 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와 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일부 사례는 부속서, '효과적인 절차 마련-실제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5.2 국제 입양을 위한 운용자금

227. 개발도상국의 국내 아동 보호 프로그램은 종종 개발 원조와 비정부 기구를 통해 해외 원조를 받으며, 개별적인 수수료를 통한 지원도 받는다. 가족 보존과 국내 입양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분명 적절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출신국은 국내 아동보호체계나 적합한 입양서비스를 제공할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간접적으로 국제 입양과 연결되어 있는 개발원조는 개혁의 초기 단계에 필요하고 허용될 수 있다. 출신국과 수령국은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개발 원조, 성금 또는 기부금의 제공,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국제 입양 절차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228. 일부 출신국은 아동보육과 보호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양가족에게 성금을 요청한다. 성금이 고정 금액이며, 모든 예비입양부모에게 청구되고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왔다면,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투명하므로 수용할 수 있는 관행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입양 수수료나 성금과 아동 양육프로그램 자금의 연계는 국제 입양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수수료와 성금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내의 통합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개혁을 실시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와 국가 자금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경우, 국가는 입양의 재정적인 측면을 이행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보호망과 기타 보호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단기 혹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 국가는 국제 입양을 통해 발생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도입하고자 할 수 있다.

229. 개발 원조가 국제 입양 절차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수많은 사례가 있다. 스웨덴의 인가단체인 어답션센트럼(Adoptionscemtrum)은 아동의 유기 방지 전략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였다. 시설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것(우선적으로는 국내에서),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것, 시설에서 자라난 아동들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주는 것, 가족 내에서 성장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비정부 기관을 육성하는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어답션센트럼(Adoptionscemtrum)은 그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동일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관이나 재단과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그들은 현재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아동 양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에콰도르 시설의 직원과 기타 전문가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배치를 모색하는 프로젝트
- 보다 효율적인 아동 양육을 위한 필리핀 사회 복지사들의 역량 개발 프로젝트
- 인도의 시설 양육 지침 제공. 이 외에도 시설 직원 훈련, 아동권리 교육, 인도 내 HIV의 확산 감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진행
- 시설 양육을 위탁 양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내 네트워크의 구축 프로젝트
- 시설에서 자라난 러시아 아동들이 시설퇴소 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러시아에서의 기타 프로젝트는 아동의 필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당국과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르비아의 시설 퇴소 아동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에이즈 아동을 위한 정보구축과 훈련센터, 위탁가정 설립, 남아프리카의 아동 양육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 벨라루스 내 비정부 기구와 정부 당국이 함께 국내 입양을 늘리고,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양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훈련, 일반인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
- 베트남 5개 지방의 여성 연합 지역지도자 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도와 본인과 자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훈련과 네트워크를 통해 두 개 지방의 장애/고아 아동의 상황 개선에 기여.[150]

230. 또 다른 사례로, 네덜란드의 인가단체인 베렐드킨더런(Wereldkinderen)[151]은 인도와 콜롬비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콜롬비아에서 베렐드킨더런은 보가타의 거리아동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주간 센터인 크레시엔도 유니도스(Creciendo Unidos)를 지원한다. 주간 센터는 보가타 근방의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에서 실시된다. 많은 아동들이 슬램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노동을 함으로 가족 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약물, 폭력, 범죄에 노출되거나 게릴라 집단이나 불법무장단체에 고용되기도 한다. 주간 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교육과 훈련,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아동은 직업자격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글을 배우기도 하며 보충학습을 통해 1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기도 함
- 아동의 가족(대부분 어머니)을 위한 교육과 지원
- 식사, 의료서비스,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일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

231. 베렐드킨더런은 인도에서 NAZ 가족기반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NAZ의

150) < www.adoptionscentrum.se > "국제 원조" 참조

151) < www.wereldkinderen.nl > "프로젝트 원조" 참조.

업무 중 일부는 HIV 아동과 그러한 아동의 교육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HIV와 성(性) 건강에 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에이즈에 걸린 200가족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NAZ는 심리·사회적 지원, 영양지원, 공공인식 프로그램과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AZ 가족기반 양육 프로그램은 2001년도에 시작되어 HIV/AIDS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된 250명의 아동들을 돕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HIV/AIDS 환자이거나 HIV/AIDS로 가족을 잃은 아동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모든 아동들이 수준 높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에게는 정기적으로 우유, 달걀이나 과일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의해 델리에 이러한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고 있다.

232. 노르웨이 개발원조기관인 노라드(NORAD)[152]는 노르웨이의 국제 입양 개입과 관련이 없는 아동보호 지원을 제공한다. 노라드는 필리핀 기관인 노르핀(Norfin)이 필리핀 외곽지역 빈곤 가정에 원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르핀은 노르웨이의 인가단체인 아돕션포룸(Adopsjonsforum)의 연락기관이다. 그러나 노리핀은 노르웨이 가족과 결연되는 아동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노라드는 인도 봄베이에 있는 고아원 지원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이 고아원은 노르웨이의 인가단체인 칠드런오브더월드 노르웨이(Children of the World-Norway)의 지원을 받고 있다. 칠드런오브더월드는 고아원에 있는 일부 아동의 입양을 중재하지만 노르웨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으며, 많은 아동들이 국내 입양되거나 노르웨이가 아닌 외국으로 입양되었다.

5.3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 설정

233. 제32조는 국제 입양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비용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출신국과 수령국 모두) 이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153]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32조는 다음과 같다.

(1) 어느 누구도 국제 입양에 관한 활동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2) 입양에 관여한 자의 직업상의 합리적 보수를 포함하여 비용과 지출에 대해서만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3) 입양에 관여한 단체의 이사, 관리자, 직원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152) < www.norad.no > 참조.
153) 2005년 질문지 10(1)에 대한 답변 참조.

234. 이러한 원칙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05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는 아래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재확인하였다;

> " 국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가 요건에는 외부감사 뿐 아니라 건전한 재정 기반과 재정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내부시스템에 대한 증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단체는 계좌를 유지하고 입양의 각 범주와 관련된 평균 비용 및 수수료 항목별 명세서 등을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154]
>
> 예비입양부모는 입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를 사전에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수령국과 출신국의 당국과 기관은 이러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155]
>
> 다양한 기관의 국제 입양 서비스 관련 비용과 경비,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156]

235. 수수료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결정할 때, 국가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적인 수수료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양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다.

236.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입양 절차에서 필수 서류절차의 진행을 위해 '비공식적인' 입양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촉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서류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일부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그들의 의뢰인이 배치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이나 고아원 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동 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157]

237. 이러한 문제는 일부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아동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이는 의뢰인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입양될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러한 촉진비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계속 발전되면 남용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국가는 입양시스템 검토 시, 공식적/비공식적 수수료의 지불이 발생하는 각 지점을 파악하여 이러한 수수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154)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6 참조. 제언 6는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supra note 15, 제언 5에서 재확인됨.

155)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7 참조. 제언 7는 2005년 특별위원회, supra, note 15, 제언 5에서 재확인됨.

156)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8 참조. 제언 8은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supra, note 15, 제언 5에서 재확인됨.

157) 2005년 질문지 10(4)에 대한 노르웨이의 답변 참조. "예를 들어 아기나 어린 아동 또는 가장 건강한 아동이 높은 수수료를 낸 신청자에게 위탁됨. 이러한 이유로 루마니아로부터의 국제 입양이 몇 년간 중단되었음. 이러한 관행이 공개되면, 노르웨이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입양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재인가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스위스의 답변을 참조".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재정적인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아서 '편의'를 얻게 됨." [상설사무국의 번역].

238. 해외 지급(예. 입양 가족 (선물) 또는 기관(출신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총액)에 대한 지급)이 필요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공식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다면 투명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다.

5.4 아동 보호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금

239. 2000년 11월/12월에 열린 협약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출신국의 가족 및 아동 보호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성금의 적절성에 대하여 오랜 시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헤이그 협약[158]의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설문에서 많은 응답자가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보호망을 조건으로 기부금이나 성금 시스템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40. 특별위원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나눠졌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한 입양과 관련되지 않은 성금의 부과는 협약 제32조와 반하는 내용이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성금의 부과는 출신국의 입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지불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가 이러한 성금의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41. 첫 번째 관점을 지지하는 이들은 특정 입양의 실제 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돈은 국제 입양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함이 협약의 정신과 일치하며, 권고에 의해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용인하는 것은 동 권고가 성금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관점 지지자들은 출신국이 아동보호체계와 아동의 가족을 위한 성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일부 체약국과 비체약국에서 이전부터 이루어져왔고 제32조의 목적을 위해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2. 수령국이 출신국의 가족과 아동 보호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양 절차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159]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수령국은 아동유기방지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출신국의 국내 아동보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출신국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국제 입양 절차의 청렴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 입양으로 파생되는 수익에 의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의 국제 입양 결정은

158)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마련한 "국제 입양과 관련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의 실제 운영에 관한 질문지", Prel. 문서 제1호(2000년 7월) 2000년 11월/12월 특별위원회 제출용.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과 "특별위원회" (이하 "2000년 질문지")에서 볼 수 있음.

159)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para. 47 참조.

금전의 지급 또는 성금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소는 아동의 입양 가능성, 입양될 아동의 나이, 건강 또는 특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160]

243. 따라서 성금은 허용되지만 절차의 청렴성 유지를 위한 보호망이 필요하다. 보호망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a) 성금의 금액은 고정 금액이어야 하며 예비입양부모에게 사전에 공개 및 통지되어야 한다.

(b) 성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한다.

(c) 성금은 항상 기록되고 설명할 수 있는 거래에 사용되어야 한다.

(d) 성금으로 인한 수익과 그 수익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e) (기부금이 아닌) 성금은 개별 고아원보다는 중앙당국이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f) 성금은 국내 아동보호체계나 입양체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과 관련된 기관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161]

5.5 기부금(Donation)

244.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는 입양기관이나 시설에 기부금(donation)을 내는 관행 특히, 입양이 완료되기 전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의 용도와 요청되거나 기부된 다양한 금액에 대한 정보 부족과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의 부족이 문제였다.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입양 전 성금 금지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입양 부모가 입양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행위는 요청되거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162]

245. 중앙당국은 이러한 권고의 위반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160) 상게서, 제언10.

161) 몇몇 출신국의 경우 고아원 체계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즉, 국제 입양에 참여하는 고아원은 아동에게 서비스 및 용품 제공을 위한 자금을 더 많이 가지며, 국제 입양에 참여하지 않는 고아원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어 아동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양육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 국가의 경우, 일부 고아원들이 다른 고아원에 비해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어, "기부금"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162)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9 참조.

246. 입양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기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특정한 보호망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 기부는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직접 해야 한다.
- 기부가 이루어졌을 때 출신국과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 기부를 받는 단체는 적절한 회계 구조가 있어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인가단체에 대한 감독 활동의 일환으로 회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6 부패

247. 개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동 공무원 또는 제3자가 공식적인 행위를 하도록 또는 공식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혹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공무원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163)]

248. 국제 입양에서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및 기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의 시행법은 부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특정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164)]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국제 입양 상황에 확장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165)] 몇몇 국가의 경우 처벌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이 포함된다.[166)]

163) OECD 뇌물제공 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 (1997년 11월 21일) 제1조 참조 < www.oecd.org >.

164) 칠레(아동 입양법 19.620/1999 제42조), 스위스 (2001년 헤이그 협약 관련 연방법 211.221.31호 제23조와 24조).

165) 룩셈부르크의 경우 참조(형법 제367-2조).

166) 안도라(형법 제105조),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입양법 RSBC 1996, 제5장 84절), 에콰도르(2003년 아동과 청소년법, 제155조, 252조), 루마니아 (법률 273/2004, 제70조).

제2부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반

249. 이 문서의 제2부는 일반적인 원칙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국제 입양 절차의 측면을 다루고, 출신국이 보충성의 원칙을 실행하여 아동이 입양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협약 제4장, 제5장과 관련된다.

250. 제2부는 아동의 양육 및 보호 체계 입소를 시작으로 하여, 가족 유지 및 결합, 일시적 양육의 제공, 국내 입양 또는 영구적인 가족 양육의 고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국제 입양 절차로 이어지는 국제 입양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다.

251. 아동 최선의 이익은 국제 입양 체계뿐 아니라 국내 아동 양육 및 보호체계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 이행이란, 해당 국가에 정상적인 양육 및 보호 체계가 있고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제공되어 국제 입양이 해당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전 아동을 위한 국내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6장 : 국내 아동보호 상황과 국내 입양

252.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동의 보육, 보호 및 입양 제도의 단계들을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1. 아동의 보호체계 입소
2. 가족보존 또는 재결합
3. 임시 아동 양육 또는 시설보호
4. 국내 입양

253. 이 네 단계는 국내 아동 양육 및 보호체계에 관한 것이며, 국제 입양과 별도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을 국제 입양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 또한 출신국인 해당 국가의 입양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출신국은 국내 아동 양육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수령국에 지원과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간 협력은 국제 입양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이 국제 입양프로그램의 청렴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167]

254. 아동이 양육 및 보호 체계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통하여 영구 가정으로 배치되도록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 및 절차는 모범 이행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초기에 적용된 모범 이행은 협약의 원칙과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은 국제 입양에서의 모범 이행의 기반으로서 국내 입양에서의 모범 이행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5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4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168]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와 대안적인 양육을 위한 UN 지침 초안 마련을 위해 실무 그룹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지침 초안은 국제사회봉사회가 소집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실무 그룹 내 비정부 기구에 의해 마련되었다. 유니세프 역시 초안 작성에 긴밀히 관여하였다. 지침 초안은 채택을 위해 협의 기간을 거쳐 유엔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167)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0과 본 지침 제5장을 참조.
168) < www.ohchr.org >의 "인권 단체(Human Right Bodies)" >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와 "결정(Decisions)"을 참조.

6.1 1단계 : 아동의 보호체계 입소

6.1.1 아동의 보호체계 입소 :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확인

256. 협약 서문의 첫 단락은 다음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이 행복하고 애정이 있으며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한다."[169]

257. 이 원칙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인격 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170]

258. 가정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확인은 아동이 아동보호 체계에 입소할 때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259.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동의 양육 및 보호체계로의 유입 또는 입양 적합성 평가 방식을 명시하는 법률 및 이행 규칙이나 실행 규칙과 같은 공식적인 체제가 있다. 여기에는 법원 명령,[171] 공식적인 친권 철회, 병원 또는 고아원에서 발생한 유기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부모를 여읜 고아, 유기된 영아, 부모를 확인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아동, 특수한 어려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의 자녀의 경우, 국가에 의해 아동 보호체계에 입소하거나 입양 적격성을 갖추게 된다.[172] 유괴, 아동 매매 등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소에 대한 공식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6.1.2 유기와 유괴

260. 유기란 다시 되찾아갈 의도 없이 친권을 버릴 의도로 아동을 두고 오는 행동을

169)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7 참조.
170) 상게서, 예컨대 브라질(1990년 아동 및 청소년법), 코스타리카(1998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30조, 31조), 인도(2003년 아동헌장 제17조) 참조.
171) 캐나다의 아동 및 가족서비스법 (마니토바) 제38조 (1)항 참조.
172) 중국 1999년 입양법 제4조 참고.

의미한다.[173] 유기는 특히 공식적 친권철회 체제가 없는 국가, 위기 가정을 위한 개입 서비스가 미비한 국가, 아동 매매를 방지하는 조치가 없거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261. 유기된 아동들은 대부분 조사를 기다리면서 보호시설에서 잠시 생활하게 되며 원가족과 재결합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통 자신의 신원, 가족, 사회/의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174] 이러한 아동의 유기는 친생부모가 어떠한 이유로든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를 유기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국가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아동에 대한 정보 보존을 다룬 제9장 9.1절을 참조).

262. '유기'된 것으로 분류된 수많은 아동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시설로 입소한 경우, 학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내전, 자연재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63. 국제 입양에 배치된 아동의 대부분이 '유기'된 경우라면, 유괴되었을 수도 있는 아동을 파악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당국에 자녀가 유괴되었다고 신고한다면 경찰 또는 기타 당국을 통해 해당 아동을 찾아볼 수 있다. 몇몇 국가들은 유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유기 건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등록부 명단에 기재하도록 하여 부모들에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고, 친척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175] 빈곤 가정의 경우 먼 곳으로 이동된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의 경우 등록부 기재 요건과 함께 추가적인 보호망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76]

264. 만일 국가가 유괴가 의심되는 건을 알게 된 경우, 아동과 친모의 유전자(DNA)검사를 활용하여 친부모 확인을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유괴가 의심되는 경우 이 같은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비용은 대행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예비입양부모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177] 만연하고 통제되지 않은 유괴 또는 영아 매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173) 모로코(유기 아동 보호 관련법 15-01, 2002년 9월 15일 공식게시판 제1조) 참조. 볼리비아의 경우 유기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1999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35, 289, 293조), 도미니카 공화국(2003년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스템 및 기본 권리에 관한 법률 제132조), 프랑스(민법 제350조) 참조.

174) UNCRC, supra, note 8, 제7조, 8조 참조.

175)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2005년 입양법 제39조)는, 청소년 법원의 결정 직후 아동 유기가 선언됨. 이러한 결정은 보고서 제시 그리고 경찰의 공식 개입일자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음. 러시아(가족법, 제122조, 124조)의 경우, 정부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가족법에 따라 아동을 1개월간 현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개월간 연방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하여야 함.

176) 과테말라(2007년 아동 양육법 제36조), 불가리아(외국인의 불가리아 국적자 입양에 대한 동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령 3, 2003년 9월 16일).

177)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2003년 아동 및 청소년법(제286조)은 해당 아동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함. 과테말라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철회한 모든 아동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음(2007년 아동입양법, 제36조). 또한 2005년 질문지 7(6)에 대한 응답 참조. 캐나다는 과테말라에서의 국제 입양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과테말라에서 입양을 할 경우 이러한 검사를 행하는 수령국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변함. 루마니아는 아동의 친부모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행함. 미국의 경우 과테말라에서 입양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이행.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유전자 검사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178]

265. 모범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법과 절차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유기 발생 공식 확인 기관과 확인 기준**
- **원가족을 찾기 위한 조치 내용**
- **유기 아동을 영구적인 가정에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한 절차**

266. 통계 자료의 수집은 일부 지역 또는 시설이 특히 높은 유기 비율을 보이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난히 유기 비율이 높은 곳이 발견되면, 사유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6.1.3 자발적인 친권 철회

267. 친권 철회란 부모가 자녀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기로 결정 또는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의 가족 및 사회정보 부재와 같은 유기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법규에[179] 동의 또는 친권철회 규정을 두고 있다.[180] 친권 철회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친권 포기를 결정하기 전[181] 상담 받을 기회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강압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182]

268. 모범적 이행을 위하여, 법과 절차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가족보존 서비스를 포함한 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 **단기 보호 절차**
- **원가족 상담과 원가족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입양 동의로 인한 결과에 대한 상담 제공**

269. 이러한 법과 절차에는 동의하는 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하였고, 보상에 의해 유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78) 2005년 질문지 7(6)의 답변에 따르면, 응답 국가의 대다수가 이러한 검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함.

179) 2005년 질문지 4(c)와 (d)에 대한 응답 일부를 참조. 예컨대, 호주, 안도라(1996년 3월 21일 입양법 제8조), 에콰도르(200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58조), 리투아니아(민법, 제3.212 . 3.215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루마니아(법273/2004, 제11-17조).

180) 제16조

181) 제4조 c)(1)항

182) 제4조 c)(3)항

6.2 2단계 : 가족 보존

6.2.1 가족 보존과 재결합

270. 협약서문은 다음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한다."[183)]

271. 가족 보존 프로그램은 자녀가 있는 가족의 위기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아동과 가족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은 이전에 아동과 분리되었던 부모가 양육권을 재획득하는 것 또는 아동이 친척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부모의 양육권 재획득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는 단기시설보호, 위탁 양육, 입양 제도의 필요를 줄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다는 것이다.[184)]

272. 제1장에서 언급한 현재의 입양제도 평가를 통해 정부는 가족 보존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아동 양육 및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일지라도 보건, 사회문제, 경제 발전이나 전문 업무 등 정부의 기타 부문에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다른 부문에 존재하는 경우, 국가는 중복을 막기 위해 이들을 아동 양육 프로그램으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부 기구가 아동 양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정부와 함께 담당할 수 있다.

273. 모범적 이행을 위해 국가는 가족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친권을 포기하는 가장 빈번한 사유를 조사해야한다. 국가는 가능한 한 최대로 가족 보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친권을 철회하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185)]

183) 협약 서문 2항 참조. 또한 설명서 supra, note 1, paras 38, 39 참조.

184) 불가리아(아동유기방지 및 시설 배치를 위한 조건 및 절차 이행에 대한 법령, 장관위원회의 결정181/11 2003년 8월). 인도(2003년 아동헌장, 제17조, 가족 강화), 마다가스카르(2005년 입양법 제7조).

185) 예컨대, 스리랑카는 아동들을 친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2005년 질문지 4(b)에 대한 스리랑카의 답변 참조), 이외에도 불가리아, 조지아, 키르키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다른 국가들도 에브리찰드(Everychild)와 같은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가족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www.everychild.org.uk> 참조.

6.2.2 가족 보존과 재결합 지원 전략

274. 이 지침은 국가의 아동 양육 및 보호시스템 개발에서 가족 보존과 재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본 지침의 범위를 넘어선다. 일부 전략의 개요는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속서 4에 명시되어 있다.

6.2.3 가족의 온전성 유지

275. 많은 국가에서 빈곤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족해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 약물 남용과 사회적/문화적 규범 등 또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86)]

276.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아동착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여럿 있는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경우, 부모는 때때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아동의 친권을 포기할 지를 고민하게 된다.

277. 빈곤 그 자체가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유럽 인권협약 8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187)]

6.2.4 가족 재결합

278. 가능할 경우, 국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재결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79.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양육하게 할 수 있다.[188)] 그러나 아동을 양육할 친인척을 찾는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186) 반룬(H. van Loon), supra, note 6, p.235, para. 38 참조.

187) ATD Fourth World, <가난은 어떻게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가: 인권에 대한 도전>, 2005: "빈곤에 직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강력한 회복 탄력성과 용기를 발휘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할 수 있다. 이 연구는 ATD Fourth World가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과테말라, 영국, 미국에서 빈곤과의 싸움을 위해 가정들과 협력하여 그리고 다른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다루고 있다". <www.atduk.org/publications/Pub.htm>

188) 예컨대, 에콰도르(200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58조), 리투아니아(민법 제3.223조), 지역 또는 도시단위 복지 기관은 먼저 아동이 친부모 또는 다른 친척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함.

6.2.5 가족 보존 프로그램 개발

280. 가족 보존이나 재결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다. 가정폭력 지원, 약물 남용 지원, 소기업 대출 등과 같은 가족 보존 프로그램의 목록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부속서 4에 명시되어 있다.

6.2.6 서비스의 제공

281. 국가가 가정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정해지면, 어떤 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할 것인지,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6.2.7 기타 자원의 이용

282. 중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국가는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189)]

283. 일부 국가는 민간 입양서비스 기관과 보육원을 통해 가족 보존이나 재결합 서비스를 수행한다. 민간 기관들은 프로그램 이행 자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훈련된 적합한 사회복지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6.2.8 협력 협정

284. 국가는 가족에게 (입양이나 아동 양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소기업 대출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 단기 식량 및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원조 기관,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190)]

189) 불가리아(아동의 유기와 이로 인한 시설배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법령, 장관위원회 결정 181/11 2003년 8월).

190) 예) 전 세계(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북한)에서 서비스, 개발, 사회 정의, 평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인 미국 퀘이커 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afsc.org/about/default.htm>.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가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족, 지역 사회, 보건담당자, 의료 기관, 병원과 협력하여 5세 이하 아동과 어머니 및 어머니가 될 여성들의 기초보건, 복지, 생존을 증진하는 활동을 진행함.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사, 부모(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연합을 지원, 지역 사회 남녀학생 모두의 교육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북쪽의 가난하고 외진 지역 학교 재건 및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을 더욱 높이고 있음.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savethechildren.org>.

6.3 3단계 : 일시 보호와 시설 보호

6.3.1 일시 보호의 사유

285. 아동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로 다양한 기간 동안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가족 위기 동안,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폭력 혹은 학대하는 가족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가족이 재결합할 때까지 상담을 받는 경우
- 아동이 유기되었다면, 가족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시조치
- 영구적인 배치가 착수되는 동안 임시조치
- 입양 가능이 선언되기 전 임시 조치
-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아동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286. 일시 보호는 시설 또는 위탁 양육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국가는 아동이 일시 보호에서 머무는 기간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191]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양육할 능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자녀를 기관에 맡기기도 한다. 이는 아동을 단지 일시적으로 기관에 맡기기 위함이며, 부모가 자녀를 다시 데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다시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아동은 애매한 상태가 된다.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시설은 수년간 시설에 남아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지 못할 경우, 영구 배치는 최대한 빨리 수행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장기적인 시설 보호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니다.[192]

6.3.2 일시 보호시설

287.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당국만이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을 지라도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재원을 마련한다. 많은 국가에서, 사설 고아원과 사설 위탁양육 시스템의 발전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안의 부재로 인한

191) 브라질은 정부기관 전체 수준에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Sistema de Informação para a Infância e a Adolescéncia, "SIPIA")를 운영하고 있음 .

192) 유럽 위원회: 기관에서 지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 장관들의 제언 5 (2005)(2005년 3월 16일 장관 위원회가 채택함). 웹사이트 참조 <www.coe.int>.

것이다.[193] 몇몇 국가의 경우 비정부 기구가 특정 보육원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입양 프로그램 운영 인가를 받기도 한다.

288.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스템과 서비스가 국가 기관이나 사설 기관을 통해 제공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국가는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스템의 청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사설 아동 양육 시설, 위탁시설의 사업수행과 자금을 검토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기본 사업비용을 지급하는지,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들 간의 이해상충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289. 국가의 법과 절차에는 일시 보호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제공,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6.4 4단계 : 국내 입양이나 영구 보호

6.4.1 영구 배치

290. 협약은 보충성의 원칙을 나타내는 다음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 질 수 있다."[194]

291. 영구 배치의 결정은[195] 아동이 원 가정이나 친척에 의해 양육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노력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는 출신국 내 입양가정으로의 배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196]

193) 그루지아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 능력이 없을 때 부모를 지원할 시스템이 없어서 자녀는 시설에 남겨지고 있음. 월드비젼과 에브리차일드, 유니세프, 노동, 보건, 사회, 교육 장관들이 협력하여 최초의 "아동 유기 및 시설 보호 방지" 프로젝트를 이행. 월드비전 웹사이트 참조: <http://meero.worldvision.org/issue_details.php?issueID=10 >.

194) 제4조 b)항.

195) 예를 들어, ISS/IRC 문서 "부모에 의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참고. <www.iss-ssi.org>.

196) 볼리비아(1999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74조, 85조), 에콰도르(200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53조), 인도(2003년 아동헌장, 제17조, "가족 강화", 2006년 인도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제4장 4.1절 3단계). 필리핀(1995년 국제 입양법(RA 8043), 제3장 7절)에서는 중앙당국이 가족법에 따른 아동 입양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를 위해, 이사회는 아동이 국제 입양되기 전 필리핀에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2005년 질문지 4(b), (c)에 대한 스리랑카의 답변 참조.(입양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먼저 지역에 등록된 현지 입양기관에 문의한다. 현지 입양기관에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을 중앙당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중앙당국 담당자가 해외 입양 우선 목록에 해당 아동을 올리게 된다.")

292.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명서 서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양육의 대안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족에 의한 양육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197]

6.4.2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영구 배치의 지연

293. 성공적인 국내 입양시스템은 국가가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주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국내 입양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자국의 아동과 가족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국내 입양시스템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입양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새로 개발하는 경우, 이는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며 협약 이행 계획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294. 국내 입양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국가는 국내 입양시스템이 개발 및 이행될 때까지 국제 입양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 양육 및 보호시스템의 장기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기간 동안 아동을 영구적인 가족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 위배된다. 변화를 이행하는 경우, 임시 조치를 마련하여 영구적인 가족이 필요한 아동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미 배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시설에 있거나 가족이 즉시 필요한 아동은 국제 입양을 통해 영구적인 가족을 찾지 않는 한, 수년간 시설에 남아있게 된다. 과도기 또는 진행 과정에 있는 사례(입양 중단전에 사례가 시작되었거나 협약이 발효 시 완료되지 않은 사례)의 문제는 제8장 8.3.2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295. 한편, 국가는 임시 조항을 이용하여 필요한 변화 이행의 책임을 무한정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개혁을 위한 국가 아동보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부속서 2 참조). 199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장기적 개혁을 법률로 제정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가입에 반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국이 국내 개혁전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약 원칙 준수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6.4.3 국내 입양시스템의 설계

296. 국내 입양시스템 개발이나 구축에 관련된 요인들을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197) 설명서 참조. supra, note 1, para. 43, 또한 UNCRC 참조, supra, note 8, 제20조 (3)항, 아동 양육에서 "연속성"이 바람직함을 언급.

불가능하다. 아동의 필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입양 증진 방법
- 입양 가족을 준비시키고 승인하는 방법
- 입양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 입양서비스 제공 주체
- 아동과 가정 결연 방법

297. 출신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 형태의 양육 역시 국내 입양시스템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며,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친인척이나 공동체 구성원은 고아나 유기된 아동의 양육을 기꺼이 수락하지만 공식적으로 입양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승려나 수녀들 역시 아동을 위한 가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는 입양되기에는 나이가 많은 아동들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영구성이 제공되는 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동과 성인 모두가 인정하고 수락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발 및 증진되어야 할 부분은 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해결책은 국내 입양에서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6.4.4 국내 입양의 촉진

298. 역사적으로 낮은 국내 입양률을 보이는 국가는 입양에 대한 문화적 수용과 인식을 증진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입양은 가족이 없는 아동에 대한 양육 옵션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입양가족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익광고, 언론 캠페인,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정부 기관 활동을 통하여 아동과 가족을 위해 입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198)]

299. 국내 입양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국내 입양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국내 입양을 증진을 위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6.4.5 입양가정의 훈련과 승인

300. 국가가 일단 잠재적인 입양가족을 파악했다면, 입양 부모로 승인받기 전 상담과

198) 필리핀(1998년 국내 입양법(RA 8552)), 제1조, 2(c)절(iv, v, vi)) 그리고 칠레 중앙당국이 이행한 캠페인 참조(SENAME) < www.sename.cl >.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예비입양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199]

301. 국가는 예비입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절차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입양가족은 국제 입양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준비되고 평가될 수 있다.[200]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역시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302. 어떤 기관이 예비입양부모 자격을 부여하고 준비시킬 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6.4.6 아동과 부모의 결연

303. 국내 입양시스템 개발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입양 대상 아동과 승인된 예비입양부모의 결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비입양부모는 대부분 지역당국의 승인을 받으며 지역 시설 내 아동과의 결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201] 그러나 해당 지역 내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찾을 수 없다면,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입양 부모를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304.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202] 국내 모든 입양 대상 아동과 모든 예비입양부모의 명단이 적합한 권한당국에 등록되어 있다. 지역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예비입양부모를 찾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가족과 결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등록시스템은 국내에서 아동을 위한 예비입양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 국제 입양을 고려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203]

305. 국제 입양의 예비 단계로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아동을 국내 가정에 배치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일정한 절차가 시도되기 전까지나 일정한 시간 동안은

199)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는 가정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함(3절 입양규정), 덴마크는 예비입양부모의 조사 및 준비를 요구(입양법, 통합법 928호, 2004년 9월 14일, 입양 부모 승인을 위한 명령 참조), 이탈리아는 입양 전 입양 부모의 관계 안정을 요구(법률 149호, 2001년 3월 28일, 제6조).

200) UNCRC, supra, note 8, 제21조 (c)항 참조. 2005년 질문지 4(g)에 대한 답변 참조: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3절 입양 규정에 입양 부모의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명시됨, 덴마크: "입양 대상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예비입양부모는 조사를 받아야 하며, 국제 입양 전 거의 모든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 코스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또한 덴마크 법률에는 예비입양부모가 3단계로 구성된 조사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201) 칠레 아동입양법 19.620/1999(제20-22조)은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의한 칠레 아동의 입양은 해당 아동의 입양에 관심이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칠레 부부 또는 칠레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없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 2006년 인도 입양지침(3.4절)은 "국내 가정으로 아동을 입양 또는 보호하는 것을 증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202) 브라질(1990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50조), 불가리아(외국인의 불가리아 국적자 입양에 대한 동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령 3호, 2003년 9월 16일, 3절), 칠레(아동입양법 19.620/1999, 제5조), 라트비아(장관위원회 규정 111호, 2003년 3월 11일, 제3조), 리투아니아(결의안 1422호, 2002년 9월 10일, 입양등록절차, 민법 제3.219조).

203) 리투아니아에서는 국내 입양이 가능한 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절차에 의거하여, 지역 또는 도시 복지 기관은 먼저 친부모 또는 친척과의 재결합을 시도해야 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의 국내 입양, 양육 또는 보호 조치가 취해짐.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입양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은 등록부에 기재된 적합한 해외 가정을 찾음. 몽고의 경우(가족법 제56조). 입양 대상 아동을 기재한 지역 또는 국가 등록부가 있음.

국내 입양만을 주선하도록 하는 것이다.[204)]

306. 그러나 자의적인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국제 입양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 일부 출신국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수가 국내의 예비입양부모 수보다 훨씬 많아서, '출신국 내 아동 배치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그리고 아동을 위해 적합한 가족이 국내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특정 기간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6.4.7 서비스 제공

307. 국내 입양시스템 개발 시, 어떠한 입양 서비스가 필요한지, 누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특히 입양 부모와 아동의 결연에 대한 연구 및 승인에 관한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08.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205)]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입양가족을 평가, 준비하며 아동 배치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과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공공당국은 직절한 기준을 유지하고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감독의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204) 불가리아(외국인의 불가리아 국적자 입양에 대한 동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령 제3호, 2003년 9월 16일, 제3조), 칠레(아동입양법 19.620/1999, 제12조), 필리핀(1998년 국내입양법(RA 8552)).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또는 친척이 아닌 무국적자의 입양은 해당 아동의 등록 후 6개월 이후에만 고려될 수 있음. 2000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참조.

205) 필리핀(1998년 국내입양법 (RA 8552), 제1조 3h절): "아동 배치 기관은 입양신청서 접수, 예비입양부모 평가, 입양가족조사 준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부처에 의해 인가 및 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제7장 :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

309. 협약 서문은 다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 입양은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206]

310. 모범적 이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2장 협약의 일반 원칙에서 살펴본 보충성의 원칙과 이전 장에서 제시한 아동을 위한 국내 해결책 조사 절차 및 지침을, 본 장의 주제인 국제 입양을 고려하기 전 모두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7.1 국제 입양 절차

311. 일단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고 해당 아동의 국내 배치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였다면, 중앙당국 또는 기타 권한당국은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07]

312. 협약에 따른 각 국제 입양의 절차적 요건은 협약 제14조-22조에 규정되어 있다(제4장). 해당 조항은 의무조항이며 친인척 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지침에서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공당국이나 제22조 (2)항의 인가단체, 제22조 (2)항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제13조와 제22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임명 또는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13.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장은 국제 입양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특히, 아동, 친부모, 예비입양부모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구축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과 부모 없는 아동이 국제 입양을 통해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제4장의 의무적 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208]

206) 협약 서문 참조, para. 3.
207) 제4조 b)항.
208) 설명서 supra, note 1, paras 282, 283 참조.

314. 제4장은 14조와 15조에서 (아동이 아닌)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절차로 시작한다. 그러나 예비입양부모를 등록하고 그 다음 입양 대상 아동을 찾는 것이 시간상의 순서이거나 입양 부모의 선택이 우선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동 최선의 이익은 본 지침 제2장 첫 번째 원칙에서부터 다음 모든 장에 걸쳐 강조된 바와 같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

315.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선순위는 현장에서 항상 인식되지는 아니하며, 적합한 가족을 찾아야 하는 아동의 필요보다는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입양 부모의 필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로부터 많은 파일을 접수하여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209]

316. 이상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출신국 권한당국은 아동이 국제 입양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영구 배치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210] 그러면 수령국은 이러한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입양부모의 서류를 요청받기 전 가정이 필요한 아동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일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출신국은 아동 중심의 국제 입양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수령국 또는 인가단체가 출신국에 압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제10장 10.4절을 참조)[211]

7.1.1 협약 제4장의 절차 요약

317. 예비입양부모는 반드시 상거(常居)하고 있는 국가의 중앙당국에 입양을 신청해야 한다.[212] 부모가 입양 부모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중앙당국은 가족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이를 전달한다.[213] 협약은 입양 부모가 상거하는 국가는 예비입양부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고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적절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18.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명부를 보유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입양 대상 아동과 아동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입양 부모 결연을 수행한다. 협약은 출신국이 아동에 대해 입양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법 또는 절차에 명시하여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319. 아동이 입양 대상으로 판단되면,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209) 2005년 질문지 4(g)~(i), 6, 16, 17, 19에 대한 ISS/IRC의 답변 참조.

210)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함. ISS/IRC 참조, <사설: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공급이고 어떤 것이 수요인가?>, 월간 리뷰 65호, 2004년 3월.

211) ISS/IRC 참조, <브라질: 파일 흐름의 역행, 아동의 권리와 국제 입양의 윤리를 존중하는 이행>, 월간 리뷰 6/2005호, 2005년 6월.

212) 제14조.

213) 제15조.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아동과 적합한 입양 부모를 결연 시키고 구상중인 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를 결정한다.[214] 그 후 중앙당국은[215] 해당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국에 전달하게 되며,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구상중인 배치 또는 위탁에 대해[216] 예비입양부모가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한다.[217] 양측 중앙당국이 입양의 진행에 동의하고[218]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구 거주하는 것이 허가되면[219] 출신국의 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예비입양부모에 위탁하는 건이 진행될 수 있다. 출신국에서 입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제28조에 따라 법원 절차를 포함한 입양 관련 법적 절차가 아동이 출국 허가를 받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7.1.2 과도한 지연의 금지

320. 다른 헤이그 협약과 달리,[220]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서류처리의 마감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연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출신국에서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7장 7.2.1절(입양 대상 여부 확인(제4조 a항))을 참조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지연은 중앙당국/인가단체가 질문 또는 소통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철저한 입양 준비와 아동 최선의 이익 여부 결정으로 인한 지연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321.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에게 제35조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키고자 하며, 특히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결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여야 함을 주지하고자 한다."[221]
>
>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222]

214) 제16조 (1)항.
215) 제16조 (2)항.
216) 제17조 a)항.
217) 제17조 b)항.
218) 제17조 c)항.
219) 제17조 d)항.
220) 1980년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상 측면에 대한 협약, 제11조, 2007년 아동 지원 및 기타 가족 유지의 국제적인 회복에 대한 협약, 제12조.
221) 제언 14.
222) 제언 16.

7.2 아동

322. 제7장 7.2절은 아동과 관련된 출신국의 국제 입양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7.2.1 입양 대상 아동 여부의 확인(제4조 a)항)

323. 입양을 진행하기 전, 출신국의 권한당국은 반드시 해당 아동이 입양 대상 아동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16조는 아동과 가정의 결연은 중앙당국이 입양 대상 아동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23] 이는 국제 입양 절차와 이전 장에서 설명한 아동의 보호체계 입소 및 가족 보존서비스와 국내 입양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324. 입양 대상 아동은 출신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224] 법과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입양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 뿐 아니라 법적 기준을[225]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입양 대상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기의 확인이나 영속적 계획의 증빙 등 어떤 특정 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26]

325. 모범적 이행을 위해, 출신국은 이행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제4조 a)항에 따라 어떤 당국이 입양 대상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의 입양 가능성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동이 가족으로 인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된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명시된, 해당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입양 가능성에 의해 보완된다.[227]

326. 유기의 경우, 아동 배경과 환경조사는 최대한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가족과 친인척을 찾고 재결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228] 고아가 된 아동에게도 유사한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의 배경 조사와 영구적인 아동 배치 결정에서 지연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가족의 보존을 통한)아동의 보호, 아동 최선의 이익의 결정과 아동을 영구 가족에 배치하는 행정 및 절차를 단축하는 것(제7장 7.1.2절 과도한 지연 참고)에는 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23) 제16조 (1)항.

224) 이 문제는 제8장 8.6.2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음.

225)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19 참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국내 입양이 우선이나 실제로 사회문화적 장벽 때문에 입양을 원하는 부모를 찾기가 어려움. 아동이 유기되었거나,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부모가 입양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음. 2000년 질문지에 대한 답변 참조.

226) 안도라(1996년 3월 21일 법, 제8-10조), 에콰도르(200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58조), 리투아니아(민법, 제3.209조).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위해, 2005년 질문지 4(c)에 대한 답변을 참조.

227) ISS/IRC 윤리 지침: 국내 및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권리 – 윤리와 원칙 – 실행 지침, 웹사이트 참조< www.iss-ssi.org>.

228) 2005년 질문지 4(c)에 대한 답변 참조, 페루(아동의 배경 및 환경 조사가 "Investigación Tutelar"에 의해 이행됨. 이는 유기 아동의 법적 상황 확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임, 법적으로 유기된 미성년자 입양을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3)조, 루마니아(법272/2004, 법273/2004). 인도(2006년 인도에서 입양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 제5장 5.5항, 2단계), 필리핀(1998년 국내 입양법(RA 8552), 제2조 5항).

327. 자발적으로 아동을 입양 보내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경제적인 유인이나 과도한 압력 없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29] 각 상황에서, 제16조 (1)a)항에 따라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위해 해당 아동의 배경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328. 그러나 부모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이 입양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동이 입양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건강 또는 연령과 같은 요소나 조건이 있는지를 고려할 때, 출생 상태, 민족, 장애 등의 요소를 근거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230]

329. 아동이 입양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부모와 아동이 결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입양법에 종종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은 이와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이 입양 대상 아동으로 확인되기 전 그리고 심지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이 "가능한" 아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선한 의도로 출발하였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금 조달이나 운영상의 제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남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협약 절차에 반할 수도 있다. 입양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협약에서 명백히 허용하고 있다.

330. 중앙등록소나 관청은 입양 대상 아동의 명단을 유지해야 한다.[231] 아동이 명단이나 등기소에 등록된 기간을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 명단에 오래 대기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31. 최종입양 명령을 내려야 하는 수령국 법원의 역할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 법원은 최종명령 전 아동 입양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 이론적으로, 출신국에서 입양 가능하다고 확인된 아동일지라도, 동 법원이 자국법(국제사법 규칙 포함)에 따라 해당 아동이 입양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양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수령국은 자국법 상의 한계를 파악하여 입양이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수령국 내에서 입양 절차상 장애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은 아동의 입양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국임을 제4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출신국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령국이 아동의 입양 적합성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수령국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해당 국가의 입양을 제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협약 제17조 c)항은 협약의 요건과 각 국가의 법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이

229) 이 부분은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볼리비아(1999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60조), 과테말라(2007년 아동 입양법, 제35조 d항), 인도(2006년 인도로부터의 입양에 대한 지침 , 제5장 5.7절).

230) UNCRC, supra note 8, 제2조 (1)항 참조.

231) 예컨대 아제르바이젠(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입양 아동의 등록 절차,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개인의 등록 절차 및 아제르바이젠 공화국 시민 권자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 절차, 국무회의 법령 172호, 2000년 9월 20일), 불가리아(가족법, 제136조 a)항, para. 2.7, 외국인에 의한 불가리아 국적자 입양 동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법령 No 3, 2003년 9월 16일, 3절), 리투아니아(민법, 제3.219조 "입양등록부" 그리고 결의안 No 1422 2002년 9월 10일,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입양 등록 절차). 또한 2005년 질문지 4(c)에 대한 스리랑카의 답변 참조.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332. 출신국과 수령국이 아동의 입양 적합성을 결정하는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협약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동일한 예비입양부모에 대해 출신국과 수령국이 적격성과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수령국 당국은 자국의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출신국에 예비입양부모 관련 서류를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출신국은 입양 진행을 허가하기 전에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양 적합성 결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수령국은 수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의 국제 입양을 거절할 수 있다.

333. 입양 적합성 선언의 중요성과 협약 요건이 부적절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판사와 법적 또는 행정적 시스템 상 관련된 이들에게 헤이그 협약 절차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출신국의 지방 판사들이 헤이그협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입양과 같이 국제 입양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수령국의 판사들 역시 협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입양과 헤이그 협약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7.2.2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였는지 확인

334. 중앙당국과 인가단체는 반드시 필요한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16조 (2)항은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동의의 증빙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c)항은 양국의 중앙당국이 입양 절차 마무리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 협약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지침 제2장 2.2.3절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필요한 동의가 획득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체약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335. 199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되고 1995년 3월 특별위원회 보고서 부속서 B에[232] 게재된 권고 양식-입양동의서-의 사용을 권장한다. 권고 양식은 본 지침 부속서 7에도 첨부되어 있다.

7.2.3 아동에 관한 보고서 준비

336. 출신국은 협약 제16조에 따라 아동에 관한 보고서 작성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체약국은

232) S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5 참조. 동 보고서 supra, para. 81도 참조.

보통 이러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게 된다.

337. 아동에 관한 보고서에는 아동의 신원, 배경, 사회적 환경, 가족정보, 아동과 가족의 의료기록, 아동의 장애에 관한 정보 등이 기록된다.[233] 이러한 보고서 요건은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친생부모의 신원과 의료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30조와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가 보존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아동이 적절한 지침에 따라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34] 이러한 정보 수집, 특히 유기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아동이 보호 및 양육 시스템에 입소하는 시점에 아동의 기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38. 제15조의 입양 부모에 대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제16조는 중앙당국이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가 먼저 작성되어야 하고 결연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내려 결연에 관련된 모든 사람, 특히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진행된다.[235]

339. 이러한 보고서 작성은 입양 부모 신청이 접수됨과 동시에 조건부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입양할 아동을 기다리는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국제 입양을 통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입양 대상 아동의 목록은 결연을 위한 준비 자료로서, 그리고 아동의 보호에 반하는 지연을 방지하여 배치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236]

340. 아동 보고서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입양은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다. 아동이 성장하여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러한 보고서는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보고서에 친부모, 생가, 동네 사진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고서는 자신의 친가족을 찾고자 하는 입양인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성인이 된 입양아동의 출생 정보에 관한 문제는 제9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341. 아동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차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의 수집과 입양 준비를 위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연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

233) 제16조 (1)a)항.

234)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09 참조. 칠레 중앙당국(SENAME)은 출생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웹사이트 참조 <www.sename.cl>, 필리핀 중앙당국(ICAB)은 입양 아동을 위한 모국 방문을 조직. 이 방문 일정에는 아동에 대한 파일을 찾아 회수하는 활동과 방문이 포함됨. 웹사이트 <www.icab.gov.ph>의 "자주 묻는 질문" 부분을 참조.

235)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08 참조.

236) 상게서, para. 311와 supra, note 231.

7.2.4 정확한 보고서의 보장

342. 정확한 보고서는 입양 전/후 단계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수령국들은 제16조에서 규정한 아동 보고서의 수준과 정확도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237] 아동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얻는 이점도 많다. 즉, 사회/의료 기록에서 수집된 아동에 대한 정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가족 결연을 증진 할 수 있으며, 예비입양부모는 아동의 입양 결정 시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는 해당 아동을 위한 향후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43. 출신국 역시 제15조에 명시된 예비입양부모와 입양 사후보고서의 수준과 정확도에 불만을 표현한 바 있다.[238]

344. 그리하여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체약국, 비정부 기구와 협의하여 아동 동의서(제4조 d)(3)항) 표준 양식과 협약 제15조와 16조의 이행에 관한 표준 양식 또는 프로토콜을 마련하도록 한다."[239]

345. 국가는 아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에 관한 정보 특히, 건강 정보나 사회적 기록의 기밀유지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관련 정보는 예비입양부모가 제안된 결연/위탁을 수락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교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6.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결연 과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을 위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관한 정확하고 온전한 의료 보고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240]

347. 일부 의료 보고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보고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37) 2005년 질문지 7(1)(a)에 대한 답변 참조: 일부 응답 국가(캐나다(알버타와 마니토바),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들은 아동의 건강 및 사회 정보 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238)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5, para. 80 참조.

239) 제언 7.

240)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12 참조.

"출신국의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HIV 또는 B형 간염과 같은 특정 검사 이행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신국과 수령국 양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생활 존중권을 유념하여, 아동 의료보고서의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41]

348. 아동에 관한 표준 양식 의료 보고서는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242] 의료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보고서는 아동의 진단과 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등록된 의사에 의해 마무리된다. 이 보고서는 입양에 적합한 아동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입양 부모가 아동의 건강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정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243]

349. 의료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접근을 장려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고 표준화를 향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표준 양식 건이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 지침 부속서 7의 아동에 대한 의료보고서 양식이 협약 제16조 1항에 따라 마련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의 기준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였음은 인정되었다.[244]

350. 어린 아동의 심리 사회적 상태를 중점적으로 다룬 어린 아동에 관한 추가 의료 보고서 표준 양식은 2005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동 추가 의료보고서 양식은 아주 어린 아동의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 등 심리/사회적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양식은 간결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출신국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245]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권고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의료보고서 표준 양식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매우 어린 아동의 경우 작업 문서 6, 8-9호에서 제안한 상기 양식에 대한 추가 문서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바이다."[246]

351.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아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자국법이 있는 경우 이것이 보고서 의무 미준수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바 있다.[247] 그러나 협약에 대한

241) 상게서, para. 58.

242) 유럽 체약국 비공식 실무 컨퍼런스를 대표하여 영국이 제출한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작업 문서 3호 참조. 양식의 사본이 본 지침 부속서 7에 있음.

243)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supra, note 14, para. 59 참조.

244) 상게서, 제언 13.

245) 추가 의료 보고서 양식의 사본이 본 지침 부속서 7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www.hcch.net> "국제 입양 섹션">>"협약">> "추천 표준 양식"에 나와 있음. 또한 2005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부속서 2에도 포함되어 있음.

246) 제언 6.

247) 제9조 a)항과 16조와 관련하여 서명 시점에 볼리비아가 유보 입장을 보인 것을 참조. 이러한 유보는 비준 전에 철회됨.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은 협약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248] 또한, 국제법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조약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249]

352. 만일 아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이로 인해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입양이 성사되지 않거나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체약국은 입양 당사자 또는 다른 국가에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보호법상의 제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353. 장애가 있는 아동에 관해서는 7.3절에서 다룰 것이다.

7.2.5 아동과 가족의 "결연"

354. 결연이라는 용어는 협약에 나오지는 않지만(이에 해당하는 프랑스어가 부재함으로 인하여)[250] 제16조 (1)항은 특정 아동을 특정 가족에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출신국이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16조 (1)d)항은 중앙당국이 "구상중인 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치에 관한 결정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양 자격이 있고 적합한 예비입양부모로 승인된 이들 중) 아동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를 찾는 과정이다.

355. 결연 과정은 예비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는 반드시 (입양이 아닌) "배치"나 "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설명서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는 수령국이 아직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가 배치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해줄 수 없다.[251]

356. 결연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결연" 첫 단계는 아동 보고서와 선택된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출신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반드시 (제16조 (1)(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소개하고 제16조 (2)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송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연에 관한 결정은 예비입양부모에게 통지하기 전 먼저 수령국의 중앙당국/인가단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경우

248) 제40조.
249)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참조.
25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18 참조.
251) 상게서

예비입양부모는 여전히 수령국에 있으며 (출신국의 중앙당국/인가단체가 아닌) 자국의 중앙당국/인가단체로부터 결연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7.2.5절 참조) 예비입양부모의 결연/위탁의 수용으로 결연 과정이 종료된다.

357. 결연은 팀이 맡아서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책임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팀은 입양 정책과 실행 훈련을 받은 아동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심리사회영역의 전문가이면 더욱 좋다. 국제 입양의 경우, 변호사가 팀에 합류하여 법적 요건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양국 간 법적인 요건들이 양립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52] 제2장 2.1.3.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연은 예비입양부모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예비입양부모가 마음에 드는 아동을 고르려고 기관을 방문하거나 사진 목록에서 보고 아동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의 나이와 성별, 장애 등의 기준에 대한 초기 스크리닝은 컴퓨터로 진행이 되더라도 결연은 컴퓨터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최종결연은 항상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58. 제29조는 친인척 입양 또는 출신국 권한당국이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연락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 4조 a)~c)항 그리고 제5조 a)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의 친부모 혹은 아동을 양육하는 기타 양육자 간 접촉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59. 결연 전 부적절한 혹은 불법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9조는 예비입양부모와 동 예비입양부모가 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의 접촉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단, 친족 간 입양의 경우 또는 권한당국이 연락에 관한 조건을 설정하고 동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락에 관한 조건을 설정하는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29조는 당사자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의 최종배치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예비입양부모와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 교환을 금지하지 않는다.

360. 이에 관하여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가는 허가가 있을 때까지 예비입양부모와 출신국 당국 간의 직접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장애 아동의 경우 등, 이러한 접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253]

361. 만약 출신국이 인가단체가 예비입양부모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입양능력을 확인하며 결연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결정이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252) ISS/IRC 윤리 지침 홈페이지 참조 <www.iss-ssi.org>, supra, note 227.
253) 제언 15.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62. 결연 결정이 입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적절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363. 실패하거나 중단된 입양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출신국의 결연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수령국이 예비입양부모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입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 성공적인 입양 요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결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2.6 아동 보고서의 전달

364. 출신국 중앙당국이 구상중인 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254]이라고 결정한 경우, 아동에 대한 보고서, 동의 증빙 자료, 배치 결정 사유를 수령국의 중앙당국으로 송부한다.[255]

365. 보고서 전송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관련 중앙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양이 인가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당국이 보고서 사본을 요구할 것인지, 일반적인 우편서비스가 아닌 전용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합의 할 수 있다. 체약국은 비공식적인 양자 간 합의 체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 간 파일 전송 관련 절차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약서 체결을 위해 제39조 (2)항에서 언급된 바를 활용할 수 있다.

7.2.7 결연의 수용(제17조 a)항과 b)항)

366. 아동과 제안된 결연에 대한 보고서가 수령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전달되면, 예비입양부모와 제안된 결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17조 a)항과 b)항에 따른 합의와 중앙당국의 승인(필요할 경우)이 출신국 중앙당국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67. 이 단계에서 아동이 출신국을 출국하여 수령국에 입국 및 영구 거주하도록 허가하기 위한 예비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

254) 제16조 (1)d)항.
255) 제16조 (2)항.

368. 결연이 수용된 후에는 절차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제17조 c)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이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령국들은 아동이 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되고 결연이 수용된 후에 입양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영구적인 가족을 박탈하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369. 협약의 제17조 a)항과 b)항은 각 국가의 당국이 입양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정은 보통 결연 결정이 논의되고 수령국의 입양 부모가 동 결정을 수용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370. 이는 예비입양부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 단계에 대한 논의는 7.4.6절과 7.4.7절을 참조한다.

371. 제17조 a)항은 수령국에서 예비입양부모가 수용한 결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이 승인을 하고 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연의 수용, 승인 통지 그리고 아동의 수령국 입국 및 영구 거주에 대한 허가는, 중앙당국이 제17조 c)항에 따라 입양 진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경우, 해당 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2.8 입양 진행 합의(제17조 c)항)

372. 제17조는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아동 배치에 대한 입양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고 양국의 중앙당국이 입양에 동의할 때까지 입양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수령국은 중앙당국이 배치와 위탁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256] 제17조는 입양 부모가 입양에 적격 및 적합하여야 하고, 아동은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구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5조의 의무사항을 재확인하고 있다.

373. 제17조는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보호망 중 하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만약 제안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거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중앙당국은 제17조 c)항에 따라 입양 진행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374. 제17조 c)항에 따른 합의를 중앙당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 합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257]

256) 예를 들어 독일(입양협약 이행법, 5(1)절).
257)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6 참조.

7.2.9 아동의 입국과 영주 허가

375. 협약은 양 국가의 권한당국이, 아동의 수령국 입국・영주자격 허가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8]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양국의 출입국 관리 당국이 하게 된다.

376. 제5조 c)항에 명시된 요건은 양국의 중앙당국이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 수령국에서 영주할 자격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함을 규정한 제18조와 연결하여 고려해야 한다.[259] 중앙당국이 이러한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동 허가가 획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비입양부모에게 출입국 관리 당국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77. 제5조 c)항은 입양의 실질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수령국 입국 및 영구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입양을 승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260] "허가를 받는다 또는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위탁이 이루어지기 전 비자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수령국에 영구 거주하기 위한 공식적인 승인이나 비자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폭 넓은 표현이다.[261] 일부 수령국은 입양이 출신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입양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입양아동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262] 또한, 제15조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 보고서에 이러한 허가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령국이 제16조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야 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국가는 제5조 c)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권한당국이 어느 기관인지 명시해야 한다.

7.2.10 양친될 자에게 아동을 위탁(제17조)

378. 제17조에 따른 합의 일체가 이루어지고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아동의 물리적 위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협약의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위탁 결정은 출신국의 당국이 내린다.

379. 일부 국가는 제23조와 동일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제17조의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두 조항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17조에서는 양국의 중앙당국이 특정한 조건이

258) 제5조 c)항과 제18조.

259)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85 참조.

260) 상게서, 186.

261) 상게서, para. 188.

262)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자동 시민권 부여가 신청자의 입양 적합성과 적격성을 명시한 선결 문서와 같은 해당 노르웨이 문서에 표시됨. 이러한 점이 처음부터 분명하므로, 일단 입양이 이루어지면 해당 아동이 노르웨이에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서류 발행이 필요하지 않음. 아동이 인도, 한국 등에서 입국할 때는 입국 비자만 있으면 됨.

충족되었을 경우 입양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23조는 최종 입양 명령을 내리는 국가가 (제17조에 명시된 바뿐만 아니라) 모든 협약 절차가 준수되었으며 입양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2.11 아동의 수령국 이동

380. 아동은 제19조~21조, 제28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수령국으로 이동된다.[263)]

381. 아동의 수령국으로의 이동이 제19조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모범적 이행이란,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입양 부모가 출신국을 방문하여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한다.[264)] 입양 부모는 출신국에서부터 아동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해 입양 전 아동의 삶과 생활환경 그리고 아동의 배경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고려되어야 할 기타 사항은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간 최초 연락과 보호관찰 기간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382. 이러한 모든 단계는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아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에게 위탁과 아동의 이동을 위한 준비와 상담을 제공하여 이 기간 동안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해야 한다.

7.2.12 제23조의 증명서 발행

383. 제23조의 "협약의무 준수 증명서"는 입양이 마무리된 후 권한당국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신속히 발행하여 입양 부모에게 원본을 교부하고, 사본은 양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제23조 (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행하는 권한당국을 협약 수탁자(네덜란드 외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제7장 7.4.11절과 제8장 8.8.3절 참조).

384. 제23조에 따른 증명서 발행의 의무와 관련하여 실제 다양한 관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증명서가 자동으로 또는 매우 쉽게 발급되는 반면 일부국가에서는 입양 부모가 이를 신청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는 입양 인정 그리고 수령국이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263) 반룬(H. van Loon), supra, note 6, p. 362, para. 239 참조.
264) ISS/IRC, 정보 참조 "출신국에서 수령국으로의 아동의 이동", 2003년 6월, 링크 < www.iss-ssi.org >.

385. 증명서 표준 양식은[265] 권고된 양식이지 규정 양식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해당 증명서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면, 협약 준수를 확인하는 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다룰 수 있으며, 이해가 용이하고 표준 양식의 사용이 더욱 보편적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7.3 특수욕구 아동[266]

7.3.1 특수욕구 아동

386. 특수욕구 아동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행동장애나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아동**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
- **연장 아동(보통 7세 이상)**
- **형제자매 그룹 아동**

387. 연장 아동들은 학대, 방임, 방치 및 장기간 시설 체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267] 특수욕구 아동의 입양을 위해서는 상세한 보고서, (아동 그리고 예비입양부모의) 철저한 준비, 아동과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정기적인 상담 및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아동들에게도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입양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88. 또한 특수욕구 아동은 배치가 어렵고 적합한 가정을 만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끝내 가족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들을 영구 배치할 수 있는 각국의 시설들을 헤이그 협약 웹사이트에 공지할 것이 제안된 바 있다. 특수욕구 아동의 국내외 배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를 확보하여 배치를 증진하고 가능한 한 이들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89. 특수욕구 아동은 입양에 있어 다른 아동들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연장 아동은 일반 입양이나 개방 입양을 통하여, 입양으로 가정에 배치된 후에도 친부모와 연계를 유지할 수 있다.

265) 양식은 본 지침 부속서 7에 있으며, 헤이그 협약 홈페이지< www.hcch.net > "국제 입양섹션">> "협약" 그리고 "권고 표준 양식"에서 볼 수 있음.
266) 2005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특별위원회 제언 1, supra, note 15은 본 지침에 "특수욕구 아동에 대한 적절한 언급"을 포함할 것을 권고.
267) 인도 중앙입양국의 특수욕구 아동에 대한 지침 참조 <www.adoptionindia.nic.in/definition_sp_needs.htm>.

그러나 영구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입양만이 협약(제2조 (2)항)의 범위에 포함된다.

390. 출신국이 국제 입양에서 대부분 특수욕구 아동을 제안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수령국은 이러한 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아동의 입양 정보를 알리고 준비함으로써 출신국에 어리고 건강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7.3.2 특수욕구 아동의 예비입양부모

391. 특수욕구 아동은 이러한 특수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입양 부모를 만나야 한다. 모든 예비입양부모가 이러한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기질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268] 특수욕구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는 경우 아동 상황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적합한 입양 부모를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 등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 입양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연 절차가 있어야 하며, 또한 구체적인 입양 사후관리, 입양 부모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92. 또한 예비입양부모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과 훈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특수한 자질 및 능력 뿐 아니라, 문제를 대처하는 예비입양부모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7.3.3 입양 지원을 위한 협력

393. 특수욕구 아동을 위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은 출신국과 수령국 간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양육 및 지원에 관련된 (또는 관련될) 각국 전문가 등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394. 특수욕구 아동의 입양 촉진을 위한 접근법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269] 첫째, 출신국은 국제 입양 대상인 특수욕구 아동의 수와 프로필을 파악하여 이러한 상세 정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원 정보는 제외)를 수령국과 공유한다. 둘째, 국제 입양 대상인 특수욕구 아동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수령국의 인가단체에 대한 인가 및 출신국의 승인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출신국은 특수욕구 아동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는 수령국과 해외 인가단체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조치로 특수욕구

268) 구체적인 심리·사회적 작업과 이러한 아동에 대한 절차적 대응에 관한 ISS/IRC, 사설: <특수욕구 아동의 입양 촉진>, 뉴스 공지 67호, 2004년 5월을 참조.
269) ISS/IRC 대표가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한 제안.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여 주기 위해, 서류 흐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신국은 해당 특수욕구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있는 예비입양부모를 찾아 줄 것을 수령국에 요청할 수 있다.

7.3.4 입양 전/후에 고려해야 할 요소

395. 특수욕구 아동의 입양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 아동의 건강과 의료 정보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위탁가정에서 발생한 건강상의 사건들 포함)

b) 아동의 발달상의 필요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c)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결연 결정

d) 입양 부모의 양육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e) 입양가족 구조와 관계에 아동이 미치는 영향

f) 기타 가족 및 환경적 요인들(예. 입양가정에서 전문시설까지의 거리)

g) 수령국의 적절한 사후입양지원 제공 여부

h) 특수욕구 아동의 입양 계획 및 지원 능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인가

396.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하였다.

> "예비입양부모를 찾기 위해 출신국이 아동의 필요에 대한 정보를 수령국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270]
>
> 모범적 이행을 위하여, 수령국 당국이 출신국 아동의 필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출신국의 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271]

7.4 예비입양부모

397. 제7장 7.4절은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수령국에서의 국제 입양 과정을 설명한다.

270) 제언 12.
271) 제언 13.

7.4.1 입양 부모 신청과 평가

398.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협약 범위에 속하는 입양은 수령국 권한당국이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하기에 적격 및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272]

399. 수령국은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하기에 적격하고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예비입양부모의 신청서를 받고 이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할 당국 또는 기관을 정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전, 입양 부모가 입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입양관련 정보 세션에 1회 이상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 적격성은 입양 적합성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400. 협약은 "적격(eligible)"과 "적합(suited)"을 분명하게 다른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격"은 모든 법적인 요건의 충족을 의미하며, "적합"은 필요한 사회심리적인 기준의 충족을 의미한다.[273]

401. 협약은 권한당국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사회 복지 전문가에 의해 이행되고 있으며, 권한당국이 평가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하여 신청자가 제15조에 명시된 적격성과 적합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274]

402. 자국의 아동을 수령국으로 입양시키고자 하는 출신국은, 수령국이 예비입양부모로 선별한 부부나 개인의 입양 주체로서의 적합성이 적절히 그리고 철저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275]

403.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정조사'라고 알려진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입양 전 훈련과 준비 뿐 아니라 가족 주거지 방문과 의학 및 심리 평가를 통하여 예비입양부모가 입양 부모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기질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276] 이러한 작업은 결연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277]

---

272) 제5조 a)항.

273)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80 참조.

274) 예를 들어 호주(서부)의 1994년 입양법 40절, 예비입양부모 지원자 평가를 참조.

275) 예를 들어 과테말라 (2007년 입양법, 제23조 j), 도미니카 공화국(아동 및 청소년 보호제도 및 기본권에 관한 법률, 제 165조와 166조) 그리고 2005년 질문지 4(g)에 대한 스리랑카의 답변을 참조" 신청자들이 스리랑카에 오면 추가 조사가 진행됨"

276) 예를 들어 벨기에(민법 제346.2조), 덴마크(입양법, 통합법 928, 2004년 9월 14일, 입양기관 승인에 대한 행정명령), 스페인(2007년 국제 입양법, 제10조).

277) 가정조사 이행 방법에 대한 국가별 정보는 2005년 질문지 4(g)에 대한 답변을 참조.

404. 중요한 문제는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평가가 모든 국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범주의 아동과 관련해서(예. 특정 연령의 특수욕구 아동, 특정연령의 일반 아동, 특정 국가의 아동)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예비입양부모가 굳이 국제 입양을 통해 가족을 찾을 필요가 없는 국가의 건강한 아동을 입양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고, 출신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수령국은 다양한 출신국의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필요를 감안하여, 부모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그들의 기대를 조절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수행한다.

7.4.2 예비입양부모의 준비

405. 협약에는 권한당국이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필요한 경우)고 명시하고 있다.[278] 여기서 상담이란 입양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며 훈련과 교육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406. 체약국은 수령국에서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279] 예비입양부모의 기대를 조절하고 출신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일부 사례에서, 예비입양부모가 본인이 아동에 대한 권리나 자격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며, 입양 대상 아동의 수나 프로필이 입양 부모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07. 일부 전문가들은 예비입양부모 평가에 입양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과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아동 입양을 신청한 예비입양부모는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보장되지 않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는 아동을 위한 '가정을 제안'하는 것뿐이다.

408. 예비입양부모가 아동 입양으로 인한 문제와 유익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입양 부모 됨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준비가 필요한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 아동이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경우, 아동이 재난으로 부모/형제를 잃어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 입양이 아동에게 보육원에서 함께 지낸 친구(심지어 형제/자매)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경우, 아동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입양 당시에는 발현되지 않았던 정신적, 신체적, 의료적 문제가 발현된 경우, 아동이 부적절한 주산기(출산 전후 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 아동이 시설에서 불충분한 자극, 방임, 양육 단절(예. 양육자의 잦은 교체, 가정

278) 제5 b)조.
279)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또는 위탁 가정으로의 잦은 이동 등) 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보다 심각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409. 예비입양부모는 입양 대상아동의 실제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사랑이 충만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과거 불우한 배경이나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성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비입양부모들은 왜 아동이 자신들의 관심과 애정에 반응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의 발달단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입양 사후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10. 훈련 및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은 각 국가가 결정할 문제이다. 일부 국가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필수 준비교육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280] 예를 들어, 부모 적합성 평가를 통해 입양 절차의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입양부모가 입양 부모로 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입양 준비 과정이 시작된다.

411. 보고서의 통일성 부족과 예비입양부모 준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은 보통 5세 이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다. 모든 부모가 이러한 아동의 입양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12. 만일 부모가 입양 준비교육을 이수하였음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보는 경우 이는 출신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7.4.3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보고서 작성

413. 협약은 중앙당국이 입양 부모의 신원, 입양 적격성과 적합성, 배경, 가족/의료 기록, 사회적 환경, 입양 이유, 국제 입양 수행능력, 양육이 적합한 아동의 특성 등을 포함하는 입양 가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1]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보고서는 부모의 입양 적격성과 적합성을 결정하는 사회복지사가 작성한다.

414. 제22조 (1)항은 수령국이 보고서 준비의 책임을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협약은 보고서가 22조 (2)항에 명시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

280) 예를 들어 2005년 질문지 4(h)에 대한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의 답변을 참조.
281) 제15조 (1)항.

의해 작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제22조(5)항에 따르면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고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 1항에 따라 중앙당국이나 기타 당국 또는 기관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제22조 (2)항에서 언급한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2조 (1)항에 따라 이들은 기타 당국이나 기관의 책임 하에서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15.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정확한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보고서의 꼼꼼함, 정확성, 통일성 부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왔다.

416.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국제 입양 신청자 평가를 위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체약국, 비정부기구와 협의하여 아동의 동의서 표준 양식과 협약 제15조, 제16조의 운영에 대한 표준양식 및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282]

417. 주안점은 입양 부모 평가 및 준비, 제15조에 따른 신청자 보고서 작성에 있어, 수령국 당국이 철저함과 객관성을 발취하는 것에 있다.[283] 국가는 다음 단계별로 담당 권한당국, 개인, 기관, 사용될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부모의 입양 적격성 평가**
- **부모의 입양 적합성 평가**
- **예비입양부모에 상담 제공**
-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준비 감독과 정확성 확인**
- **제5조 a)항과 b)항에 따른 결정**
- **출신국에 보고서 전달**

7.4.4 입양 부모에 관한 보고서 전달

418.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입양 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한다.[284]

282) 제언 7.
283)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제언 14 참조.
284) 제15(2)조.

수령국은 출신국에 정확한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285] 7.2.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국가 간 비공식적인 특정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7.4.5 출신국에서의 신청서 접수

419.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에게 요청할 정보 및 서류의 범위 그리고 신청 접수를 담당할 당국이나 기관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능한 방법에 의해 수령국에 공지되어야 한다.[286]

420. 예비입양부모는 반드시 자국의 중앙당국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출신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287]

421. 모범적 이행을 위해, 출신국의 권한당국은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과 적합성이 출신국의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해야 한다.[288]

422. 일부 부모들은 아동을 선택하기 위하여 출신국에 방문하고 심지어 친생모와 직접적으로 협상하기도 한다.[289] 이러한 관행은 아동 권리의 침해를 야기 할 수 있으며, 헤이그 협약 제29조의 위반이다. 체약국은 결연 전 접촉을 방지하고 제29조의 발효를 위한 법률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7.4.6 결연의 공지

423. 선택된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 결연이나 위탁에 대한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2)항과 이 지침 제7장 7.2.5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절한 당국을 통해 하도록 한다.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체약국은 제안된 결연을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통보 받기 전에 출신국의 당국이나 기관이 예비입양부모에게 공지하는 관행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또한 결연 결정 전에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을 방문하여 입양 권한당국이나 기관과 접촉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하였다.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관행의 저지를 위한

285) 이탈리아(1983년 5월 4일의 법령 184(1998년 12월 31일 법 476으로 개정됨), 제3조, 제30조)는 보고서가 먼저 청소년 법원으로 전송된 후 국제 입양 위원회로 가도록 함.

286) 제7조 (1)(b)항에 대한 스위스 답변 참조. 스위스는 "입양 부모에 요청되는 서류와 입양 대상 아동에게 요청되는 서류 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상설 사무국이 번역함].

287) 제14조.

288) 칠레, 리투아니아, 페루는 부모의 보고서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음. 2005년 질문지 7(1)(b)에 대한 국가들의 답변을 참조. 보다 자세한 예는 2005년 질문지 4(g)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답변을 참조. 또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스리랑카의 답변을 참조.

289) ISS/IRC, <가족을 잃은 아동의 권리: 그루지아>, 월간 리뷰 71호, 2004년 10월.

권고가 7.2.5절에 명시되어 있다.

7.4.7 결연의 수용과 중앙당국의 합의(17조 a), b)항)

424. 출신국이 아동에 관한 보고서와 그 아동에게 제안된 예비입양부모 결연을 전달했을 때, 중앙당국을 통해 또는 인가단체나 허가된(승인받지 못한) 개인을 통해 부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예비입양부모의 결정은 출신국에 공지되어야 한다.

425. 많은 국가들이 예비입양부모가 위탁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었으며, 또한 위탁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영구 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을 고려할 시간을 얼마나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면서 상당히 어렵다. 분명한 기한과 절차를 가지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426.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입양부모가 위탁을 거절한 경우 곧 다른 아동과 결연이 된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입양부모가 위탁을 거절한 경우 그들은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위탁의 거절이 예비입양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수립된 경우, 모든 당사자들은 위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와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427. 또한,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되기 전에 위탁에 동의해야 한다.(제17조 b)항)

7.4.8 아동의 이민 절차(제5조, 제17조 d)항, 제18조)

428. 아동의 이민 절차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동을 입양 부모에게 위탁할 수 없다(제17조 d)항).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자국을 출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만 한다(제18조). 수령국의 당국은 아동이 자국에 입국 및 영구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5조 c)항).

429. 출신국의 이민허가에 관한 내용은 7.2.9절을 참조하라.

7.4.9 중앙당국의 입양진행에 대한 동의(17조 c)항)

430. 예비입양부모가 결연이나 위탁을 수락하고 각 당국이 수락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해당

아동의 위탁에 동의한 후, 해당 위탁과 입양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양국의 중앙당국이 해당 입양의 진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제17조 c)항). 양 국가에서 협약의 의무가 준수되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동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단계의 중요성은 7.2.7절과 7.2.10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431. 일반적으로 예비입양부모는 제17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초대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의 양육자와 접촉하기 위해 출신국을 방문할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출신국에 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출신국의 권한당국이 접촉을 허가한 일부 경우에는 직접 접촉이 적절하고 제29조항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32. 출신국의 동의와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2.8절과 7.2.10절을 참조하라.

7.4.10 출신국 방문

433. 협약 제29조는 보호망이 구축되기 전에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과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 출신국은 국가프로필 란에 예비입양부모가 언제 출신국을 방문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 출신국은 결연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 예비입양부모와의 인터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양 대상 아동이 특수욕구 아동인 경우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위탁이 제안된 후 입양 단계가 진행되기 전, 적어도 한명의 부모가 아동과 만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434. 가능한 경우, 입양 부모는 입양 결정이 내려지거나 양육권을 부여받은 후 아동을 수령국까지 동반해야 한다.

435.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면, 이를 통해 아동의 입양 전 삶과 생활 조건, 배경을 알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출신국은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7.4.11 제23조의 증명서 발행

436. 제23조의 증명서 발행에 관해서는 7.2.12절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8.8.3에서 논의할 것이다.

437. 증명서는 입양을 완료한 국가가 발행한다. 수령국에서 입양이 완료된 경우, 증명서 사본을 출신국 중앙당국으로 송부한다. 증명서는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해당 입양이 자동적으로 인정됨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제8장 :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

438. 이 장에서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본질과 해석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답변이 된 질문들은 대부분, 국가, 중앙당국, 기관들이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전달한 것이다.

8.1 협약의 일반적인 본질

439. 첫 번째 이슈는 협약의 일반적인 본질과 구조, 입양에 관한 국내법과의 관계, 협약 조항이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완되거나 또는 되어야 하는 정도이다.

8.1.1 기본 절차와 최소 기준

440. 협약은 입양신청과정, 아동과 입양 부모에 관한 보고서, 필요한 동의의 확보, 관련 두 국가 간 정보의 교환, 위탁 결정, 수령국의 아동 영구 거주에 대한 승인, 출신국에서 수령국으로의 아동 이주에 적용되는 국제 입양의 기본 절차와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441. 기본 절차와 최소 기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442. 첫 번째는 협약 절차는 보다 구체적인 국내법 규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예컨대 협약 제4장에 명시된 절차)과, 협약 절차에는 특정 법체계 안에서의 이행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광범위한 규칙들(예컨대 부적절한 재정 등의 이익 또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443. 두 번째 견해는 협약 절차는 '기본적'이며 협약 요건은 '최소' 기준이라는 뜻은 체약국은 어떠한 제약 없이도 협약보다 더 엄격한 국제 입양에 관한 통제 및 보호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규칙이 협약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4조의 조건인 "국제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아동의 기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나타내고 있다.[290] 제5조 역시 마찬가지이다.[291] 체약국은 양자 간 혹은 지역적 협정을 통해 다른 체약국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협약 적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의 기본적인 절차 요건이 준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292]

8.1.2 협약은 획일적인 입양법이 아니다.

444. 협약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 및 보호망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협약은 반드시 동일한 국내 입양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협약은 입양에 관한 다양한 국내법을 가진 체계 간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협약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에 적용이 되고, 입양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법을 허용(예컨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한 결정)한다.[293] 협약은 또한, 입양이 출신국 또는 수령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아동의 수령국으로의 이전 또는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 출신국이 해당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입양이 반드시 자국에서 이뤄질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다.[294]

8.2 국제 입양에 대한 배치 제한

445.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을 고려할 때 출신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른 체약국들과 협력 약정을 마련해야 하거나 최소한 협약의 당사국인 모든 수령국으로부터 입양 요청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들은 협약에 가입하기 전이라면 협력관계를 몇몇 수령국에 제한할 것이다. 출신국 당국은 출신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승인(제12조에 따른)을 받고자하는 해외 기관(인가단체)의 문의가 폭주할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출신국에는 국제 입양에 적합한 아동이 얼마 없을 수 있고, 자원 역시 넉넉지 않아서 합의를 적절히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숫자의 수령국들과만 합의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출신국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근거로 문화적 유대감이 더 밀접한 국가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같은 특정 국가와의 협정을 더 선호할 수 있다.

446. 동시에 국가의 규모와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적은 수의 국가와 협력을 맺어 왔던 수령국은 수많은 다양한 출신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려할 수 있다. 또한 수령국은 모든

29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109 참조.

291) 상게서, para. 175.

292) 제3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체약국은 상호관계에서 이 협약의 적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체약국과 합의할 수 있다. 이들 합의는 제14조에서 16조까지, 제18조에서 21조까지만 배제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를 체결하는 체약국들은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293) 과테말라에서는 배우자의 자녀 입양은 공공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2007년 입양법, 제39조).

294) 제28조.

출신국과 협력을 위한 개방형(수정 가능한) 협정(open-ended commitment)을 체결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며, 때때로 절차에 결점이 있거나 부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를 제한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한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47.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는 입양에 대한 제한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한 보편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이 임의적인 제한이어서는 안 된다. 수령국과 출신국은 모두 다른 체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8.2.1 체약국은 국제 입양에 특정 수준으로 관여할 의무는 없다.

448. 협약을 비준하거나 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체약국이, 국제 입양을 통한 최소한의 아동 제공 및 수령 의무라는 의미로 국제 입양에 특정 수준으로 관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 시점에 국제 입양이 필요한 아동(또는 특정 범주의 아동)이 없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약에 명시된 체약국 간 협력의 의무는 출신국이 다른 국가에 국제 입양에 대한 관여 수준을 알려줌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449. 그러나 협약은 국제 입양이 체약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적합하다고 간주된 경우, 협약에 명시된 규칙과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8.2.2 출신국은 협약의 당사국인 모든 수령국과 국제 입양조약을 맺을 의무가 있는가?

450. 기본적인 관점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입양조약이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은 국가에 국제 입양조약을 체결할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출신국은 특정 수령국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또한 출신국의 역량 부족 및 자원 희박은 출신국이 효과적이고 관리가 잘되며 적절히 감독되는 협력조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할 국가 또는 인가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수령국 또는 인가단체와의 협력은, 이로 인해 출신국이 국제 입양과정에 필수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통제 수준이 희석되는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

451. 협약에 따른 일반적인 협력 의무는 체약국들이 서로 개방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이 자국의 특정 정책이 언제, 그리고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또한 수령국은

수령국으로부터 과도한 압력을 받아 출신국이 대안적인 아동양육 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452. 두 국가 간의 협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조약 체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국의 특정 기관이나 조직의 책임을 규정하거나 입양 신청에 수반되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 등이다. 협약은 이러한 조약 체결의 요건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입양을 추진하기 전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절차 수립을 요구하기도 한다.[295] 이것은 보통 양자 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협약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며 추가적인 요건은 양자 조약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양자 조약 또는 합의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어 수립될 수 있다. 제39조 (2)항의 공식적인 양자 협정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제39조 (2)항에 따라 수탁자에 적절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8.2.3 수령국은 협약 당사국인 모든 출신국과 국제 입양조약을 맺어야 하는가?

453. 이러한 이슈는 예를 들어, 수령국에 거주하는 자가 수령국과 협정을 맺은 적이 없는 출신국에서 입양할 아동을 찾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출신국이 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수령국 당국이 입양을 촉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454. 수령국이 예비입양부모를 대신하여 모든 체약국에 서류를 보낼 의무가 없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원칙상의 근거와 실제적인 근거가 있다. 수령국은 협약에 부합하는 범위 내이고,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 포함된 보호망 이외에도 추가적인 보호망을 적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령국(또한 출신국)은 특정 입양 신청 진행이 준비되기 전 협약 조항을 보강할 수 있는 양자 조약 또는 프로그램 마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원상의 이유로 제한된 수의 조약 또는 프로그램만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령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455. 특정 수령국의 경우 관행적으로 입양 개시를 위해 제15조에 의한 파일이나 보고서를 출신국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 어떠한 반응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많은 수령국의 경우 특정 국가의 입양 부모를 승인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존에 조약이 체결된 국가들이다. 또한 파일을 송부하여 응답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큰 국가로 파일을 송부하는 경우, 예비입양부모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예비입양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5) 예를 들어, 호주, 볼리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파나마,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456. 모든 체약국은 아동 보호, 협약의 목적 달성[296] 및 입양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협약 운영에 대한 사항 상호 업데이트를 위해 협력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297] 수령국과 출신국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 범위를 제한하는 관행 또는 조약에 관하여 모든 체약국에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수령국과 출신국은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문의에 답해야 한다.

8.2.4 출신국은 국제 입양의 (임시적)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가?

457. 출신국이 특정 기간 동안 국제 입양의 중단을 선언한 사례가 있었다.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이러한 중단 선언이 협약의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언해달라는 문의를 받았다.

458. 협약은 국제 입양에 관여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협약의 일반 원칙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입양의 중단 선언이 반드시 협약 의무와 부합할 필요는 없다. 중단 선언을 하게 된 아동보호와 관련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제 입양에 적용되어야 할 절차와 보호망이 와해되었거나 부패와 남용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경우, 출신국 당국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국제 입양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러한 개혁을 불가능하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459. 그러나 중단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중단 시점에는 여전히 계류 상태에 있는 국제 입양 신청을 위해 신중하게 수립된 정책의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입양이 진행되는 양국의 중앙당국 간 합의를 포함하여 제17조의 조건이 이미 충족된 사례에 중단 적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동의 영구적인 가족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건의 경우, 대부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6장 6.4.2절을 참조하라.

460. 한편으로, 협약은 국제 입양에 참여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지 않으며 자국 내 아동배치의 가능성을 탐색 한 후 선택 사항으로 국제 입양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협약은 인격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아동은 가능하면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을 따르고 있다.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특히 출신국에서 시설 양육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아동들에게 가족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국가가 국제 입양 중단 여부를 고려할 때 또는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그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헤이그 협약에 따라 적절히 규제되는 국제 입양만이 아동에게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되는

296) 제7조 (1)항.
297) 제7조 (2)항.

아동들이 출신국에 아직 남아 있다면, 엄격하고 장기적인 국제 입양 중단이 이러한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461. 중앙당국 간의 의사소통은 입양의 중단 또는 제한의 영향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체약국(수령국이든 출신국이든)이 입양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즉시 다른 체약국에 통지되어야 하며 중단이 시작되기 전 진행되고 있던 모든 입양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연이 이루어졌고 예비입양부모가 그 결연을 수락하면, 이는 '이행'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이 이루어진 이행 사례는 아동이 최선의 이익일 경우 입양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

8.2.5 수령국은 특정 출신국으로부터의 입양을 제한할 수 있는가?

462.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해 수령국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망 또는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협약 하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신국에서 심각한 남용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협력 절차를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없다면, 출신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출신국 또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463. 그러나 특히 추가적인 보호망이나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 입양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면, 특정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7조는 수령국이 이러한 보호망을 적용하는 절차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 따라 수령국은 남용이나 부적절함이 증명된 경우 입양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7조는 반드시 위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호망이 적용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464. 제17조에서 강조하는 철학은,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구 거주할 허가를 받는 결정 등의 모든 중요한 입양 요건은 위탁 이전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위탁이 이루어지면, 이는 기정사실이 되어 예비입양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건 또는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입양 부모와의 관계는 수립되었으나 입양은 진행되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출신국에서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 수령국이 추가적인 요건이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8.3 협약의 발효에 관한 질문들

465. 협약의 절차와 중요성,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은 부속서 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부속서 1은 또한 협약의 효력 및 발효에 관한 조항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8.3.1 어떠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하는가?

466. 제43조는 어떠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는지를 설명한다. 1993년 17차 회의 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 17차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 해당 국가 리스트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 <www.hcch.net>의 "국제 입양섹션" 메뉴로 가서 "체약국"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467.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 제44조에 있다. 이들은 비준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제44조 (3)항에 의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비준이나 가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8.3.2 제46조 (2)항과 제44조 (3)항과의 관계

468. 협약 발효를 위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이후) 3개월의 기간을 규정한 제46조 (2)항과 6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한 체약국과 가입국 간 협약 시행을 금지하는 제44조 (3)항은 다소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469.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협약은 제46조 (2)항에서 규정한 최초 3개월이 지난 후 가입국과 기존 체약국 간에 이행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점은 타당성이 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협약은 이의 제기를 위한 6개월 후에 체약국과 가입국 간 시행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해석이 더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44조 (3)항의 문구는 6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입안자의 의도가 그러하였다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다.
- 제41조의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협약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제41조는 협약이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 수리된 신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각 국에서 "효력이 발생"된 날짜는 제44조 (3)항이 아닌 제46조 (2)항에 따른다.
- 협약이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기존 체약국에 실제적 어려움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기존 체약국이 제44조 (3)항에 따라 새로 가입한 국가에 이의 제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이 시기에 동 국가와 관련된 입양 진행을 허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 대부분의 경우(예. 신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 (3)항에 의한 이의 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체약국 간 협약 발효의 지연이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약이 발효되기 전 이루어진 입양에는 협약이 제공하는 보호와 모든 체약국 간의 자동 인식의 이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8.3.3 누가 제44조 (3)항에 따라 이의를 제할 수 있는가?

470.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체약국이 새로운 국가의 가입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471. 다른 하나는 새로운 비준국이나 가입국이 다른 체약국의 더 이른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의는 반드시 새로운 비준국이나 가입국이 자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 문서를 제출한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472. 체약국은 제43조에 따라 비준의 자격을 가진 국가의 비준을 반대할 수 없다.

8.3.4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이미 계류 상태에 있는 국제 입양에 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473. 이러한 문제는 협약 제41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 "이 협약은 협약이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 제14조에 따른 신청이 수리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474. 후에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이 된 국가와 기존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 입양 신청에 관해 우려가 표명되었다. 제41조는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신청이 접수된 경우 (협약이 해당 국가 중 한 국가 또는 양국에서 발효되기 전)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설명서 583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41조는 일반적인 협약의 발효의 문제가 아니라 "협약이 이미 출신국과 수령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의 특정 사례에 대한 적용"의 문제에 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75. 간단히 말해, 양자 협정에 의해 이미 계류 중인 신청은 동 협정에 따라 진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양은 제23조에 따라 협약에 준하여 이루어진 입양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서 다른 체약국 법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는다.

476. 양자 협정의 당사자들이 현재 협정에 의해 진행 중인 입양에 헤이그 협약의 절차를 적용하고자 (또는 적어도 신청자에 이러한 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수도 있다. 양국이 동의하는 경우 적절한 사례에서 헤이그 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는 두 국가 간 협약이 발효된 후 제14조와 제41조에 따라 적절한 중앙당국에 입양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헤이그 협약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능한 한 이미 이행된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점은 모든 체약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완료되었던 진행에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477. 특정한 출신국에서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해당 출신국 아동의 입양을 중앙당국에 신청한 입양 부모를 위해 유사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는 필요한 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평가 준비가 이미 이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점은 협약이 해당 양국에서 발효된 이후 협약 외 입양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8.4 상거소와 국적

8.4.1 아동 또는 예비입양부모의 국적이 협약의 범위 결정에 관계가 있는가?

478. 아동이나 입양 부모의 국적은 협약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무관하다. 제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출신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이, 다른 체약국(수령국)에 상거소를 둔 부부 또는 1인에 의해 출신국에서 입양된 후에 또는 수령국이나 출신국에서 그러한 입양을 하기 위해, 수령국으로 이동했거나, 이동하고 있거나 또는 이동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479. (아동과 입양 부모의) 상거소는 중요한 연결 요소이다. 만일 국적이 프랑스이지만 상거소가 벨기에인 입양 부모가 다른 체약국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벨기에 중앙당국이 된다.(제14조 참조)

480. 브라질 국적인 아동의 실제 상거소가 코스타리카일 경우 협약에 따라 코스타리카 당국이 신청을 접수하고 협약 절차 및 보호망을 적용할 책임을 진다. 동일한 아동이 입양을 위해 아동의 국적 국가인 브라질로 이동된 경우에도 협약의 절차와 보호망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8.4.1.1 상거소와 임시근로자

481. 일부 사례의 경우, 예비입양부모 상거소의 개념은 국제 입양의 특정 사례가 협약과 그 보호망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시근로자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국이 예비입양부모의 실제 상거소가 어디인지 결정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이것이 국제 입양인지 국내 입양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중 국적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국적국 중 한 나라를 방문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후, 그 아동을 자신의 상거소 국가로 데려갈 수 있다. 수령국은 이러한 입양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입양의 인정이 거부되면 해당 아동은 어중간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행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례가 협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는 아닐지라도 남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제10장 10.2절, 제8장 8.4.5절과 8.7.2절에 이와 관련된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

482. 아동이 출신국에서 떠나는 시점이 입양이 국내 입양인지 국외 입양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비입양부모의 의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만일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의 거주자가 되어 출신국 국내법에 따라 입양을 하였으나 몇 년 후 자국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는 협약에 따른 입양이 아니다.

483. 상거소는 사실의 문제이다. 임시근로자와 관련하여, 만일 이들이 새로운 국가(출신국)에 상거소를 마련했고 동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입양하기를 원한다면, 출신국의 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해당 임시근로자의 모국법 또한 후에 그 가족이 모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아동이 모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된다.

484.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임시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입양(국내 입양이든지 국제 입양이든지) 과정을 밟고 있는 모든 부부는 직장이나 가족 관련 사유로 다른 국가로 갑작스럽게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양 사후 문제는, 새로 이주한 국가의 당국과 협력하여, 입양을 진행한 국가의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98)]

8.4.2 아동의 국적이 아동의 입양 대상 여부 결정과 관련이 있는가?

485. 제4조 a)항은 협약에 따른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출신국의 권한당국은 해당 아동이 입양 대상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입양 대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298) 반룬(H. van Loon), supra, note 6, p. 347, para. 204.

출신국의 법률(준거법의 지정 원칙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출신국은 보통 자국의 국내 입양법 연관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준거법 지정 원칙에 의해 외국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출신국에서 아동의 입양 대상에 관한 문제에 적용 가능한 법은 아동의 국적 국가의 법인 경우도 있으며, 아동 국적 국가의 법이 협약에 따른 아동 입양 대상 결정에 관련된 경우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8.4.3 입양 부모의 국적이 입양 부모의 입양 적격성과 관련이 있는가?

486. 제5조 a)항은 협약상의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수령국의 권한당국은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적격성 및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적격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항은 수령국의 법률(준거법의 지정 원칙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수령국은 보통 자국의 국내 입양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수령국은 준거법 지정 원칙에 의해 예비입양부모가 이들의 국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격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입양 부모의 국적이 그들의 적격 문제에 관련성을 갖는 것은 예외적일 때 한한다.

4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국에 거주하는 출신국 국민은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국내 입양법과 절차를 사용하여 출신국/국적국의 친인척/비친인척 입양(non-relative adoptions)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입양은 수령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아동들은 수령국 입국이 거부되어 '입양부모'와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488.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출신국가의 국내 입양법 절차와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요건 및 절차 간, 특히, 중앙당국의 책임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48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가 자국의 국내 입양법에 중앙당국의 책임과 1993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내 입양과 관련된 법과 절차는 아동의 친인척이나 아동 출신국의 국민일지라도 상거소가 타국인 개인에 의한 입양은 명백히 제외하고 있거나 이러한 절차에 국제 입양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친족 간 입양에 관한 제8장 8.6.4절 참조)

8.4.4 예비입양부모가 체약국에 상거소를 구하는 것이 수월한가? 그리고 상거소를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이하며, 이는 해당 체약국에 상당 금액의 자금을 이체 또는 투자함으로써 가능한가?

490. 입양 부모가 수령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수령국의 법원/당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상거소'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국내 생활과 직업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국가라는 의미의 사실적인 개념이다. 세금을 목적으로 한 특정 거주 지위의 취득이 상거소와 연관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상거소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판사나 기타 당국은 수령국으로의 자금 이체가 실제 거주의 진정한 변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입양 신청을 위한 수단일 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그리고 관할권이 이러한 취약한 기반에 놓여있는 경우, 이는 협약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허가된 입양은 협약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8.4.5 협약 입양은 아동의 국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어떠한 경우의 입양이 아동에게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기존 국적을 잃게 하는가?

491. 이러한 사항은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보다 아동이 무국적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작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2.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 및 국제 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권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492. 특히, 국적법 상충관련 질문에 대한 협약[299] 제17조는 입양을 통한 국적의 상실은 입양 부모의 국적을 피입양인이 취득하는 조건부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원칙이 유럽아동입양협약 제11조 (2)항에서 확인되고 있다.[300]

493. 두 번째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동과 입양 가족과의 통합이다. 이는 아동이 입양 부모의 국적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 유럽협약의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부부가 아닌 한 사람에게 입양된 아동이 입양부(모)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 입양된 아동이 부부의 공통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입양 부모가 국민인 체약 당사국은 아동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299) 1930년 4월 12일 헤이그에서 체결됨.
300) 1967년 4월 24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됨.

494. 세 번째 원칙은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 (c)항은 당사국들이 국제 입양 대상 아동에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한 보호망과 기준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국내 입양의 효과가 아동에게 입양 부모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원칙이 수령국내 국내 입양에 적용되어야 한다. 헤이그 협약에서 친양자 입양 아동은 수령국내 유사한 입양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301]

495. 이러한 일반 원칙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관행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국적의 상실과 관련된 현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외국인에 의한 입양으로 인한 국적 상실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결론은 국적 상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적 소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예, 그리스), 많은 국가들이 국제 입양이 자동적으로 국적 상실을 초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예, 한국)."[302]

496. 몇몇 국가는 아동이 자국의 국적을 유지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Adolescents' Code) 제92조는 외국인에게 입양된 미성년자는 입양 부모의 국적 취득에 대한 침해 없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명백히 국적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자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303]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도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1995 인도 민법Citizenship Act 1995) 제8조에 의거하여 인도 국적의 자발적인 포기는 가능하다. 루마니아 시민권에 관한 1991 루마니아 법(Romanian Law 1991)[304]에 따라 외국인에 의해 입양된 루마니아 국적 아동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입양 부모의 요청으로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루마니아 국적을 상실한다. 아동이 14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입양이 무효 또는 파기될 때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루마니아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97. 국제 입양을 통한 국적의 획득에 관하여, 1993 헤이그협약 당사국 간의 분명한 동향은 입양 부모(혹 입양 부모 중 한 명)가 수령국 국적을 가진 경우 수령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입양된 아동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2000년에 열린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01) 제26조 (2)항.
302) 반룬(H. van Loon), supra, note 6, p. 298, para. 129 참조.
303) 콜럼비아 정치헌법, Title III, 거주자와 영토 제1장, 국적, 제96조 참조.
304) 1991년 3월 법률 제21호, 제28조.

"80 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수령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아동에게 부여하는 분명한 동향을 밝히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설명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수령국 국적 취득은 수령국 국적을 가진 입양 부모 중의 한 명에게 달려있다. 노르웨이에서는[305]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된 입양의 형태 또한 중요하다."

81 또한, 특정 출신국(중국이나 파라과이)에서는 수령국 국적의 취득이 국제 입양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입양 부모의 상거소가 수령국이나 수령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신국은 아동이 예비입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면 입양 진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일부 시스템은 부모가 국적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입양 아동이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82 아동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시점이 다양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국적 취득 시점은 출신국에서 입양이 선언된 순간이거나 아동이 수령국에 도착할 때이다."[306]

498. 대표적인 예가 영국 입양법(국제 입양의 측면)인데, 이에 따르면 해당 입양이 협약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한 명의 입양 부모가 입양 명령이 이루어진 시점에 영국 시민이며, 부모가 모두(합동 신청인 경우) 영국에 영구 거주할 때,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입양된 아동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게 된다.

499.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다. 많은 출신국들은 아동이 무국적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수령국의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아동은 수령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획득하여야 하며 국내 입양된 아동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새로운 상거소 국가의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 아동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그들이 청소년이 되면 경범죄에도 국외 추방될 수 있다. 입양된 아동은 비록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출신국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출생 시 떠나왔던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한다. 입양인들은 출신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출신국의 언어를 모르며 가족이나 지인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이러한 경우 안타깝게도 그 국가가 아동의 유일한 국적 국가라는 것이다).

500.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상거소 당국들은 아동이 무국적 상태가 되지 않으며, 지연을 최소화하여 입양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가

305) 노르웨이 국적법은 2005년 개정되었는데, 이후 18세 미만 입양 아동은 입양의 사전 승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입양 절차가 노르웨이 법률에 따라 처리됐을 때 해당 아동이 자동적으로 노르웨이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2세~18세 아동의 경우 노르웨이 국적 소지자가 되는데 대한 동의를 할 필요가 없음(노르웨이 국적자로 입양되는 자동적이고 합법적인 효과).

306)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paras 80-82 참조.

이루어졌다.

"특별위원회는 아동이 입양 부모의 조치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입양 부모의 국적이나 수령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수령국이 아동의 상기 국적 획득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의 국적에 관한 체약국의 정책은 아동이 무국적 상태가 되는 상황 방지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307]

501. 한 출신국은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의 수령국 국적 취득을 위해 아동을 등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지침이 수령국에 어떻게 입양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는지를 지시할 수는 없으나, 수령국은 입양 아동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아동의 자동 귀화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8.5 재난 상황에서 그리고 재난 상황 중 난민이 된 아동에 대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적용에 관한 제언

502.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 사태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308]

"[국제 사법에 관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는 국경을 넘는 아동의 이동에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수단을 개발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아동 유괴와 국제 입양은 두 개의 구체적인 다자간 문서(조약)의 대상이다."

198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과 그들의 가족은 1980년 10월 25일 국제적인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의해 국경을 넘는 불법적인 이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스리랑카와 태국 모두 70개국 이상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은 국가 중앙당국을 통한 협력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아동의 불법적인 해외 이동과 아동의 미귀환(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1조와 35조)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307) 제언 17.

308)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 발생. 2005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대응에 동의함.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아동과 그들의 가족은 1993년 5월 29일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의해 불법적이고 변칙적이며 시기상조의, 준비가 미흡한 해외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피해 지역에서, 인도, 스리랑카와 태국은 60개국 이상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국가 중앙당국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이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유괴, 매매 또는 거래의 방지를 추구한다. 2000년에 HCCH는 체약국이 협약의 기준과 보호망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체결한 국제 입양 협정에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채택했다.

난민 아동의 국제 입양

유엔난민기구와 HCCH는 1994년, 모든 국가(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이든지 아니든지)가 난민 아동 그리고 자국의 소요사태로 국제 난민이 된 아동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권고를[309] 채택하였다.

동 권고는 "난민아동을 받은 국가는 국제 입양 절차 개시 전에 아래의 내용을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모나 가족구성원을 찾고 재결합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 재결합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본국 송환은 아동이 본국에서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쓰나미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원가족과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반드시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아동의 국제 입양을 계획하는 조급하고 규제되지 않은 시도가 지양되어야 함은 명백하다.[310]

309) 난민에 대한 제언, supra, note 13 참조.
310) 보도 자료의 전문은 본 지침 부속서 9에 있다.

8.6 아동의 입양 적합성과 '친인척'입양을 포함한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

8.6.1 협약은 체약국이 입양 적격성에 대해 획일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가?

503. 이 문제와 관련된 제5조는 입양은 "수령국의 권한당국이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에 적격 및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입양 적격성에 관한 자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먼저 수령국 법률에 따른 결정에 맡겨진다. 수령국은 국내 입양에 적용하는 적격성 기준을 국제 입양에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 입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적합한 경우 외국법(예, 입양부모의 국적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504. 이러한 상황은 협약이 입양에 관한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국제 법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과 특히 아동의 유괴,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보호망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505. 협약은 또한, 개별 국제 입양에 관련된 두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출신국은 자국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개인에 대한 입양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국의 중앙당국이 입양의 진행을 합의해야 함을 규정한 제17조 c)항은 수령국의 적격 기준에 더하여 출신국이 적격성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출신국이 수령국이 적용하는 적격성 기준을 거의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8.6.2 협약은 체약국이 아동의 입양 적합성에 관한 획일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가?

506.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기의 입양 부모의 적격성에 대한 답과 유사하다. 제4조 a)항에 따라, 아동의 입양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국의 권한당국이다. 입양 적합성에 대한 상세 규칙은 먼저 출신국 법에 따라 결정된다. 수령국 당국은, 제17조 c)항의 수단을 통해 수령국 법에 따른 특정 요건의 추가적인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제8장 8.4.2절 참조).

507. 실제 입양 현장에서, 수령국의 추가적인 요건은 협력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해 출신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출신국은, 아동의 입양 적합 결정이 수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수령국의 입양가족과 아동을 결연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체약국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이다. 한

출신국은 수령국의 입양 적합성 요건 중 출신국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17조 c)항 단계에서 중단된 입양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양은 이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야 했다(제7장 7.2.1절 참조).

8.6.3 HIV 양성과 같은 심각한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의 국제 입양을 금지하는 국제 규정이 존재하는가? 협약은 수령국이 이러한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508. HIV 양성이나 심각한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UN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그러한 금지를 반대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509. 헤이그 협약은 확실히 이러한 차별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약의 어떠한 부분에도, 수령국이 자국으로의 이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국제 입양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510. 협약 제16조는 국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관한 보고서에는 아동의 특별한 필요와 의료적 기록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은 배치가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입양부모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6.4 "in-family(가족 내)" 입양("relative(친인척)" 입양)인 국제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511. 이 문제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서 몇 차례 논의되었다. 특히, 제15조에 규정된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가 친인척 입양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가족 내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해당되며 그러므로 협약의 절차와 안전장치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512. 협약의 협의 기간 동안 가족 내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G. Parra-Aranguren이 작성한 설명서 단락 92에서 설명되었다.

> "독일이 제출한 문서(Working Document) 제13호는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이 (a) 4촌 이내이거나 (b)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친척이나 가족 내 입양의 제외는 좀 더 융통성 있는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러한 입양의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입양에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은 몇몇 측면에서

특수한 처우를 보장한다. (a) 제26조 c)항에서 아동과 아동의 부모 간 존재하던 법적 관계의 종료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는 종료되지 않으며 (b) 제29조에서는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의 부모, 기타 아동을 보호하는 자 사이의 접촉금지 조항으로부터 가족 내 입양은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513. 제15조의 요건은 친인척에 의한 국제 입양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수령국의 중앙당국 또는 다른 지정된 당국은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될 예비입양부모의 "신원, 입양자격과 그 적합성, 배경, 가족사 및 병력, 사회적 환경, 입양사유, 국제 입양 능력 그리고 그가 양육하기에 적합한 아동의 특징"(제15조 1)항)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514. 적합성을 결정하는 정확한 방법이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친인척에 의한 국제 입양에 있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제1조 a)항에 규정된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친인척에 의한 입양이 다른 가족에 입양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낫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친인척 입양에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는 그 가정으로의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515. 외국인 친척이 입양을 신청한 경우, 당국은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중앙당국은 제7조에 따라 자국의 적절한 당국에 해당 입양이 국제 입양과 같이 진행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입양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의한 입양이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협약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제2조).

516. 가족 내 국제 입양에서 보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출신국에서 먼저 입양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출신국에서 입양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해외에 있는 가족은 아동을 입양할 수 없다. 그러나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출신국에서 가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반면, 다른 국가의 영구적인 가정은 출신국의 일시적인 가정보다 더 우선시될 수도 있다. 어떠한 가정이 아동에게 더 나은지 그리고 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영구적인 가정은 어디인지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장 2.1.1 보충성 참조).

517.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시 국내 입양보다 선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신국의 예비입양부모와 해외의 친인척 예비입양부모가 동일하게 아동을 양육할 자질이 있다면, 가족의 결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친인척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족 내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 경우, 사례는 개별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518. 다른 요소들도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그 친인척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아동이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입양이나 국제 입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1996년 헤이그협약[311]에 따라 처리되고 해외로 이전될 수도 있다. 연장 아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양보다 오히려 영구 보호 조치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연장 아동일수록 국적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때로는 수령국에 있는 가족이 출신국의 가족에게 국제 입양을 허가해 달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8.6.5 전혼자녀입양

519. 양자녀 입양은 가족 입양의 한 부류이나 간단한 사례는 아니다. 한쪽 부모가 이미 아동의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고 아동이 그 부모와 그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 입양이 된다. 한쪽 부모가 이미 아동의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어 전혼자녀 입양을 통해 아동을 부모 국가로 오게 하여 거주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는 협약의 범위(제2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 지침이 되어야 하며, 관련 양국 간의 합의는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민에 관한 국내법(특히 가족 재결합 규정)이 개입될 수 있다.

8.6.6 사적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가? 그리고 협약의 기준 및 절차와 양립할 수 있는가?

520. 이러한 문제는 입양 계획이 한 체약국의 친부모와 다른 체약국의 예비입양부모 간에 이루어진 입양 등의 사적으로 계획된 입양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적 입양을 금지하는 반면, 특정 체약국에서는 사적 입양이 허용되기도 한다.

521. 범위에 관한 문제에서, 제2조는 한 체약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이 입양을 목적으로 다른 체약국으로 이동되어지는 모든 사례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적 입양은 협약의 범위이며 협약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22. 이는 다음을 포함하는 제4조와 제5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아동의 배치가 출신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311) 아동보호를 위한 부모의 책임과 방법에 있어 재판권, 준거법, 인정, 강화와 협력에 관한 1996.10.19. 헤이그 협약

- 친생부모는 적절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친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적격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523.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에 관한 보고서의 상호교환을 포함한 협약 제4장의 절차적인 요건 역시 중요하다. 특히 협약 제17조에 언급된 대로 양국의 중앙당국은 입양 진행에 대한 합의 전에 필수적인 절차의 준수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524. 결론적으로, 제2조에서 설정한 조건이 유효한 경우 친부모와 예비입양부모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협약의 기준과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나, "사적 입양"이라는 본질의 손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순수한 의미의 사적 국제 입양 배치는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525. 본 지침에서는 사적 입양과 독립 입양을 구분하고 있다. "독립 입양"이라는 용어는 예비입양부모가 자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입양 적격성 및 적합성을 승인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승인을 받은 예비입양부모는 입양할 아동을 찾기 위하여 (출신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출신국을 방문한다. 이러한 독립 입양은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양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협약의 보호망, 특히 협약 제4조, 제16조, 제17조의 보호망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약의 보호망은 또한 친부모, 친가족 그리고 입양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제10장 10.1.1.6절 참조).

8.7 협약 준수 불이행

8.7.1 협약의 위반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526. 협약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한 권한당국이 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준수되지 않을 중대한 위험에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중앙당국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중앙당국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527. 협약 체계는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특정 입양 절차에서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된 다른 국가가 합의를 철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당국은 제17조 c)항에 따라 입양을 진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528.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관련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중앙당국이 협약의 적절한 기능 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간혹 운영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특정 체약국과 관련된 문제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당국 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529. 입양의 비승인은 원가족의 기본권 침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제재이다. 제24조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양이 명백하게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 승인은 거절될 수 있다.

530. 제42조는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헤이그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 10월 25일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관련된 경험에서와 같이, 이러한 회의는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용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8.7.2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입양이 수령국에서 국내 입양으로 잘못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531. 협약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수령국의 법원이 협약의 절차와 보호망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 입양에 국내 입양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원은 입양 신청의 시기에 아동이 수령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국내 입양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사실상, 아동이 입양을 목적으로 출신국에서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명백히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해당한다.

532.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령국의 당국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입양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입양은 협약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인정될 수가 없다. 사실상, 협약에 규정된 보호망을 피해간 것이다.

533.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관련된 양국이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관련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일 뿐 아니라 협약과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기도하다. 양국은 협약을 준수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자 할 수 있다. 만일 출신국의 당국이 협약 제4조에 따른 결정을 하고 수령국의 당국이 제5조, 특히 a)항과 b)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양국 당국이 제15조와 16조에 의해 요구된 보고서 교환에

동의하며 제17조 c)항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었음에 합의하였다면, 적절한 당국이 협약 제23조 (1)항에 언급된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8.8 기타 사항

8.8.1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입양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가?

534. 먼저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체약국의 권한당국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
> (2) 체약국의 권한당국은 그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한 적절한 지도에 따라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35. 해당 국가에서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규칙을 적용할지를 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체약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로 보면, 아동의 정보 접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한다.[312)]

536. 국내 입양에서 출생에 관련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들은 국외 입양에도 동일한 접근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협약은 이에 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537. 그러나 협약 16조 (2)항에서는 협약 입안자들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 즉, 16조 (2)항은 만일 출신국에서 아동의 생모 또는 생부의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수령국에 전송되는 아동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신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려할 점은, 다양한 이유(생모에 대한 위험 등)로 비밀 보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출신국의 당사자들을 위해 (신원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보장되지 못하면 혼외 임신으로 입양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312) 이는 설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supra, note 1, para. 515 참조.

고려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친모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38. 협약이 당사국의 재량권에 맡긴 실행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편파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제30조에 따라 신원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제16조 (2)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8.8.2 17조 c)항의 해석

539. 협약 설명서 337단락에 의하면, 제17조 c)항의 의도는 출신국이든 수령국이든 상관없이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40. 협약과 설명서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결정하여야 한다.

541. 따라서 중앙당국이 제17조 c)항에 따른 재량권을 얼마나 신중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문제이다.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등, 이러한 재량권 발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는 협약 서문에 명시되고 아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협약의 일반원칙을 고려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8.8.3 제23조의 증명서는 언제 발행되어야 하는가?

542. 헤이그 협약 제23조에 의해 발행되는 증명서는 입양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이는 증명서가 발행되기 전 입양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음을 의미한다(제7장 7.2.12절, 7.4.11절 참조).

543. 입양의 최종 승인 전 수령국에서 6개월 간 입양 전 위탁을 요건으로 하는 태국과 같은 출신국의 경우 제23조의 증명서는 입양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서 입양이 완료되어 유효해질 때까지 발행되지 않는다. 태국의 경우, 만일 입양 전 위탁이 성공적일 경우, 입양위원회(Adoption Board)는 태국 법에 따라 최종 입양 명령 승인을 내린다. 최종 입양은 태국에서 이루어지며 태국의 중앙당국인 아동입양센터(Child Adoption Centre)는 입양 부모가 수령국의 태국대사관에 입양을 등록하고 아동입양센터가 수령국의 중앙당국이나 입양 부모, 태국대사관 중 한 곳에서 입양 등록서

사본을 수령한 후 제23조의 증명서를 발행한다. 태국이 발행하는 제23조 증명서로 해당 입양이 일반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제8장 8.8.8절 참조).

8.8.4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한 후 입양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가?

544.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핵심은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이것을 "배치 결정"이라고 부른다. "위탁"은 아동을 예비입양부모에게 실제적으로 배치하는 것 즉, 물리적인 인도를 의미한다. "배치"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용어의 모호성을 갖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설명서 328단락 참조). 아동의 위탁 결정은 제17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545. 제19조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인 위탁은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하기 전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예비입양부모가 출신국으로 아동을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들을 허용하기 위한 융통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기타 계획도 마련될 수 있다. 제19조 (2)항은 부모가 아동과 함께 동반하여 이동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5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물리적인 인도가 예외적으로 수령국으로 이동 후에 발생할지라도 제17조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된 두 국가가 입양 진행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이는 배치와 관련된 결정이 아동의 이동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요건이 충족될 수 없음을 명시한 제17조 b)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547. 요약하자면, 아동의 물리적인 인도는 예외적으로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17조와 제19조는 아동을 예비입양부모에게 배치한다는 결정은 이러한 이동 이전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체약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행이다.

8.8.5 제7조 (2) a)항에 따라 입양 관련 국내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중앙당국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548. 자국 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다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상대 중앙당국에 의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 입양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체약국의 입양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은 권장된다. 일부 중앙당국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각 국가가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중앙당국이 직접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49. 2005년 특별위원회는 입양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접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제언 8과 10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다. [313)]

8.8.6 인가단체에 대한 요건은 중앙당국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550. 출신국이 인가단체에 관한 요건을 모든 입양기능을 수행하는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협력에 관한 것이나, 법적 질문으로 제기되었다.

551. 제4장의 입양 절차로 발생하는 의무는 중앙당국에 주어지는 것이며, 인가단체에 의해서 수행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중앙당국은 공공 기관이며 인가단체는 사설 기관이다.[314)] 인가 절차는 중앙당국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또는 모든 입양이 중앙당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중앙당국은 반드시 인가단체가 예비입양부모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국은 반드시 인가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아동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552. 문제는 출신국이 인가단체를 통해서만 입양을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이다. 인가단체가 없는 일부 체약국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는 협약 하의 모든 절차적 역할은 중앙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체약국은[315)] 일부 출신국이 인가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다고 보고했다.

553. 한편, 일부 출신국은 특정 중앙당국이 입양 과정에서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적절한 준비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가단체가 없는 체약국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된 국가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인될 수 있다.

554. 인가단체가 없는 체약국은 자국과 함께 협력하기를 꺼리거나 협력 할 수 없는 출신국에 자국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입양 진행이 중앙당국과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인가단체와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국제 입양 진행 과정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의 질적 수준이다. 그러나 협약이 체약국에 인가단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313) 본 지침 제4장 4.2.2절 참조.
314) 프랑스와 같은 일부 수령국에는 현재 민간 인가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단체가 있다.
315)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8.8.7 3국이 관여하는 입양

555. 3국이 관여하는 입양은, 한 국가(국가 A)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가 다른 국가(국가 B)에서 입양하기를 원하나 인가단체의 서비스 지원은 제 3국(국가 C)에서 받는 경우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헤이그 협약에 따라 이러한 입양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A국가가 B국가 내에 입양 조력자가 없고 C국의 인가단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입양이 허용될 수 있다.

b) 국가 A, B, C의 각 중앙당국이 이러한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c) C국가의 인가단체는 B국가에서 활동을 승인받았거나 B국가의 인가단체와 합의를 하였다.

d) 예비입양부모는 자신의 상거소 국가인 A국가에 의해 입양 적격성과 적합성을 승인 받았다.

e) A국가(또는 경우에 따라 예비입양부모)의 중앙당국은 필요한 입양 사후보고서를 B국가에 제출할 것과 예비입양부모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8.8.8 일반 입양(simple adoption)과 친양자 입양(full adoption)

556. 협약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도 적용된다. 협약에 의하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에 존재한 부모자녀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으면서 입양 부모와 아동 간의 새로운 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성립시키며 입양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획득한다(제26조 (1)항 a)와 b)참조). 친양자입양에서는 입양 전 부모자녀관계가 종료된다(제26조 (1)항 a)와 b)참조).

557. 협약 2조 (2)항은 "이 협약은 영구적인 친자 관계(부모자녀 관계)를 창설하는 입양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창설하고 아동의 친권을 입양 부모에게 이양시키는 일반 입양은 비록 아동과 친부모간의 부모자녀 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만 입양이지 영구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입양, 친권이 입양 부모에게 이양되지 않는 입양은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58. 많은 법제도에서 일반 입양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협약에 의해, 이러한 법제도는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일반 입양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559. 제26조 (1)항에 의하여, 제23조에 따라 출신국에 의해 인증된 일반 입양은 모든 체약국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해당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가지는 모든 효과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6조 (3)항에 의해, 인정하는 국가는 추가적인 효과를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다(예를 들어, 입양 부모와 관련된 상속권 또는 시민권).

560. 수령국이 일반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 제27조는 일반 입양이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연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므로, 이는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제27조 (1)b항 참조). 제27조에 따른 전환의 경우, 새로운 친양자 입양은 원래의 일반 입양을 대체할 것이며 제23조에 따라 증명된 경우, 모든 체약국에서 인정될 것이다.

8.8.9 해외 임시 위탁은 언제 아동의 입양으로 연결되는가? 협약의 적용을 받는가?[316)]

561.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의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선진 국가의 가정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머무른 가정에 입양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협약을 우회하는 허점을 드러내며 아동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므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562. 이와 같은 사례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입양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위탁되기 위해 선별 및 준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 가정이 아동의 입양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아동의 입양 적합성은 특히, 아동이 해외에 있는 경우 출신국이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국제 입양 보충성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다.
-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과 적합성이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입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동을 잠시 위탁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많은 경우, 위탁 가정의 선택에 전문적인 판단이 배제되기도 한다.
- 시작부터 전문적인 "결연"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동이 그 가족과 이미 함께 있는 이상 준비가 쉽지 않을 수 있다.

563. 체약국 간의 이러한 입양이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연히 협약이 적용되나, 협약의

316) ISS/IRC, <사설: 해외 임시 위탁에서 입양까지>, 월간 리뷰 2/2007호, 2007년 2월.

절차와 원칙이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 협약은 국제 입양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체약국은 해외에 임시 위탁되어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 입양 사후 문제

564. 체약국에 부과된 협약의 의무는 아동이 입양 부모에게 이동된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협약에 따라 국가는 상담 제공, 입양 사후 보고서와 같이 특정 입양에 적용되는 기타 일반적인 역할 또는 통계 자료의 수집 등 협약 운영 및 이행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 중 일부는 입양인과 그 가족의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된 것이고, 성인이 된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할 경우 수령국과 출신국 간의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565. 입양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며 전 생애 과정이다. 알고자 하는 욕구는 젊은 성인 입양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수령국에서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보기 원한 최고령 입양인의 나이는 96세였다. 자녀를 찾던 친모 중 최고령자는 89세였다.[317]

9.1 정보의 보존

566. 협약 제30조는 체약국에 아동에 관한 정보 및 출생 정보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특정한 요건 하에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도 있다.

567. 제30조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1)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보존, (2) 아동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 협약 규범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그 중요성, 특히 입양인에게 있어 중요성이 크고, 입양인이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체약국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었다.[318]

568. 제30조는 제16조와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언급된 정보는 주로 출신국 중앙당국이 수령국으로 전송하는 아동에 관한 보고서 준비에 요구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319] 그러므로 실제적인 문제로 아동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관이 기록 보관 의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320] 국가는 또한 이러한 기록의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률에 명시하고자

317)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뉴질랜드의 보고.

318)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06 참조.

319) 상게서, para. 507.

320)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관련법(1995년 국제 입양법(RA 8043), 제2조 4(b)항)은 국제 입양위원회가 아동과 입양 부모에 관한 기밀 정보를 수집,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탈리아(1983년 5월 4일 법률 184, 1998년 12월 31일 법률 476에 의해 개정됨, 제37(2)조)에서는 국제 입양위원회가 "입수한 아동의 친부모 정보, 친부모의 신원 및 의료 기록, 아동 출신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 번역].

할 수도 있다.[321)]

569. 성인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때 그들의 배경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다면 결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 친부모의 신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에, 양측의 합의 하에 다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문화가 있다.

570. 점점 더 많은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고자 하고, 점점 더 많은 친부모들이 입양된 자녀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만큼, 정보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322)]

571. 입양정보의 보존과 접근을 위하여 기록의 복사와 보존에 첨단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 중앙당국의 정보 수집 및 보존에 적절한 기술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323)]

9.1.1 정보에 대한 아동의 권리

572. 아동은 자신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부모를 알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입양을 보낸 자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친부모의 권리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입양에 동의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므로 제30조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324)] 또한 출신국은 제16조 (2)항에 따라 아동에 관한 보고서에 있는 정보의 확인을 제한할 수 있다.

573. 친부모에 관한 정보와 이들의 신원 공개는 차이가 있다. 친부모에 관한 정보는 신원공개나 사생활 침해 없이 공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부모의 나이, 건강 및 사회적 환경 정보 등은 입양가족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 그리고 신체적·심리적인 건강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입양 아동이나 입양

321) 예를 들어, 불가리아 관련법(외국인에 의한 불가리아 국적자의 입양에 관한 동의 조건 및 절차 법령 3, 2003년 9월 16일, 제35조)은, 모든 파일이 작성일자로부터 10년간 보존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공공 기록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 미국(연방등록부, Vol. 68, 178호, 2003년 9월 15일, p.54119), 국무부와 국토안전부는 75년간 협약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322)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유럽-북유럽 입양위원회는 "입양인의 출생과 개인 기록 – 검색, 지식, 결합의 원칙"이라는 문서를 상정함. 동 문서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함: 첫 번째, 알 권리 및 정보 취득 권리와 접근 및 재결합의 권리, 두 번째 정보 수령 및 재결합 시기의 중요성(작업 문서 5).

323) 칠레는 수령국이 칠레의 중앙당국과 연락하여 칠레에 있는 출생 기록을 찾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출생기록 프로그램"을 운영. 적절한 경우 친모를 찾기 위한 노력, 친모와 아동 간 만남 주선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됨. 보다 자세한 정보는<www.sename.cl> 참조.

324)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12 참조.

부모에게만 공개된다. 많은 국가에서 정보의 공개는 성인이 된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상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9.1.2 기록 접근

574. 기록에 대한 접근은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부 수령국은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 제한 없이 접근을 허용한다.[325]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기록 접근을 규율하는 법은 해당 기록이 있는 주나 지역의 법률이다.[326] 일부 출신국은 아동의 출생정보에 대한 접근을 헌법에 보장된 아동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327]

575. 국가는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의 보존과 접근에 관한 법률 및 절차가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9.1.3 자료 보호

576. 제30조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출생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양 과정에서 공개된 개인 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약은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정보는 수집 및 전송되었을 때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망을 수립하고 있다.[328] 이러한 의무와 보호망은 중앙당국이 입양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 교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한 제9조 a)항의 요건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77. 그러나 제31조는 특정 개인에 대한 언급 없이, 통계의 편집이나 국제 입양에서 비롯되는 예시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578. 국가는 자국의 이행 조치에 아동과 입양 부모에 관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보호망이

325) 예를 들어 벨기에(민법, 제45.1조와 2조), 독일(연방 민법t PStG, 61항), 독일의 경우 16세 이상 아동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음. 네덜란드(입양을 위한 외국 아동 배치 관련 법률, 제17조 b항에서 f항), 노르웨이(1986년 3월 입양 관련 법률 8호, 제2장 12절), 스페인(2007년 국제 입양법, 제12조), 영국(1976년 입양법,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으로 개정됨, 제60조).

326) 예를 들어 미국(연방 등록부, Vol. 68, 178호, 2003년 9월 15일, p.54104, para. 96.42(c))에서는 "대리 기관 또는 대리인은 관련 주 법률에 따라 입양인의 출생, 사회적 기록 및 친생부모의 신원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존 및 공개한다"고 명시함.

327) 예를 들어, 브라질(1988년 헌법, Title II: 기본권과 보장, 제1장: 개별 및 집단적 권리와 의무, 제5조 (X, XIV))는 사생활 침해 방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의 확인을 위해 공식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

328) 설명서 supra, note 1, para. 521 참조.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329]

9.2 입양 사후 서비스

579. 협약은 중앙당국에 상담과 입양 사후 서비스를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30]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권한과 자원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함을 뜻한다. 실제적인 의미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치 없이 또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서비스를 촉진시키기는 어렵다. 제9조 c)항의 문구는 중앙당국이 상담 및 입양 사후서비스 촉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책임을 지나, 직접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없음(일부 국가는 이를 위한 재원과 인력이 부족함)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신중히 선택된 것이다.

580. 설명서는 협약 내 이러한 조항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입양 사후 서비스라는 단어는 "아동의 새로운 가족 또는 환경에의 적응과 성공적인 입양의 결과를 보장하는 입양 사후 서비스의 중요성 때문에, 협약은 아동의 사회 및 문화적 보호를 촉진해야 하며 중앙당국을 통해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일부 출신 국가의 제안에 의해 추가되었다.[331]

581. 특히 수령국은 자국 내에서 입양 사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다루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가족을 위한 보다 나은 입양 사후 서비스의 필요성은 빈번히 제기되고 있으며[332] 특히, 입양 전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입양 사후 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입양 사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333]

582. 입양 전 준비와 입양 사후 지원 간에는 반드시 연결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입양 과정

329) 예를 들어 불가리아(가족법 제67조 a항) (SG 63/2003))에서는 사회보호청 그리고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기밀 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등록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필리핀(1995년 국제 입양법(RA 8043), 제2조 6j항)의 경우 위원회는 아동, 친부모, 입양 부모에 대한 기록의 기밀성을 항상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330) 제9조 c)항.

331) 설명서 참조supra, note 1, para. 235.

332)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참조, supra, note 15, para. 160.

333)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차일드온유럽(ChildONEurope)이 보고, 정부 간 그룹(L'Europe de L'Enfance)의 국가별 부처가 지정한 아동에 대한 국가별 관찰 제도적 네트워크. 또한, 2006년 1월 차일드온유럽은 유럽 국내 및 국제 입양에 대한 통계 및 비교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및 국제 입양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이 조사는 입양 사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제공 기관에 대해 살펴봄. 2007년 9월 "입양사후 서비스 지침"을 발간함. 링크 참조< www.childoneurope.org >에서 "활동"을 클릭.

전체에서 입양 부모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은 이들이 사실상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간주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9.2.1 상담

583. 협약은 친부모와 입양 부모 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상담은 입양 전 의무 사항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은 본 지침의 제6장 6.1.3절(자발적인 친권철회), 제7장 7.4.2절(예비입양부모의 준비), 7.2.11절(아동의 수령국 이동)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584. 상담은 또한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입양 사후 서비스로도 필요할 수 있다. 상담은 특히 아동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가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할 수 있다. 국제 입양 상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상담 등의 입양 사후 서비스에 적절한 자원과 재원이 투입된다면, 아동의 심각한 문제는 예방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문가 비용, 시간,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334)]

9.2.2 출신국과의 연계

585. 또한 입양 사후 서비스는 입양 아동이 출신국과의 문화적 연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고 입양 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위해 이러한 연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른 입양가족들과의 출신국 방문, 출신국에 관한 문화 이벤트 촉진, 입양 부모들 간의 친목 행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히 허용되는 경우, 친생부모와 입양가족 간의 접촉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586. 기타 서비스에는 연장 아동이 수령국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것, 출신국에서 가족을 찾는 노력에 대한 조언 제공 등이 있다. 칠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각주 323 참조)].

334) 네덜란드, Foundation Adoption Services(Stitching Adoptievoorzieningen), 상호작용지침 비디오.

9.2.3 서비스 제공자

587. 국가는 사회 서비스 담당 직원이나[335] 입양을 위한 부모를 승인하는 인가단체를 통해 입양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인가 요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336] 동 서비스는 입양 직후의 상담 및 지원, 적응과 피입양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원하는 피입양인을 위한 가족 찾기와 재회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337]

588. 입양 사후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는 지식과 경험의 조화, 성인 입양인의 문제를 연구, 아동과 부모를 위한 적절한 비용의 질 높은 상담 정보제공, 국제 입양된 이들을 다루게 되는 사회 복지사・치료사・의사・간호사・교사 등을 교육, 가족 찾기 지원, 기록에 대한 접근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338]

589. 입양 사후 서비스는 거의 항상 수령국에 의해 제공된다. 물론 가족 찾기와 재결합의 경우 출신국 역시 성인 입양인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신국은 또한 자녀를 포기하고 입양 보낸 친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9.3 출신국에 보내는 입양 사후 보고서[339]

590. 입양 과정 중, 그리고 입양 완료 이전에 수령국과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입양 진척상황을 서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입양 전 위탁 기간 동안 수령국으로 이전된 경우 입양 전 위탁의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40]

591. 입양이 완료된 후, 양국의 중앙당국은 국제 입양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 보고서를 상대방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앙당국은 다른 중앙당국 또는 공공당국의 특정 입양 상황에 대한 정당한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할

335) 예를 들어, 이탈리아(1983년 5월 4일 법률 184, 1998년 12월 31일 법률 476으로 개정됨, 제34조 (2)항)에서는 "아동의 이탈리아 입국 시점부터 최소한 1년간, 현지 당국 및 인가단체의 사회 복지 담당부서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 시, 아동이 가족과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위탁 가정, 입양 부모, 아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 [국제사법회의상설사무국의 번역].

336) 예를 들어, 핀란드(입양법령 508/1997, 제10조 (1)(8)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상담, 성공적인 배치와 더불어 모니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또한 2005년 질문지 6(a), (c)에 대한 캐나다(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응답 참조.

337) 예를 들어, 암스트롱(S. Armstrong)과 오메로드(T. Ormerod)의 입양 사후 재결합에서의 중개 서비스: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상담가를 위한 재원 및 교육 지침, 입양사후 자원센터, 시드니, 2005; A. Young, 뉴사우스 웨일스의 입양, 입양 사후 자원센터, 제9조, 시드니, <www.bensoc.org.au>.

338) 세계한인입양협회(IKAA),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제9조 c항에 따른 입양 사후 서비스 구체화를 위한 제언",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를 위한 작업 문서 7호.

339) 이 주제는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다시 논의됨. 동 회의 보고서, paras 149-161, supra, note 15 참조.

340) 제20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1]

592. 각 아동에 관한 입양 사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한 동안 제공하는 문제는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출신국은 수령국이 몇 년 간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입양 부모 그리고/또는 인가단체에 1년 또는 2년의 기간 동안 입양 사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342]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러한 보고서가 필수이다.[343]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이 아동 위탁의 조건으로 규정된 경우 예비입양부모와 수령국 당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양 사후 보고서 제공은 단지 도덕적 의무로만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체약국 간의 협력 협정에 포함하면 동 요건의 중요성을 출신국에 강조할 수 있다.

593. 동시에, 출신국은 이러한 보고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최선의 경우, 해당 입양 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국제 입양을 위해 내린 결정이 실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었으며 아동이 행복하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344] 최악의 경우, 이러한 보고서는 파일 속에 방치되어 읽히지도 않을 수 있다.

594.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입양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애착 문제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아동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반복적인 평가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595.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출신국은 입양 사후 보고서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 **때때로 국가적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입양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
- **입양 아동 및 입양 부모의 준비 지원**
- **어떤 국가와의 국제 입양이 가장 성공적인지 판단하기 위함**

341) 제9조 e)항.

342)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입양사후 보고서가 2년간 6개월마다 송부됨(1999년 아동 및 청소년 법, 제89조). 2005년 질문지 4(j)에 대한 응답 참조. 사이프러스의 경우, 배치 사후 보고서가 입양 이후 2년간 6개월마다 송부되며,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됨. 라트비아의 경우, "규정 제39조에 따라 입양한 자의 거소 관할 법원은 입양 승인 후 2년간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감독을 확인하여야 함", 리투아니아의 경우, "입양 서비스 당국은 입양 후 2년간 사후 배치 보고서를 연 2회 송부할 것을 요구, 2년이 지나면, 연 1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 서비스 당국의 요청 시 마다 제공".

343) 에티오피아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는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고서를 요구함. 2005년 질문지 4(j)에 대한 스리랑카의 응답을 참조. 동 응답에 따르면, "입양 부모는 법적 요건에 따라 입양 아동에 대한 진척 보고서를 아동이 10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344) 협약 서문 1항 참조.

596. 이러한 보고서는 출신국 중앙당국 및 지역 사회에 국제 입양이 일부 아동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며 협약 절차는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출신국에서 입양 사후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97. 수령국 전문가들은 출신국이 법적으로 입양 부모에게 입양 사후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해야 하는 수령국의 중앙당국 뿐 아니라 입양부모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수령국의 입장은 입양 사후 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균형을 위해 1-2년 정도로 보고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수령국은 입양 준비 단계에서 입양 부모들과 여러 국가에서 이 같은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부모(가능하다면 아동과 함께)와 입양진척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598. 수령국은 부모의 사생활 보호권이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러므로 중앙당국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고 입양 부모에게 보고서 제출을 종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출신국의 입양사후에 보고서 제출 요건이 수령국에 잘 알려져 있고 입양 부모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입양의 조건으로 동의했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협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모범적 이행과 선의의 협력 차원에서 수령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 권한당국, 또는 입양 가정은 요건에 따라 합리적인 시한 내에 입양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99. 입양 후 아동의 보호는 출신국의 책임이 아닌 수령국의 책임이며 수령국은 아동 보호 의무 수행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국내 입양된 아동과 국제 입양된 아동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두 경우에 대한 감독과 보고서의 정도가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 입양 사후 보고서는 반드시 입양 사후 모니터링과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고서는 수많은 모니터링 방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감독 목적의 모니터링과 지원 목적의 모니터링 간의 차이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체약국이 입양 전 단계에서 준비 개선 및 적합한 입양 부모 선별,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수 있다면, 입양 사후 보고서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600.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사안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1) 국제 입양은 반드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2) 입양관리(통제)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수령국과 출신국에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절충이 필요하다.

601. 이러한 절충을 반영하기 위해 입양사후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수령국이 출신국의 입양 사후 보고서 요건 준수를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표준 양식을 개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는 출신국이 협약에 따른 협력 기반의 근간이 되는 상호 신뢰로, 입양 사후 보고서 제출 기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345]

9.4 입양의 실패 또는 중단

602. 예비입양부모 적합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비입양부모가 입양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며, 숙련된 사회 복지사에 의해 아동과 가족의 결연이 이루어지고, 입양사후 서비스 지원이 제공된 경우 입양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배치나 입양이 성공적이지는 않다.

603. 협약은 입양이 완료되기 전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전되었을 때 배치가 실패하는 경우를 다루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국과 출신국 중앙당국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약은 완료된 입양의 실패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604. 제21조는 배치의 실패를 다룬다. 제21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배치는 수령국에서 입양이 완료되기 전에 실패하였다. 제21조는 출신국이 아동을 예비입양부모에게 위탁하여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 수령국으로 이동했을 경우 적용된다. 배치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배치를 종료하고 아동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아동의 입양을 위한 새로운 배치를 주선해야 한다. 아동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605.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배치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46]

606.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 서비스 직원이나 인가단체에 배치를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국가는 이 같은 단체나 개인이 즉시 실패에 대한 통지를 중앙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출신국에 이러한 사항이 원활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47]

345) 제언 18. 이의 준수를 위해 스페인의 예 참조 (2007년 국제 입양법, 제11조).

346) 제21(2)조.

347) 예를 들어, 2005년 질문지 7(4)에 대한 뉴질랜드의 응답을 참조: "두 번의 배치 중단이 발생함. 한번은 아동이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져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입양됨. 다른 한번은 출신국과의 협의 후 뉴질랜드 내로 재 배치됨".

607. 제21조 a)항은 아동이 잠정적인 보호 배치를 받는 것을 허용한다. 일부 국가에서의 잠정적인 보호는 위탁 가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가단체가 새로운 예비입양부모를 찾을 수도 있다.[348] 또는, 국가 복지 당국이 아동을 위한 잠정적인 보호를 주선 할 수도 있다.[349]

608. 협약 이행 조치는 실패하거나 중단된 배치를 처리하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21조 (1)b)항은 새로운 배치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함과 새로운 입양은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수령국에 있지만 출신국 역시 반드시 이러한 경우를 위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09. 출신국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반드시 "수령국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안적인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아동이 수령국에 더 머무는 것이 아동의 복지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에만 가능하다.[350]

610. 협약은 완료된 입양의 실패에 대한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양가정에 완전하게 통합된 아동은 수령국에 있는 다른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받는다. 이는 아동이 본인의 상거소에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보호와 양육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611. 9.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입양 후 아동의 보호는 출신국의 책임이 아닌 수령국의 책임이며, 수령국은 아동보호의 의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입양 완료 후 입양 실패가 발생한다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양 아동을 적절히 새로 배치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직접적인 책임이 수령국 권한당국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건전한 협력을 위해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완료된 입양의 실패를 알게 되었을 때 출신국의 중앙당국에게 알려야 한다. 입양이 실패된 시점에서 입양은 아동 보호서비스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입양과 관련하여 중앙당국은 이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거나 상황을 통보받지 않는다.

612. 입양 사후 서비스는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의 향후 버전에서 다루어질 주제이다. 이 주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차일드온유럽(ChildONEurope)이 마련한 입양 후 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참고한다.[351]

348) 미국의 예 참조 (연방 등록부, Vol. 68, No 178, 2003년 9월 15일, p. 54108, §96.50(d)).

349) 예를 들어, 2005년 질문지의7(4)에 대한 키프로스와 몰타의 응답을 참조: 키프로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몰타의 사회서비스분야.

350) 설명서 supra, note 1, para. 371 참조. 2005년 질문지7(4)에 대한 응답을 보면, 칠레, 에스토니아, 뉴질랜드의 경우, 아동이 그들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진 경우가 있었음. 스위스의 경우, 아동의 출신국으로의 송환은 매우 드물게 일어남.

351) <입양 사후 서비스 지침>, supra, note 333 참조.

제10장 : 협약의 남용 방지

613.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유괴, 매매 또는 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의 일반 원칙이 본 지침 제2장에서 논의된 바 있다. 협약의 주된 목적은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본 지침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유괴, 매매 또는 거래의 범죄적 측면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협약과 본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내외 형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실행은 이러한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614. 이 장에서는 조치 이행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기존에 알려진 남용이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0.1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의 방지

615. 이 주제의 일부는 제5장(국제 입양 비용 규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일반 원칙은 제2장 2.2.4절에 명시되었고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방지를 위한 중앙당국의 역할은 제4장 4.2.1절에서 논의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불가피하게 제5장에서 제시된 조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0.1.1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방지를 위한 전략

616.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 10.1.1.1 비용의 투명성
- 10.1.1.2 기관과 개인의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
- 10.1.1.3 처벌은 법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이행되어야 함
- 10.1.1.4 수수료 규제
- 10.1.1.5 입양 부모에 대한 입양 사후 조사
- 10.1.1.6 사적 입양과 독립 입양의 금지

10.1.1.1 비용의 투명성

617. 비용과 수수료의 투명성 확보가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방지하는 중요한 노력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지지되고 있다.[352] 비용과 수수료가 규제되지 않을 때 남용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출신국과 수령국 간 비용과 수수료에 관한 정보 교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 또한 수령국은 출신국에 비용의 공개 및 투명성에 대한 압력을 줄 것이 아니라 수령국 간 자국의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어떠한 서비스에 누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양 과정에 누가 관련 되어야 하며 누가 관련되지 않아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618. 예를 들어, 국제 입양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은 한 출신국은 유럽의 인가단체가 입양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출신국은 이러한 초과적인 비용 부과를 없애기 위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였고,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여러 단체의 인가를 취소하였으며, 실제 부과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619. 협약은 인가단체가 부과한 수수료와 비용이 인가단체를 감독하고, 그 승인을 검토하는 권한당국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인가단체의 비용이 투명할지라도 일부는 중개인이 요구하는 비용 등 기타 비용을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인가단체와 대행 기관이 평판이 좋고 훌륭한 중개인들만을 상대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개인을 포함한 당사자 간의 모든 계약서를 중앙당국이 보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10.1.1.2 기관과 개인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620. 국제 입양의 재정적인 부분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353] 비록 많은 입양기관들이 높은 전문적 수준과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국제 입양의 규제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는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보장하는 조항을 그들의 이행 법률에 삽입하여야 한다.

621. 이러한 사항은 인가에 관한 모범적 이행을 위한 별도 지침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352) 예를 들어,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5, paras 169-171 참조.

353) 예를 들어, 라메란트(I. Lammerant), 호프스테터(M. Hofstetter), <입양: 얼마의 비용으로? 국제 입양에서 수령국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Terre des hommes, Lausanne, Suisse, 2007, pp.15-16, 스몰린(D. Smolin), <아동 세탁 : 국제 입양 제도가 아동 매매, 밀수, 납치, 탈취를 어떻게 합리화 및 장려하는가>, The Wayne Law Review, Vol. 52(1), 2006년 봄호, pp.113-200 참조.

이 주제는 본 지침의 다른 장, 특히 제4장 4.3.2절(기준), 4.3.3절(인가 기준), 4.3.4절(인가단체의 감독과 검토)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10.1.1.3 처벌은 법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622.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행 법률에 포함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체약국은 또한 국제 입양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3. 처벌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 기간의 경제적 통제를 동반한 경고, 심각한 사례인 경우 인가 정지 또는 철회[354)]
- 징역 8일[355)]에서 12년[356)]
- 최대[357)] 미화 2만5천불[358)]의 벌금
- 형법상의 제재[359)]
- 법원의 몰수 판결에 의한 아동 매매로부터 얻은 이득 압수[360)]
- 영구적 혹은 수년간 자국 내 국제 입양 활동 중단 및 금지361)
- 재산 몰수[362)]
- 특정 권리의 박탈[363)]

10.1.1.4 수수료 규제

624. 일부 국가에서, 입양 수수료는 법의 범위 안에서 책정되며 그러므로 법적 효력을

354)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노르웨이의 응답 참조.
355) 룩셈부르크, 형법, 제367-2조.
356) 라트비아, 2005년 질문지 11(6)에 대한 응답 참조. 기타 예: 프랑스: 6개월에서 2년(형법, 제227-12조), 미국: 5년 이하(국제 입양법, 제404조), 루마니아: 2년~7년 (법률 273/2004호, 제70조).
357) 2005년 질문지 11(6)에 대한 응답 참조: 오스트리아: 2,200 유로. 기타 예: 프랑스: 7,500 유로~30,000 유로(형법, 제227-12조), 룩셈부르크: 251 유로~10,000 유로(형법, 제367-2조).
358) 미국(국제 입양법, 제404조).
359)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응답 참조: 미국(국제 입양법, 제404조), 체코공화국과 네덜란드.
360)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독일의 응답 참조 (형법, 제73조 이하 참조).
361) 브라질(2005년 7월 18일 국내외 인가단체에 관한 법령 5.491호, 제21조).
362) 2005년 질문지 11(1)에 대한 라트비아의 응답 참조.
363) 루마니아(법률 273/2004호, 제70조).

가진다.[364] 수수료의 법적 범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비용의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한다.

10.1.1.5 입양 부모의 입양 사후 조사

625. 중앙당국이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익명의 입양 사후 조사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사는 입양 과정과 입양 부모들이 지불한 실제 비용에 대한 유용하고 솔직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남용, 승인되지 않은 부당한 비용 지불 그리고 기타 비윤리적인 관행을 찾아 낼 수도 있다.

10.1.1.6 사적 입양과 독립 입양의 금지

626. 본 지침(제8장 8.6.6절)은 사적 국제 입양(입양 부모와 친생부모 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입양)이 전적으로 협약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두 국가의 중앙당국에 의해 규제 또는 감독받지 않는 독립 입양(예비입양부모가 자국의 중앙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아동을 찾기 위해 출신국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입양) 역시 협약의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

627.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수립된 보호망을 저해하는 이러한 형태의 입양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65] 이러한 입양에 대한 우려는 제8장(사적 입양) 8.6.6절, 제7장 7.2.5절(결연), 7.4.5절(출신국에서의 신청서 접수), 7.4.10절(출신국 방문)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10.2 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

628. 수령국은 높은 윤리적 수준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만을 인가하고, 협약의 원칙과 입양 절차를 규제하는 보호망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예비입양부모가 적절한 선별, 준비, 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출신국은 입양이 진행되기 전, 진행 중, 그리고 완료된 후까지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인가단체 및 개인의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364) 예를 들어, 2000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입양법, 제200조(수수료)에는 담당 부서장이 정부 간행물(정부 주간 소식지)에 수수료를 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필리핀의 경우, 수수료가 1995년 국제 입양법(RA 8043) (제3조 13항)과 국제 입양법에 대한 개정 이행규칙 및 규정(제29조, 40조)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중앙당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정보가 게재되어 있음. <www.icab.gov.ph> 스위스의 경우 중앙당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정보가 게재되어 있음.<www.adoption.admin.ch>.

365) 노르웨이와 이탈리아는 이러한 입양을 금지함.

인해 발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가를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629. 협약의 보호망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관행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
- 아동을 '관광객'으로 수령국으로 이동시키는 것
- 친부모가 수령국으로 이동 (예. 아동 출산을 목적으로)
-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친족 간 입양
- 해외에 거주하는 출신국 국민에 의한 국내입양 (제8장 8.4절: 상거소와 국적 참조)

630. 국가 간 협력은 이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631. 국가는 또한 부속서 3("효과적인 절차 마련")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국내 아동 보호 체계가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2.1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관행

632. 비윤리적인 관행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는 불법적 관행의 온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입양이 예정된 아동을 출산하기 위하여 친모가 수령국으로 이동할 경우, 이러한 상황은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려의 대상이다.

633. 실제로, 많은 국가가 협약의 위반을 다루는 자국법 내의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관행이 아동이 출신국을 떠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634. 기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서류의 위조, 아동 모집, 국제 입양을 고려하기 전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미흡 등이 있다.

10.3 비체약국에 대한 협약 원칙의 적용

635. 일반적으로 협약 당사국은 협약 외 입양에 협약의 원칙을 확장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0년 특별위원회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1993년 협약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협약의 당사국들은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아동 유괴, 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였고, 이에 특별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가능한 한 비체약국들과의 국제 입양에 협약의 기준과 보호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 또는 협약 비준을 위해 법률 입안 및 중앙당국 마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366]

636. 200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지하였고 새로운 권고를 확정하였다. [367]

637. 협약 원칙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 상황은, 수령국이 자국에 상거소를 둔 자가 비체약국으로부터 직접 혹은 사적 입양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체약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입양은 금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입양의 경우 입양 부모가 출신국에 있는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육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므로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29조에 명시된 보장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 비체약국으로부터의 국제 입양 대상이 된 아동에 보장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출신국과 수령국은 협약 제26조 (2)항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10.4 출신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 방지

638. 출신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은 수많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령국이 입양 대상 아동의 수 또는 중앙당국의 자원에 대한 너무 많은 파일을 송부하는 경우**
- **이 경우 수령국이 송부한 파일을 처리 또는 보다 신속히 처리하라는 압력이 행사됨**
- **출신국에서의 활동 승인을 위한 인가단체의 압력**
- **출신국에서 너무 많은 인가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

366) 2000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특별위원회, supra, note 14, 제언 11 참조.
367) 제언 19.

- 수령국의 정부 관료가 개인 신청자를 대신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지나치게 많은 신청서에 대한 아동을 공급하라는 압력. 이때 신청서는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의 신청서, 특정 국가에서 입양이 불가한 아동에 대한 신청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위해 한 출신국에 접촉하는 수많은 인가단체에 모두 대응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368)]
- 입양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신국을 방문하여 중앙당국과 연락하는 부모의 경우

639. 이러한 문제는 체약국의 적절한 당국 간 협력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중앙당국과 국가 역시 승인을 받으려는 해외 인가단체가 출신국에 가하는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령국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출신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단체를 허가해서는 안 되며, 출신국은 자국의 필요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활동하는 기관의 수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신국은 인가 국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인가단체 또는 개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인가단체의 수가 출신국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양국 또는 출신국에 의해 출신국에서의 활동을 위한 인가가 거절 또는 철회될 수 있다.

640. 수령국과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인가단체의 수가 국제 입양을 통한 입양 대상 아동의 수 및 범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출신국은 먼저 입양 대상 아동 수에 대해 자국 내 필요한 인가단체의 수를 확인해야 한다. 수령국이 필요한 인가단체의 수를 통지받은 경우, 수령국은 해당 출신국에 대해 인가받은 단체의 수 조정 또는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641. 수령국은 예비입양부모에게 현 국제 입양의 현실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림으로써 출신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현실적인 숫자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68) <인가 문제에 대한 논의서>, supra, note 136 참조.

제3부

부 속 서

부속서 1

서명과 비준 / 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

1. 서명과 비준/가입을 위한 상세 과정[369)]

1.1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용어 이해

- 국가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도 1993 헤이그 국제아동입약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국가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서명을 하였다고 해서 국가가 협약을 반드시 비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70)]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의하면, 서명과 비준은 단지 (1) 협약이 채택된 회기(1993년 5월 29일) 동안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었던 국가 그리고 (2) 외교 회의에 참석한 비가맹 국가만 가능하다.[371)]

- 서명 후 비준: 서명 후 비준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내 절차에 따라 협약이 승인되어야 한다. 이로써 국가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에 동의함을 증명하게 된다.

- 가입: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국가는 가입할 수 있다.[372)] 협약이 채택된 시기(1993년 5월 29일)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구성원이 아니었거나 혹은 외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약정의 구속력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 만약 6개월 이내에 다른 체약국이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협약은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체약국과 이의를 제기한 국가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73)]

- 협약의 발효를 위해서 국가는 헤이그 협약의 수탁자인 네덜란드의 외교부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수탁하여야 한다.[374)]

- 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모든 국가 또는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협약의 체약국으로 간주된다. 체약국은 협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 협약이 두 국가 간 발효되면 해당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였는지 또는 협약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는 동일하다.

369) 이 부속서는 1980년 10월 25일 국제아동입양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제2부: 이행 조치)의 일부를 기반으로 함.
37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8조에 따라 국가는 발효 전 또는 협약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힐 때까지 조약의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됨.
371) 제43조 (1)항
372) 제44조. 서명과 비준을 할 수 없는 국가는 가입만 가능.
373) 제44조 (3)항
374) 제46조, 제43조 (2)항 및 제44조 (2)항 참조.

1.2 협약 서명 전에 이행해야 할 조치

1.2.1 협약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고려

- 협약의 유익에 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그리고 다른 당사국과 협의
- 기존 국내법이 협약의 이행과 운영에 장애가 되는지 검토
- 연방 국가의 경우 여러 지방과 영토, 주(state) 간의 조정 및 일관된 이행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고려
-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한 지지와 승인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과 협의
- 지침 1 읽기: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과 운영: 모범적 이행을 위한 지침"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국제 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Intercountry Adop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ICATAP')을 통해 지원 요청 (부속서 2, 2.8절 참조)

1.3 협약 비준 또는 가입 전에 이행해야 할 조치

1.3.1 현황 평가

국가는 중앙당국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인가단체나 허가받은 개인을 이용할 것인지, 아동보호 정책과 입양 정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는 가족보존과 재결합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현재의 국내 입양 프로그램이나 아동양육 서비스, 입양 관행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는 현재 입양 진행의 각 단계에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관한 정보와 협약의 영향을 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3.2 이행 계획의 개발

평가가 완료되면 국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나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하는지, 발효와 함께 무엇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발전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누가 중앙당국으로 지정될 것이며, 어떠한 자원이 중앙당국에 할당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계획된 시스템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행 계획 개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속서 2에서 살펴볼 것이다.

1.4 발효

발효 일자는 비준 또는 가입 문서가 수탁자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수탁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첫 번째 날이다.[375)]

국가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협약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가 또는 승인받은 중앙당국,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376)]

국가는 협약의 발효 전 필요한 모든 절차가 준비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와 일반 대중이 협약에 따른 새로운 절차와 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약의 발효 후, 국가는 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예. 중앙당국, 판사, 변호사, 지역기관, 사회복지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협약의 적용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문제가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1.5 이행 방법

협약은 국내법과 헌법의 요건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 법질서 내에서 발효될 것이다. 경험에 따르면 협약이 자동 발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도 협약 조항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이행 조치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행 법률 또는 기타 조치의 이행은 권한당국을 지명, 중앙당국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단체의 인가 방식을 결정,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절차의 규정, 아동 유괴, 매매 또는 거래 방지 장치 제공, 적절한 동의의 확보에 특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협약은 비준이나 가입의 발효 시 별도의 중간 단계 없이 국내법 내에서 발효 될 수

375) 제46조. 제46조 (2)항과 제44조 (2)항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본 지침 제8장 8.3.2절을 참조.
376) 제13조

있다(일원론 국가: monist states). 반면, 협약이 입법 절차를 거쳐 국내법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국가도 있다(이원론 국가: dualist states).[377] 이원론 국가에서는 다양한 시행 법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일부 헌법은 일원론과 이원론,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378]

협약의 조항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하거나, 발효를 위한 입법 행위가 필요할 경우, 국내외 제정법구조상 동시에 발효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원론 국가에서는 통합 방식이거나 또는 전환 방식일 때, 국제 협약 발효와 국내 발효시기에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협약이 비준되었으나 필요한 입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379] 따라서, 두 절차가 보조를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1. 일원론적 접근(자동 편입)

일부 일원론 국가에서는 일단 국제 조약이 헌법에 따라 체결되고, 국가의 유관 기관이 승인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면, 해당 조약은 입법 체계의 개입 없이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일반적으로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자동 발효'라고 한다.[380] 일부 일원론 국가에서는 조약이 국내법 내에서 완전한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 추가 조치(입법, 행정 또는 재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381]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여러 일원론 국가에서는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발효일에 국내법에서도 즉각적인 효력이 생긴다.[382]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의 권리를 창출한다.[383]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면 국가는 협약의 영향을 받는 자 또는 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자들이 협약의 내용과 발효일, 당국의 지명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에 적합한 아동을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법률 또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협약

377) 반룬(H. van Loon), <국제 사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이콥스와 로버츠(F.G. Jacobs and S. Roberts), <국내법에서의 조약의 효력>, Sweet & Maxwell, 런던, 1987, pp.221-43 참조.

378) 어스트(A. Aust), <현대 조약 법과 이행>,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145 참조.

379) 반룬(H. van Loon), supra note 377, p.230 참조.

380) 어스트(Aust), supra note 378, p.146.

381) 상게서

382) 상게서 "일원론적 접근이 헌법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 3가지 주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헌법에 따라 조약은 제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정 조약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둘째, 조약의 특성 또는 주제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진다. 즉, 어떤 조약은 자동 발효조약으로 간주되고, 또 어떤 조약은 국내법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 법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의회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제정법이 자동 발효되는 조약의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자동 발효되는 조약은 최고법률을 구성할 수 있어 이와 상충되는 기존 또는 향후 국내법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

383) 사보라이넨(M. Savolainen), <1980년 아동유괴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핀란드에서의 협약 이행>,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6호, Kluwer, 1997, p.122.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384)]

1.5.2 이원론적 접근(입법행위에 의한 통합 또는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이원론 국가의 헌법 조항 하에서 국제 조약(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조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입법 절차를 통해 국내법에 통합시킴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원론 체계에서는 법제정을 위해 조약을 제정하는 법의 부속서로 명시하여 직접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조약 내용의 입법화 과정 없이도 조약을 발효하는 실체법 조항을 활용하여 조약을 국내 법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385)]

국제 조약이 입법 과정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제정된 조항은 협약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협약 조항은 체약국 내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 또는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반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으로 조약 전체의 내용이 제정된 법률의 부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2.1 통합 접근의 영향

협약을 국내 법령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법률의 부속서에 명시하는 경우, 국내 기관 또는 당국은 자국에서 협약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한당국의 지정,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과정, 아동 및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 입양에 대한 동의 획득 조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 접근법에 힘을 실어준다. 협약의 실제 내용이 법률의 부속서로 포함되면 협약의 조항을 직접적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협약 해석에 있어 국제적인 일관성이 증진될 수 있다.

1.5.2.2 전환 접근의 영향

기존의 국내 구조와 용어를 사용하면 변호사나 판사, 당사자가 협약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 질 수 있으나,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불일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협약의 규칙이 국내 법령으로

384) 어스트(Aust), supra note 378, p.157. "일원론 체계에서는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조항의 자동 발효 여부를 국민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385) 브라우리(I. Brownlie), <공공 국제법의 원칙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 1990, p.48.

다시 만들어진 경우,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

- 협약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신중하게 작성된 협약의 조항이 협약의 조항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으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386)]
- 협약의 모든 필수 조항이 국내 시행법규 또는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지 않은 조항은 국내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국내 조항은 협약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약의 설명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387)]

1.5.3 이행의 지속적인 과정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약이 모든 당사국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협약 운영을 위한 국내 그리고 지역별 법적 기반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미 협약을 실행하고 있는 체약국은 국내 시스템 내에서 협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행은 발전과 향상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체약국은 기존 이행 조치의 개정과 수정을 통하여 협약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86) 사보라이넨(Savolainen), supra note 383, p.123 참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 참조. "당사자는 조약 불이행에 대한 근거로 국내법 조항을 발동할 수 없다"

387) 협약과 설명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헤이그 협약 인터넷 홈페이지 <www.hcch.net>의 "국제 입양섹션"에서 "협약", "번역" 부분 참조.

부속서 2

이행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모델

2. 이행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모델

협약 승인 후 수년 동안, 국가들은 다양한 이행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중개인 이용 또는 서비스 수수료 승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일부 국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어떤 국가는 국제 입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아동 양육과 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비준이나 가입 당시에 이미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중단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이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몇몇 국가에서 협약의 이행이 아동 보호, 실행 및 협력 증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협약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절차를 한층 더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협약의 기본 원칙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이행에서 협약의 보호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 사례에서 이는 자원 또는 집행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관행이나 문화적인 특성 또는 법치주의에 따른 통치에 실패한 역사와 관련된 경우도 있다. 많은 보고서에서 정부 관료와 개인 업체들의 부패와 법률 이행 실패가 협약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효과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시스템을 이행하고자 하나 이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원과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국가가 현 입양 및 아동 양육시스템에 대한 내부 평가를 수행하고 협약의 요건 및 원칙을 검토했다면, 점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 또는 절차 향상을 원하는 체약국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 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ICATAP)을 통해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이 부속서의 2.8절 참조).

2.1 이행 계획 마련

다음의 단계는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것이다.

- **평가 전략, 메커니즘, 도구 개발**
- **내부 상황 평가**

- 내부 평가 결과 검토
- 비상조치 필요 여부 결정
- 장기 계획 마련
- 단기 계획 마련
- 서면 이행 계획 작성
- 계획 이행을 위한 자원 배분
- 상시 평가 및 통제 관리

2.2 평가 도구와 전략

협약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하는 국가는 자국의 아동복지 보호와 입양 현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현재 아동복지 보호와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 이러한 서비스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가?
- 현재 협약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이 이행되고 있는가?
- 현행법이나 절차가 시스템의 청렴성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영역에 관한 상세한 지식이 요구된다.

- 협약의 원칙과 요건
- 아동 양육시스템에 따른 아동 이동의 각 단계 그리고 각 단계와 관련된 필요와 관심
- 아동 보호 필요성
-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도구와 전략

협약 원칙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당장은 불가능할 수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는 가능한 한 보호와 원칙을 최대로 이행하기 위해 자국의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국제 입양을 위한 기존 절차를 협약 이행까지 중단시킬지 여부는 국가별로 다를 것이다. 협약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의 평가 절차는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단기간 내에 무엇이 이행될 수 있는지, 장기 계획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지침 제1장 1.7절과 부속서 2.9절은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2.3 내부 평가의 이용

국가 입양시스템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는 이행 계획 마련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평가 결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재 필수적인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지**
-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 **수행 주체는 누구이며 향후에는 누가 주체인지**
- **현재 그리고 향후에 기능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국가는 평가의 결과를 자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 보호시스템을 통한 아동의 진전 상황을 도표로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과정 중 중요한 단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는 또한 현재 어떤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누구에게 지불하는지에 대한 도표를 그릴 수 있다. 수수료 제도를 검토할 때, 수령국의 입양 부모에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과 출신국에서의 입양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는 다른 체약국과 연락하거나 인터넷을 검색 그리고 입양 관련 문헌을 검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비공식적인 수수료'의 문제가 강조될 수 있으며, 전문가 비용 청구가 다른 비교 가능한 국가에서 청구되는 비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아동 양육에서 국제 입양을 통한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국가는 인가단체가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로 출신국의 시설, 가족 보존,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출신국은 수수료의 갑작스러운 철회가 아동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2.4 긴급 조치

긴급 조치는 특히 유괴 또는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한 취약한 아동을 즉각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부분에서 내부 평가 결과가 우려를 나타낸다면 협약 발효 전이라도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친부모의 유전자 확인, 유기된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또는 본 지침 제2장과 제6장에서 논의된 기타 보호조치 등이 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의 정부, 인가단체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입양 부모에게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한다.

2.5 장기적인 개혁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 시 제도화될 절차 마련을 위하여 우선 구체적인 장기목표를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자국의 아동 양육과 입양시스템이 향후에 이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계획해보아야 한다. 장기계획 수립은 성공적인 중간(임시)조치 이행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국가는 장기 이행 계획 마련을 위해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정의 각 단계 검토
- 각 단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
- 직원과 자원 요건을 결정
- 현황 검토
- 현재 시스템과 제안된 시스템 비교
- 변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시간 결정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결정
-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과정 결정

2.5.1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검토 및 결정

국가는 제6장과 제7장에 제시된 각 단계를 검토하고, 협약 요건을 충족시키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아동 양육과 보호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아동이 거치는 단계에 대한 도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안된 과정이 반복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불법 행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분명히 밝혀낼 수 있다.

2.5.2 직원과 자원 요건의 결정

과정의 각 단계가 계획되면, 제안된 아동 양육과 보호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담은 개요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개요서의 초안이 준비되면, 국가는 적절한 자원이 할당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주요 운영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

2.5.3 현재의 운영과 비교

제안된 시스템이 계획되면, 국가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시스템과 현재의 시스템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는 현재 할당된 자원과 인력이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5.4 시스템 변화를 위한 총 소요 시간 결정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위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한지가 확인되면,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가족 보존 서비스, 국내 입양 선택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국가는 국제 입양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이 이행의 주요 문제일 수 있다.

2.5.5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단계 결정

전체적인 시간 계획을 결정한 후, 국가는 이러한 개혁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정의 각 단계별 개혁을 위한 조치를 개괄한 다음, 전체 시스템에 전략적으로 점진적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변화를 표로 그려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점진적 개혁을 위한 임시 합의의 세부 사항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다른 국가,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그리고 친가족과 입양 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5.6 중간 계획의 기한과 과정 결정

개혁 과정 각 단계의 윤곽이 잡히면, 국가는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순서로 실행될 것이며 그에 예상되는 시한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이행 계획이 점진적인 단계별로 마련될 것이다.

필요한 변화의 순서와 시한을 검토할 때, 국가는 어떠한 단계를 즉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동과 가족의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각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 확인되면,국가는 단기간 내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상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6 단기/임시(중간) 계획

즉각적인 혹은 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국가는 반드시 장기 개혁 과정의 각 단계에 수반되는 절차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2.6.1 즉각적인 변화

국가는 절차상의 변화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약이 발효될 당시 이미 입양이 진행 중인 경우와 협약이 발효된 후 새로이 입양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협약 발효 시, 어떠한 사례가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는,

- ‘진행 중’이라고 간주되기 위한 특정 접수 일자를 지정해야 한다.
- ‘진행 중’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한다. 즉,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 다른 국가 그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협약 발효 즉시 시행되는 절차상의 변화는 모든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게 명확하게 공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촉구한다.

- 새로운 절차
- 인가단체,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 그리고 가족의 절차 이행 방안
- 새로운 절차의 수수료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
- 새로운 절차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의 연락처

2.6.2. 향후 이루어질 중간 계획

협약이 발효되고 장기적인 시스템이 완료되는 기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타 임시 계획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변화에 앞서 다른 국가들과 이해 당사자에 이러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2.7 공식적인 이행 계획의 작성

이행 계획이 결정되면 국가는 제안된 계획의 개요를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 및 자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문서 작성은 여러 이점이 있다. 다른 체약국에게 포괄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국가가 협약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이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2.8 국제 입양 기술지원 프로그램(ICATAP)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체약국 내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초기 단계를 신중히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약은 출신국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완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이행 및 기술 지원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입양기술지원프로그램(ICATAP)은 2002-200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추가예산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협약에 가입 또는 비준하려는 국가, 또는 가입 또는 비준하였으나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입양기술지원 프로그램(ICATAP)은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직접 운영하며 국제 컨설턴트와 전문가 뿐 아니라 본 프로젝트 전담 직원과 자원을 활용한다.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으며, 시범 단계 동안 법적 장치, 기반, 정보가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자와 행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ICATAP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가별 추가 비용과 추가 직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별 이행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ICATAP팀은 국가 당국의 이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도구는 다양한 국내 상황에서 채택되고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헤이그식' 접근은 국제 입양 과정을 폭넓은 아동 양육과 보호시스템 내에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388)]

388)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헤이그 협약 인터넷 홈페이지 <www.hcch.net>의 '국제 입양프로그램'과 '국제 입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참조.

[2.9 서명과 비준/가입에 대한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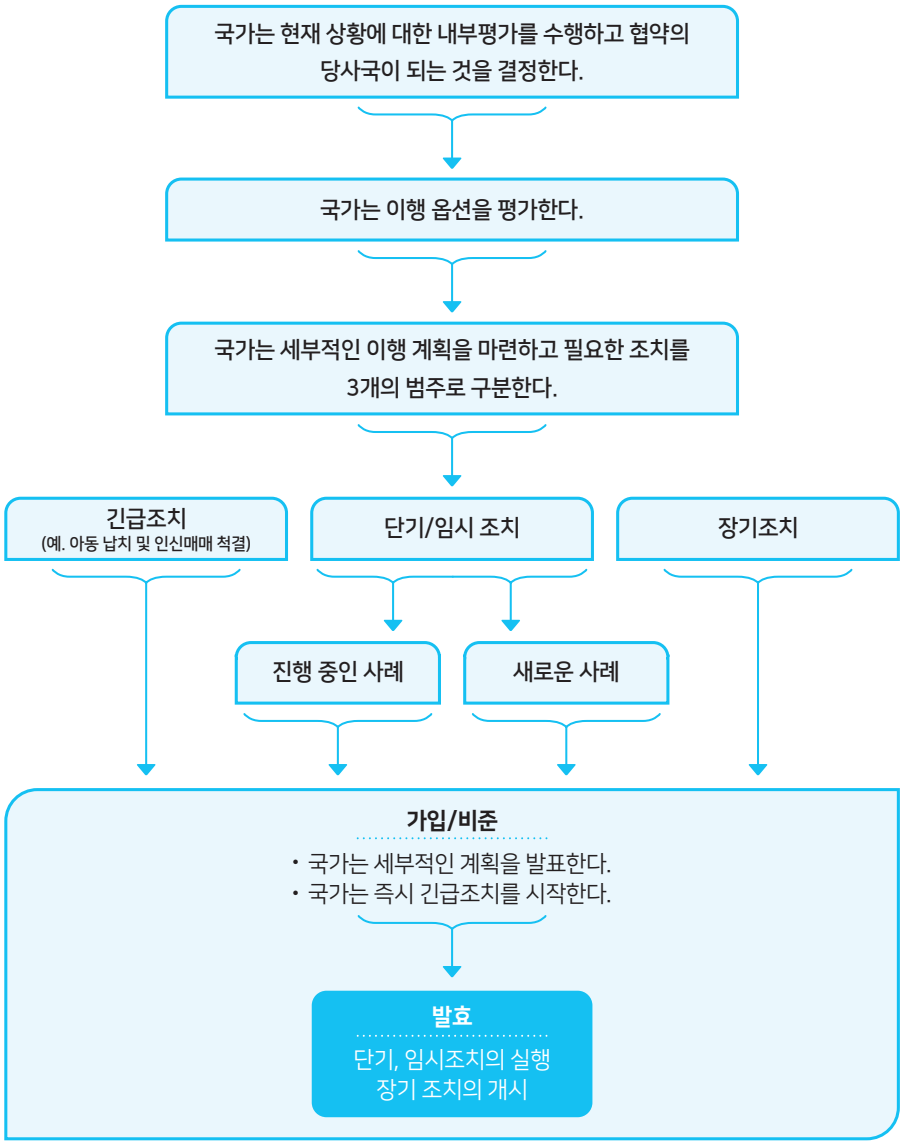

부속서 3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

- 실제 사례

3.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 – 실제 사례

본 지침 제6장과 제7장의 아동 양육, 보호, 입양 제도 단계의 검토에서는 입양 과정 전 그리고 과정 중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여러 역할을 규정하였다.

효과적인 이행의 핵심은 제대로 구축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의 입안 후 행정기관이 절차를 마련한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입양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정 절차임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절차의 결정이 입양 시스템의 모든 다른 측면이 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감안하여 모든 절차상의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각 절차가 전체 입양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다음의 예시를 마련하였다. 이 가상의 사례들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실제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문제와 옵션은 이행 계획 구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가가 자국의 입양 시스템을 더욱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1 국가: 알파(Alpha)

3.1.1 상황

알파(Alpha) 국은 거의 4년 동안 심각한 기근으로 고통 받았다. 그 결과 수천 가구의 가정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부모가 죽었고 그들의 가족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 수많은 아동들이 시설에 버려졌다. 알파 국에서는 현재 50,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대부분은 2세 이상이나, 작년 한 해 동안 수 백 명의 유아들이 버려졌다.

기근이 있기 전까지, 알파 국에서는 국제 입양이 거의 없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급증하여 이는 많은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기관들은 지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특정 지역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일부 아동들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소수의 국제 입양이 허용되었고, 그 중 대부분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연장아동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다른 여러 기관들이 이 국가에서 아동 입양 배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일부 기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새로운 시설 건축을 제안하였다. 현재 많은 수의 입양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아동이 해외에 적절하게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알파 국은 협약 요건을 검토한 후 협약에 가입하였다. 중앙당국 역할의 대부분이 위임될 수 있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이 희박함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

중앙당국으로 외교부가 임명되었다. 중앙당국의 직접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법에 대하여 다른 중앙당국들과 의사소통**
- **정책과 인가 기준 수립**
- **증명서 발행**

중앙당국은 각 지역당국이 이미 해당 지역의 시설을 감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협약에서 규정된 업무의 대부분을 각 지역 권한당국에 배정하였다. 지역당국은 a) 인가단체가 입양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승인 b) 입양 대상 아동을 확인 c) 가족 보존과 입양서비스의 제공 또는 감독 d) 지역 고아원 운영 승인의 권한을 가진다.

지역당국은 인가를 신청한 기관에 협약 제11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일체를 요청, 검토 후 승인하였다. 또한 단체는 가족 보존서비스와 국내 입양가정의 모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당국 내 적격 사회 복지직원이 많지 않다면 신청서 접수, 아동과 가족의 결연, 모든 필요한 서류 작업은 인가단체에 위임될 수 있다.

중앙당국은 지역당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역당국은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당국은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 금지를 고려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인가 신청에는 250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입양 대상 아동의 확인, 여권 신청 및 증명 서류 승인 등의 필수 조치는 20-50유로의 범위에서 지역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중앙당국은 새로운 시설이 국내에 신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람직하게 여겨, 인가단체가 고아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지방 법원은 법원 의무 출석기간 동안 친가족의 입양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아동과 입양가족(해외 또는 국내) 간 결연을 승인해야 한다. 입양 수수료는 입양 당 100유료이며 지방 법원에 지불해야 한다. 입양이 지방 법원에서 승인되면, 입양 부모는 중앙당국에 신고하고 여기서 증명서가 발행되며, 100유로의 수수료가 중앙당국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운영은 특히 1 지역에서 원활하게 시작되었다. 수도에 근접한 이 지역은 인가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지역에서 인가단체 수의 제한을 원하여, 오랜 기간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2개의 단체를 포함한 총3개의 단체를 선택하기로 했다. 2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에 아이들 식비와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미혼모에게 소규모 사업대출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의 기존 고아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 고갈된 상태이다. 나머지 1개의 기관은 새로운 기관이지만 학교, 운동장시설, 의료 서비스가 있는 고아원 신설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많은 가족은 재결합할 수 없었고, 이미 대가족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더 입양하려하는 가정은 거의 없었다. 1 지역에서 300명이 넘는 아동들이 국제 입양에 배치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영아와 유아였다. 알파국의 입양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입양 신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고아원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는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줄어들었고, 곧 고아원에 있는 아동의 수보다 입양 신청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먼저, 시스템은 제 역할을 잘 해냈다. 시행 1년 후 중앙당국은 국제 입양 아동의 수가 많은 두 지역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국내입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이 지역 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동매매와 부패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공하고자 했던 보호가 실현되지 못했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인가단체가 출신 가족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얻어내기 위해 대리인을 이용**
- **가족이 입양 동의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음**
- **가족 보존 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수행되지 않음**
- **지역의 인가단체는 다른 국가의 인가단체들과 연락을 해오면서 결연시킬 아동을 찾음**
- **인가단체는 입양 가족이 정해지기 전에 '입양가능 아동'의 사진과 보고서를 보내어, 입양신청이 급증하고 아동 매매를 영속화시킴**
- **지역당국은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입양 가능한 아동을 결정함**
- **출생가족은 아동을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법원에 진술함**
- **지역 판사는 선의로 입양을 승인하고 이를 중앙당국으로 보냈고, 중앙당국은 이러한 파일을 검토하고 증명서를 발급함**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가단체는 아동의 밀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았다.**
- **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 **빈곤한 가정은 착취에 이용당하기 쉽다.**
- **인가단체와 공식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지역 공무원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 **양국의 인가단체는 느슨한 관리 감독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 **견제와 균형 미흡, 의무 보고 미흡, 이해상충 만연**

3.1.2 문제점

재정 자원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국가는 인가단체, 인가받지 않은 개인 등이 가족보존, 국내 입양, 국제 입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국가는 기관이 인도주의적 노력이나 가족 보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프로그램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산발적이거나 비효율적이 된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 보존 목표와 상충되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알파 국에서 인가단체는 아동이 국제 입양을 통해 아동 양육 및 보호시스템에 입소 후부터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인가단체는

- **아동이 언제 가족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또는 재통합될 수 있는지 결정하였다.**
- **입양에 대한 서면 동의서 받았다(후에 판사 확인).**
- **국내 입양 배치를 추구하였으며,**
- **이후 국제 입양 배치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비용을 유발한다. 알파 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인가단체의 유일한 수입원은 국제 입양이었다. 적절한 감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남용되기 쉽다.

알파 국의 인가단체는 아동을 결연하고 승인할 책임을 중앙당국에 의해 위임받은 수령국의 인가단체에 접촉하였다. 알파 국과 수령국 모두 인터넷 사진 목록이용, 아동 결연, 입양적합성 확인 등의 엄격한 지침이나 수립된 절차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입양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두고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는 출신국 인가단체에 아동 밀거래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동기를 유발시켰다.

조사관은 알파 국 1 지역에 총 3개의 인가단체가 있다는 사실과 각 단체가 다른 두 국가에 있는 3개의 인가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총 18개 인가단체가 한 지역에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알파 국에서 두 개의 인가단체는 업무를 잘 수행하였고 한 기관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비효율적이 되어갔다.

인가단체 3은 수령국의 입양 부모가 보는 인터넷에 주로 건강한 유아의 사진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수령국 내 입양 신청자 수가 급증하였다. 인가단체 3은 가족보존과 국내 입양 노력이 비용을 유발시키는 반면, 국제 입양은 수천 유로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이 아동을 다양한 절차를 통해 더 빨리 이동시킬수록 해외로 더 빠르게 배치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막대한 현금 수입을 얻은 인가단체는 이 돈으로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친가족에게 입양 '비용' 지급이라는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여 입양할 아동을 찾도록 했다.

가난한 경제 상황과 이를 해결할 대안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착취되기 십상이었다. 이들은 2년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고, 동의서에 기꺼이 서명하였으며 판사 앞에서는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와 중앙당국 사이의 유일한 방어선인 지방 공무원들도 질문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에 취약했다.

3.1.3 해결안

3.1.3.1 유도/ 강제

국가는 아동 입양 유도를 불법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아동 입양을 유도하는 자를 기소하여 이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아동을 유도하거나 매매하는 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조항을 자국의 입양법 또는 형사법에 추가하였다.

유인이나 보상에 대한 통제는 부모가 중앙당국이나 공공당국에 직접 신청 또는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출신 가정과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입양 및

유인책에 동의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가는 보상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순히 이러한 질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 대한 금전 지급 관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입양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친부모는 거의 없다. 국가는 자국법에 동의 관행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허용하는 조항이나 절차를 포함시키고자 할 수 있다.

협약 제29조는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의 친부모 혹은 협약 제4조 a), c)항, 5조 a)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이러한 접촉이 출신국 권한당국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 그러므로 국가는 입양 적합성 선언 이전에 입양부모와 아동이 결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국법 또는 이행 규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3.1.3.2 업무 분리/ 이해상충

국가는 또한 독립적인 기관이 아동의 입양 적합성 결정 과정을 관리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이를 위해 기관이나 시설보다 중앙 집중식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는 가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재결합 또는 가족 보존이 불가능하여 아동의 입양적합성이 결정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부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역할 이행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공식 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 및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 보존 또는 국내 입양을 위해 사적 입양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명백하고 투명한 요건 및 범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당국 또는 법원이 무작위로 아동을 보육원에 배정하여, 출신가정으로부터 아동을 유도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있다. 또한 가족 보존이나 국내입양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제 입양으로 이익을 얻는 기관과 동일한 기관이 되지 않도록 업무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3.1.3.3 입양 적합성

국가는 아동과 가족 간 결연 이전에 먼저 입양 적합성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협약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3.1.3.4 사진 목록

인터넷상의 '사진 목록'은 입양가족 모집의 대중적인 방법이 되었다.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연장 아동과 장애가 있는 아동의 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유아의 사진이 입양부모를 특정 인가단체 또는 시설로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사진 목록은 입양 부모들을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미끼"로 사용되었다. 가족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방문하면, 그들은 해당 아동은 없고, 다른 대체 아동을 소개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족을 모집하기 위한 술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 신청서에 기재된 부모의 기준과 맞는 아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출신국과 수령국이 함께 이를 규제할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소한, 수령국은 출신국에서 활동 허가를 받은 인가단체가 해당 출신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령국은 자국의 수수료 관행과 감독 구조가 출신국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1.3.5 출신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 방지

수령국은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고, 제10장 10.4 "출신국에 대한 과도한 압력 방지"에서 제안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이는 본 부속서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시나리오에 적용되어야 한다.

3.2 국가: 델타(Delta)

3.2.1 상황

알파 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문제를 목격한 델타(Delta) 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였다.

- 지역 사무소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아동의 입양 적합성을 선언하며, 국내 입양 배치 가능성을 판단하여 아동의 국제 입양 적합성을 선언한다.
- 유기된 아동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를 받는다.

- 지역 사무소는 아동을 무작위로 보육원에 배정한다.
- 가족 보존 활동은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무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금이 지급된다.
- 인가단체는 특정 보육원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요청받을 수 있다.
- 아동이 해외 입양 가정과 결연되면, 해당 입양은 델타 국의 중앙당국에 의해 승인되며, 동 중앙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지역 사무소의 설립을 통해, 가족 보존에 필요한 자원을 해당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아동이 병원이나 경찰서 또는 기관에 유기된 경우, 지역 사무소는 해당 아동의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가족 보존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가족을 찾았지만 가족 보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역 사무소는 입양을 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불필요한 친권 철회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 보존 활동을 위해 재원을 배정했다. 또한, 개별 보육원이 아동을 입양으로 유도하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임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역 사무소가 보육원이나 다른 시설에 배치하였다.

인가단체는 입양을 수행할 특권을 부여받은 대신 각 보육원을 지원하고 가족 보존 서비스를 수행할 것을 요청받는다. 인가단체는 보육원과 다른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독점적인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 수행 요청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인가단체는 아동의 입양 적합성이 선언된 후에 해외 파트너에게 입양 가능한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아동의 입양 적합성을 선언한 경우에는 아동이 국내로 입양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입양 부모의 입양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만일 국내 입양이 불가능하다면 아동은 국제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망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국은 입양 시스템상의 문제를 경험하였다. 부적절한 사례 발견 이후 입양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문제가 드러났다.

- 유기에 관한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공무원들이 특정 아동이나 고아원을 위한 서류 진행을 위해 소위 “진행비”를 받았다.
- 변호사가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아동을 익명으로 유기하라고 했다.
- 아동이 입양을 위해 유괴되었다.

사실상 델타 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가족 보존과 입양 적합성 선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의 재원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3.2.2 문제점

지역 사무소는 자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유기된 아동의 친가족을 찾는 조사는 종종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무소의 자원부족은 아동의 입양 적합성 선언과 가족보존 노력 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국내 입양 가정을 찾는 활동에 지연을 초래하였다.

지역 사무소가 단독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인가단체의 압력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압력 때문에, 조사 미흡, 형식적인 가족 보존 활동, 국내 입양 노력 제한, 각 입양 절차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업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일부 인가단체는 지역사무소에 서류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시키는 이른바 '진행비'를 제공했다. 지역사무소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대신 비밀리에 돈을 받았고, 받은 액수 또한 정확치 않았다. 또한, 이러한 진행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서류작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료는 실제로 꼭 필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수수료는 특정 아동을 특정한 보육원에 배치되도록 공무원을 설득하는 용도로도 사용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다른 문제점까지 발생했다.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진행비'로 상당부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가단체들은 다시 현지 대리기관을 통해 금전 지급을 대가로 기꺼이 아동을 익명으로 유기하려 하는 가족에게서 아동을 찾아오게 했다.

몇몇 사례에서, '유괴'를 위해 아동을 특정한 지역으로 데려오는 유괴 집단이 국내 전역에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실종된 아동을 찾는 원가족들은 자원이 거의 없었고 어떤 중앙 사무소도 이러한 유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양 서류가 처리되기 전까지 아동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2.3 가능한 해결책

3.2.3.1 적절한 자원

델타 국이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역 사무소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중앙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재정이 충분한 사무소는 인가단체의 금전적 압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소의 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무소에 너무 많은 책임이 지워지는 경우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무소 간의 업무의 분리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3.2.3.2 수수료 정책

'진행비'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류작업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라는 기관의 압력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진행비 문제는 특정 국가에서 일처리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뿐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다른 분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라도, 입양과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협약에 따른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식적인 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진행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여권 신청이나 기타 공식적인 서류의 빠른 진행을 위한 높은 수수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는 투명해야 하며 개인이 아닌 사무소에 지불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 비율은 명확하게 공지되고 공식적인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만약 담당자가 빠른 서류 처리를 위해 추가 시간을 투입하여 일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기 설정된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투명한 시스템의 구축은 특히 담당직원을 대신한 부정행위 또는 공식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남용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3.2.3.3 유괴

본 지침 제6장 6.1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유기는 입양을 목적으로 한 유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일반적으로 유기 아동에 대한 충분한 조사이다. 국가는 또한 각 지역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이러한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사용될 수 있을지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당국에 의한 정보 검토에 따르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보육원에서 유괴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당국이 유괴 보고를 조사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수립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3.3 국가: 오메가(Omega)

3.3.1 상황

오메가(Omega) 국에서는 해외 입양을 위해 아동을 위탁하는 책임을 중앙당국에만 위임하여,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인가단체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책'을 없애고 불법을 자행하라는 압력으로부터 지역당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아동 양육 및 보호시설의 운영과 가족보존, 국내 입양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맡겨졌다. 각 지역은 국가가 지역서비스를 위해 매년 배정하는 자원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년 배정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입양 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가족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이러한 지원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주체가 해당 지역의 당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동의 입양적합성 판단 역시 지역 차원으로 남겨졌다. 오메가 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지역당국이 그들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족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당국은 아동을 입양을 위한 국내 등록부에 등록하고,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결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아동이 국내 가정 3곳에서 거절당한 후에야 국제 입양을 승인받을 수 있다.

중앙당국에 의해 국제 입양 결연이 이루어지면, 서류를 검토하고 입양을 승인하며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하는 판사에게 파일이 전달된다.

이 시스템의 대부분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중앙당국이 아동의 해외 배치 시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내외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은 아동을 시스템에 소개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현금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입양 가능한 아동의 숫자가 낮게 유지되었고, 입양이 가능한 어린 아동이 대부분 외국 가정으로 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지역당국은 입양 적합성이 선언된 아동은 특히 건강한 아동인 경우 해외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메가 국의 시스템에 대한 다음 세 가지 문제가 다른 국가들과 비정부 기구에 의해 제기되었다.

- **입양 부모에 의한 기부금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는 듯 했다.**

- 아동이 국내 가정에 입양 제의되지 않았다.
- 법원 절차의 장기 지연은 대기 기간 동안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뜻했다.

3.3.2 문제점

이러한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발견된 주요 취약점은 아동을 가족 또는 국내 입양가정에서 양육하려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비용도 유발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은 국제 입양이었고 때문에 해외로 아동을 배치하는 지역은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은 이러한 국제 입양이 실제로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입양 수수료를 별도의 자금으로 분리하여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도 없었다. 따라서 일부지역은 가족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국제 입양으로 증가한 수입을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오메가 국이 사용한 국내 등록소에서는 아동을 거절한 세 가정이 실제로 입양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입양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중앙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다.

사법 심사는 비록 사법적 승인이 절차를 더 연장시킨다는 뚜렷한 이유는 없었으나 중요한 이슈로 판명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가 실제로 요구되지는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추가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사가 입양 승인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판사가 입양 승인을 우선처리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는 입양 건에 대한 판결 시한을 특정하는 행정요건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몇 달 간 해당 건이 방치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3.3.3 가능한 해결책

3.3.3.1 적절한 행정적 통제

보충성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역당국이 아동을 국내 입양 가정에 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원의 수준에 따라 아동을 빨리 국제 입양에 배치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 소수의 아동들이 있는 경우, 특히 신청 접수 건수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더욱,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아동 배치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다.

배치 결정에서 재정적인 결정(예. 수수료)을 분리할 이유가 있지만, 국가는 시스템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검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와 지역에 지불된 금액, 자금이 사용된 내역, 지역 내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3.3.3.2 아동 등록

오메가 국은 국내 가정에 일정 회수까지 아동의 입양을 제안하고 모두 거절이 되는 경우에만 국제 입양을 추진하는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가 국내 입양 노력을 위해 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국내 입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문제가 없는 시간제한 시스템(예. 아동은 등록소에 60일 또는 90일간 유지됨)의 대안으로 개발되었다.

한편, 오메가 국의 시스템은 입양에 관심이 없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아동 거절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여 아동이 국제 입양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공식적으로 아동의 입양 거절을 표시하는 관행은 아동에게 심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했다.

국가 등록은 입양시스템의 중앙 집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동을 실제적으로 국내에 배치하려는 노력 없이 보충성의 상징으로만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는 아동을 등록에서 제외하기 전에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것과 아동을 거절한 가정이 실제 국내 입양 승인을 받은 가정인지 확인하는 통제 조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3.3.3 '아동 친화적' 기한

많은 국가가 행정적 그리고 사법적 절차의 심각한 지연을 경험하였다. 국가는 자국의 법, 규정, 절차에 특정한 시한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한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나 판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처리하고, 왜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민법상 처벌이나 행정적 처벌도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3.4 국가: 파이(Phi)

길고도 문제가 많았던 국제 입양 역사를 통해 파이(Phi) 국은 수차례 정책과 절차를 변경하였다. 여러 차례의 개혁 결과로 탄생한 시스템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포괄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 중앙당국은 무작위로 아동을 입양 가정에 위탁한다.
- 모든 입양 수수료는 중앙당국에게 지급된다.
- 중앙당국은 국가 전 지역에 가족과 아동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매년 제공한다.
- 국내 입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지역은 보상을 받는다.
- 지역 및 국가 아동 양육보호 사무소의 직원들은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
- 아동과 국내 입양 가정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 국내 입양 가정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 파이 국은 입양이 적합하다고 확인된 아동에 대한 입양 신청만을 수락한다.
- 행정상의 통제는 절차의 각 단계를 감독하는 효과가 있다.

3.5 국가: 세타(Theta)

세타(Theta) 국의 아동 양육 및 입양 프로그램은 협약을 이행하는 국가가 직면하는 마지막 도전의 가슴 아픈 예이다. 세타 국은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 과정을 감독하는 정책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였다.

- 입양 절차에서 보수를 받는 중개인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아동의 출생 조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후 중앙사무소에 의해 입양 적합성이 확인된다.
- 아동은 국내 입양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 90일간 등록된다.
-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입양 가정의 승인은 아동의 입양 적합성을 확인한 사무소와 다른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 합리적인 수수료는 정부 부처에 직접 지불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타 국은 아동 밀거래, 유괴, 부적절한 금전적 이득, 부패, 아동과 가정을 위한 서비스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 모든 문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이론상으로는 적절히 구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타 국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고 감독 체계도 없었으며,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 보호시스템은 적절한 아동보호를 불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의 부족을 숨기고 있는 허울에 불과했다.

-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협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중개인이 기능을 수행했다.**
- **중개인이 입양 적합성을 결정했다.**
- **중개인이 아동과 가정을 결연하고 형식적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 **중개인이 승인을 받기위해 공무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취했다.**
- **보통, 아동을 포기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가정을 찾아 아동을 간청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간단히 말해, 세타 국의 정책은 단지 규정상으로만 존재했다. 아동과 가정을 적절히 보호하기를 원하고 협약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하는 국가는 반드시 수립된 정책 및 절차의 도입과 이행에 있어 경계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속서 4

가족 보존 지원 정책

4. 가족 보존 지원 정책

본 지침은 국가의 아동 양육 및 보호 시스템의 발전에서 가족 보존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여기서는 단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다.

4.1 가족 유지

아동이 불필요하게 아동양육 및 보호 시스템에 입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 개입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는 가족 분열의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와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폭력이나 약물 남용, 사회 문화적 규범 등의 기타 요인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389)]

가족 해체 또는 착취의 위험에 특히 취약한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390)] 소수민족이나 토착 민족 공동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법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거나 지역당국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유괴, 유도, 아동 밀거래, 공무원의 부패에 취약한 상태이기도 하다.

빈곤과 어려움 때문에 가족은 착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녀 한 명을 포기할 것을 고려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보존 노력은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부모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경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물질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

4.2 가족 재결합

가능하다면 국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 유지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은 안정을 되찾고 임시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데려오는 선택을 할 수 있다.[391)]

389) 반룬(H. van Loon), supra note 377, p.235 참조.

390) 인도, 람스와미와 부캬(Gita Ramaswamy & Bhangya Bhukya), <The Lambadas: 포위된 공동체>, 유니세프, pp.4-5, 2001 참조.

391) 브크냐(Haji Sayyid Bukenya), <아동 및 취약 아동의 공동체 양육을 위한 전략 촉진에 대한 정책 워크숍, 우간다의 경험>, 2001,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제네바.

만약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해결책 중 가장 적절하고 선호되는 해결책이다. 특히,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동을 확대 가족에 배치하는 노력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한다.

아동을 양육할 친인척을 찾기 위하여 아동의 시설 양육 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에게 친화적인 시한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이행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약국은 친인척을 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이유로 아동이 친인척에게 양육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을 포함하는 부모의 의견을 감안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

체약국은 부모와 배치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자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친인척이 아닌 가정에 배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3 가족 보존 프로그램의 개발

아래 목록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이 목록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 복지단체를 통해 얻을 수 있다.[392)]

저소득 가정 지원 :

소득 수준과 빈곤에 관한 지침은 가정지원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국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정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상담 :

상담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해야하는 가족들에게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가족 상황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거나 가족배치의 선택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392) 예를 들어, 국제 사회 서비스(International Social Service), 제네바, 스위스. <www.iss-ssi.org> 참조 (최근 협의는 2008년 6월).

가정 폭력 지원 :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이나 신체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긴급 쉼터, 상담, 인식 증진을 위한 정보 확대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약물 남용 지원 :

중독성 약물 특히, 알코올, 마약 과다복용 및 의존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중독치료, 재활, 예방,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위기 임신 서비스 :

아웃리치 서비스는 피임, 임신 징후, 태아 발달, 임신 옵션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특정 임신, 출산, 산후 교육지원, 무료 임신테스트, 임부복 및 아기 옷, 위탁,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 상담, 유산 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임시 주거 지원 :

임시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국가 공공 주택이나 긴급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지원 :

재정지원 프로그램, 보조금이나 대출을 통해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단기 식료품 제공 :

단기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긴급 식료품 분배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게 식료품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된다.

의료/재활 서비스 :

의료 또는 사회 재활서비스는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에서 회복중인 아동과 성인에게 제공된다.

소기업 대출/사업 개발 :

사업 대출 프로그램은 빈곤 가정이 대출을 받아 소규모 창업을 하여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다.

4.4 서비스 제공

국가가 가정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결정했다면 어떠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떠한 메커니즘이 이용될 것인지, 어떻게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정부기관이 가족보호와 재결합 서비스, 아동의 시설입소 감독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해 아동 보호 및 아동양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보호 담당 부서가 위기 가정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충분한 인력과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마련은 즉각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저비용의 보호 장치를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조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5 다른 자원의 활용

중앙 집중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국가는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건, 사회 복지, 경제 발전, 보훈 부처가 운영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타 프로그램에 소개해 줄 수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 또는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나 아동을 시설에 배치하려는 가족에 적합한 방식으로 확대 및 수정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4.6 협력 협정

국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양 또는 아동양육 업무를 하지 않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을 가족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단기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이 규모가 있어 많은 가족들이 접근 할 수 있다면 특히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부 기구는 소기업 대출을 제공하여 가족이 창업을 통해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원 단체에서는 단기 주거/식료품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계층에 의료 및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비정부 기구와 공식적인 협정의 초안 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국가가 단기 가족 보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재정 지원 조치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될 수 없다.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러한

의존은 다른 국가에 안정성과 확신을 거의 주지 못한다. 그러나 협의가 더 큰 이행 계획의 공식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중간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

4.7 인가단체의 이용

일부 국가는 가족 보존이나 재결합 서비스 이행을 위해 사적 입양 서비스 제공자와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사설 기관은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적절히 훈련된 사회 복지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을 보존하고 적절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히 모니터하는 경우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가족 보존과 국제 입양서비스 제공 간에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제공 주체를 결정하는 것과 서비스의 실제 이행을 분리하기도 한다. 가족 보존 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철저히 모니터 및 통제되는 적은 수의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충분히 모니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부속서 5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

5. 난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의 권고(1994년 10월 21일 채택)

1993년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17차 회기의 결정에 따라 난민 아동과 기타 국제 이재민 아동에 대한 헤이그 협약(1993년 5월 29일 아동 보호와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1994년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헤이그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는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채택하였다.

권고

아동 보호와 국제 입양에 관한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이 1993년 5월 29일에 체결되었으므로 난민 아동과 국내 상황의 혼란으로 발생된 국제 이재민 아동에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협약의 전문에 따라 각 국가는 우선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제 입양을 통해 자국에서 적합한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 가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상기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되는 국가가 난민 아동과 자국 상황의 혼란으로 발생된 국제 이재민 아동에 대하여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 **협약 제2조 1)항의 적용을 위해, 국가는 아동을 자국 내에 영구 거주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들 아동과 관련하여 협약 제2조 1)항에 언급된 출신국은 해당 아동이 피난 후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다.**

2. **아동이 피난을 간 국가의 권한당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국제 입양 절차가 시작되기 전,

- 아동이 부모, 가족 구성원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동이 이들을 찾아 재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러한 재결합을 위한 아동의 본국 송환은, 본국에서 아동이 적절한 양육 또는 만족할만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b) 국제 입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다.

- 협약 제4조 c)호에 언급된 동의를 얻은 경우
- 아동의 신원, 입양 가능성, 배경, 사회 환경, 가족력, 아동과 가족 등의 의료기록, 아동의 양육,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적 기원, 장애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수집된 경우

a), b)호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당국은 국내외 기관 특히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에 정보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3. 권한당국은 2)항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획득 및 유지함에 있어 아동의 본국에 남아있는 개인 특히 아동의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협약에 따라 상기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국가는 이 권고에 언급된 아동에 대하여, UN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명령 수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또한 배우자 또는 해당 국가가 상거소인 자 그리고 난민 또는 동 국가에서 국제 이재민이 된 아동 간에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에 관하여 각 국가가 이러한 원칙과 협약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부속서 6

조 직 도

도입과 설명

2000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답하여,[393]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협약에서 규정한 각 기능을 수행하는 각국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였다.[394] 이 양식은 출신국과 수령국 모두에 해당하며 각국의 중앙당국, 공공당국, 법원, 인가단체와 승인된(인가받지 않은) 개인의 이름과 연락 정보를 보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도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 **수령국과 출신국의 모든 입양 관련 역할과 책임에 대한 확인 목록**
- **협약에 의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기관 및 당국의 범주에 대한 지침**
- **다른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프로필의 개요**

협약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하는 국가의 이행법과 절차에서 다루어질 사항에 대한 확인 목록 역할을 하는 조직도는 1994 확인 목록(부속서 8 참조)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완성된 조직도는 완성된 국가 프로필과 함께 읽혀지는 경우에 다른 국가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각국의 권한당국과 기관의 상호 작용은 별도의 문서에 기록될 수 있다.

완성된 조직도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hcch.net의 "국제 입양섹션"에서 "국가프로필" 그리고 "조직도"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393) 지침 25항과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를 참조.
394) 2000년 특별위원회 보고서, supra, note 14, p.41, 1항, 2항을 참조.

1993 헤이그 국제 입양협약에 따른 조직과 책임

국가: _____

어떤 기관이 아래 기재된 역할을 수행하는지 박스에 체크해주십시오. 출신국인 국가는 섹션 A만 작성해주십시오. 수령국인 국가는 섹션 B만 작성해주십시오. 수령국이면서 동시에 출신국인 국가는 섹션 A와 B를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모든 국가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섹션 C에 요청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정보를 공지해야 합니다.

(CAN) 국가 중앙당국

(CAR) 지역 중앙당국

(PA) 공공당국

(CT)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

(ABN) 국내 인가단체

(ABF) 외국 인가단체 기관

(APN) 국내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개인

(APF) 외국의 승인된(인가받지 않은)개인

(IAE) 중앙당국이 지정한 독립적인 인가단체

[섹션 A : 출신국]

조	역할	책임 기관	
4 a)	• 아동의 입양 적합성 확인	☐ CAN ☐ PA	☐ CAR ☐ CT
4 b)	• 아동의 자국 내 배치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판단	☐ CAN ☐ PA	☐ CAR ☐ CT
4 b)	•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	☐ CAN ☐ PA	☐ CAR ☐ CT
4 c); 16(1) c)	• 모든 관련된 당사자가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 •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 동의가 자유의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 • 동의가 아동 출생 후 이루어졌음을 확인	☐ CAN ☐ PA	☐ CAR ☐ CT
4 d)	• 아동이 상담 및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	☐ CAN ☐ PA	☐ CAR ☐ CT
8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이행	☐ CAN ☐ PA	☐ CAR ☐ CT
9 a); 30	• 입양 기록과 정보의 보존 • 적절한 경우 아동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CAN ☐ PA ☐ ABN	☐ CAR ☐ CT ☐ ABF
9 b)	• 입양 진행 절차를 촉진, 준수, 가속화함	☐ CAN ☐ PA ☐ ABN	☐ CAR ☐ CT ☐ ABF
9 c)	• 입양 상담과 입양 사후 서비스의 발전 증진	☐ CAN ☐ PA ☐ ABN	☐ CAR ☐ CT ☐ ABF
9 d)	• 국제 입양 사례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중앙당국에 제출	☐ CAN ☐ PA ☐ ABN	☐ CAR ☐ CT ☐ ABF
9 e)	• 특정한 입양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다른 중앙당국이나 공공당국의 정당한 요청에 대응 (단,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CAN ☐ PA ☐ ABN	☐ CAR ☐ CT ☐ ABF
10; 11	• 인가단체가 협약과 국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	☐ CAN ☐ PA ☐ IAE	☐ CAR ☐ CT
12	• 외국의 인가단체의 국내 활동 허가	☐ CAN ☐ PA	☐ CAR ☐ CT
16(1) a)	• 아동에 관한 보고서 작성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6(1)a); 22(5)	• 승인받은(인가받지 않은)개인의 보고서 작성 감독	☐ CAN ☐ PA ☐ ABN	☐ CAR ☐ CT ☐ ABF
16(1) b)-d)	• 아동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구상중인 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6(2)	• 수령국으로 보고서와 서류를 전송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7 a)	• 예비입양부모의 배치 동의여부 확인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7 c)	• 입양 진행 동의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8	•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기 위해 허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9(2)	• 아동의 이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짐을 보장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9(3)	• 아동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고서 반환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20	• 수령국의 입양 당국에 입양 진행정보 제공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21	• 아동 배치가 실패하였고 새로운 배치가 필요한 경우 수령국의 중앙당국 또는 다른 기관과 상의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23	• 입양이 협약에 따라(입양이 출신국에서 완료된 경우) 이루어졌음을 확인	☐ CAN ☐ PA	☐ CAR ☐ CT
24	• 국가의 공공 정책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 입양을 거절할 권한을 보유	☐ CAN ☐ PA	☐ CAR ☐ CT
29	•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의 친부모 혹은 협약 제4조 a)호와 제5조 a)호의 요건이 자국의 법에 따라 충족될 때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개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	☐ CAN ☐ PA	☐ CAR ☐ CT
32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이 유도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함	☐ CAN ☐ PA	☐ CAR ☐ CT

[섹션B : 수령국]

조	조치	책임 기관
5 a)	• 예비입양부모의 적격성과 적합성 판단	☐ CAN ☐ CAR ☐ PA ☐ CT
5 b)	• 예비입양부모가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	☐ CAN ☐ CAR ☐ PA ☐ CT
5 c)	• 아동의 수령국 입국 또는 영구 거주 허가 결정	☐ CAN ☐ CAR ☐ PA ☐ CT
8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이행	☐ CAN ☐ CAR ☐ PA ☐ CT
9 a); 30	• 입양 기록과 정보의 보존. • 적절한 경우 아동의 정보 이용을 보장	☐ CAN ☐ CAR ☐ PA ☐ CT ☐ ABN ☐ ABF
9 b)	• 입양 진행 절차를 촉진, 준수, 가속화함	☐ CAN ☐ CAR ☐ PA ☐ CT ☐ ABN ☐ ABF
9 d)	• 국제 입양 사례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중앙당국에 제출	☐ CAN ☐ CAR ☐ PA ☐ CT ☐ ABN ☐ ABF
9 e)	• 특정한 입양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다른 중앙당국이나 공공당국의 정당한 요청에 대응(단,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CAN ☐ CAR ☐ PA ☐ CT ☐ ABN ☐ ABF
10; 11	• 인가단체가 협약과 국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	☐ CAN ☐ CAR ☐ PA ☐ CT ☐ IAE
12	• 외국 인가단체의 국내활동 허가	☐ CAN ☐ CAR ☐ PA ☐ CT
14	• 예비입양부모의 입양신청 수락	☐ CAN ☐ CAR ☐ PA ☐ CT ☐ ABN ☐ ABF
15	•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출신국으로 전송	☐ CAN ☐ CAR ☐ PA ☐ CT ☐ ABN ☐ ABF ☐ APN ☐ APF
15(1); 22(5)	• 승인받은(인가받지 않은)개인의 보고서 작성 감독	☐ CAN ☐ CAR ☐ PA ☐ CT ☐ ABN ☐ ABF

15(2)	• 출신국으로 보고서 전송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6(2)	• 아동에 관한 보고서, 동의 증빙,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을 권고 배치한 사유를 수령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7 a) b)	• 출신국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과 부모결연에 관한 결정의 승인(법률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예비입양부모의 아동배치 동의를 출신국에 공지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7 c)	• 입양 진행 동의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8	•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 및 영구 거주하기 위한 허가 획득을 위해 모든 조치를 이행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9(2)	• 아동의 이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19(3)	• 아동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고서 반환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20	•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입양진행정보 제공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21	• 아동 배치가 실패하였고 새로운 배치가 필요할 때 출신국의 중앙당국 또는 기타 기관 함께 아동을 보호, 양육에 대한 모색, 협의	☐ CAN ☐ PA ☐ ABN ☐ APN	☐ CAR ☐ CT ☐ ABF ☐ APF
23	• 입양이 협약에 의해(입양이 수령국에서 완료된 경우) 진행되었음을 확인	☐ CAN ☐ PA	☐ CAR ☐ CT
24	• 국가의 공공 정책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 입양을 거절할 권한 보유	☐ CAN ☐ PA	☐ CAR ☐ CT
29	• 예비입양부모와 아동의 친부모 혹은 협약 제4조 a)호와 제5조 a)호의 요건이 자국의 법에 따라 충족될 때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	☐ CAN ☐ PA	☐ CAR ☐ CT
32	•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이 유도되지 않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지 않도록 보장	☐ CAN ☐ PA	☐ CAR ☐ CT

[섹션 C: 책임 있는 당사자의 확인]

아래 명시된 모든 해당 기관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앙당국 :

지역 중앙당국 :

공공당국/법원 또는 심사위원회 :

인가단체 :

승인받은(인가받지 않은) 개인 :

이 양식을 작성한 개인/부서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름 :

부서명 :

전화번호 :

부속서 7

권 고 양 식

권고 양식

입양 동의서

아동 보호와 국제 입양에서의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Ⅰ. 동의서

작성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완전하게 내용을 이해한 경우에만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이 서류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아동 입양에 대한 귀하의 동의 획득을 목적으로 제공된 어떠한 종류의 지급, 보상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 명 자			
성		이름	
생년월일		상거소	
아동의 모(　　), 부(　　), 법적 대리인(　　) :			
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상거소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본인은 아동의 입양에 대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자유의지로 동의합니다.

2 - 본인은 아동이 배우자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입양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3 - 본인은 이 아동의 입양이 입양 부모와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창설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4 - 본인은 아동과 아동의 친모/친부 간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법적 부모 자녀 관계를 종료시키는 입양의 목적에 동의합니다.

5 - 본인은 _____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완전하게 이해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서명일		서명	

Ⅱ. 증인의 선언(장애우나 문맹인 경우 등 법률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

.....

.....

.....

Ⅲ. 동의를 위임받은 기관의 증명서

성명		제목	

본인은 상기 명시되고 확인된 자(그리고 증인)가 본인의 입회하에 아래 명시된 날짜에 이 서류에 서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서명일		서명/인	

권고 양식

국제 입양 준수 증명서

아동 보호와 국제 입양에서의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제23조

1. 서명 당국(입양국 권한당국의 명칭과 주소)

.....

.....

.....

2. 아동의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상거소			

3. 다음 당국의 결정에 따라 입양되었습니다.

결정일		최종 결정일(확정일)	

(당국의 결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입양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입양부(父)의 성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입양당시 상거소	

b) 입양모(母)의 성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입양당시 상거소	

5. 서명 당국은 입양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 협약 제17조 c)항에 따른 동의가 아래 명시된 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a) 출신국 중앙당국(또는 협약 제22조 (1)항 또는 (2)항에 의해 지명된 공공당국이나 기관, 개인)의 명칭과 주소:

동의 날짜 :

b) 수령국 중앙당국(또는 협약 제22조 (1)항 또는 (2)항에 의해 지명된 공공당국이나 기관, 개인)의 명칭과 주소:

동의 날짜 :

6. [ ] 이 입양은 기존의 법적 부모 자녀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력을 갖습니다.
[ ] 이 입양은 기존의 법적 부모 자녀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날 짜 :

서명/인 :

표준 양식

아동에 관한 의료보고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이 적용되는 체약국의 경우 **정식 허가를 받은 의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답변 정보가 없는 경우 "알 수 없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친모의 이름		친모 생년월일	
친부의 이름		친부 생년월일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명		입소일	
출생 당시 몸무게		입소 당시 몸무게	
출생당시 키		입소당시 키	

임신과 출산은 정상적이었습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아동은 어디서 생활하였습니까?

☐ 부모와 함께 부터 까지 ☐ 친인척과 함께 부터 까지

☐ 사적인 양육 부터 까지 ☐ 병원이나 시설에서 부터 까지

(관련 기관명을 적어 주십시오)

아동이 과거에 질병을 앓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합병증과 각 질병을 앓았던 시기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만약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일반적인 아동 질환(백일해, 홍역, 수두, 풍진, 볼거리)입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폐결핵입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경련(열성경련 포함)입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기타 다른 질병입니까? ( )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접촉 전염병에 노출되었습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아동이 다음 질병에 대한 백신주사를 맞았습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만약 네 라고 대답하셨다면:			
폐결핵 백신주사	접종 날짜 : ( )	**디프테리아**	접종 날짜 : ( )
파상풍	접종 날짜 : ( )	**백일해**	접종 날짜 : ( )
소아마비	접종 날짜 : ( )	**A형 간염**	접종 날짜 : ( )
B형 간염	접종 날짜 : ( )	**기타 면역주사**	접종 날짜 : ( )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 모르겠음		
입원한 적이 있다면 병원, 아동의 연령과 증상, 치료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아동의 정신 건강, 행동, 운동능력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시각 ☐ 모르겠음	언제 시선을 고정하였습니까?
청각 ☐ 모르겠음	언제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까?
운동신경 ☐ 모르겠음	언제 아동이 스스로 앉았습니까? 언제 무엇을 잡고 섰습니까? 언제 도움 없이 걸었습니까?
언어 ☐ 모르겠음	언제 아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단어: 문장:
관계 ☐ 모르겠음	아동이 언제 웃기 시작했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아동이나 성인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떠합니까?

감정 ☐ 모르겠음	아동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분노, 불안, 실망 등)을 표현합니까?
아동의 의료검사 검사일 :	
1. 아동	몸무게 : kg 날짜 : ( ) 키 : cm 날짜 : ( ) 머리둘레 : cm 날짜 : ( )
머리색 : 눈동자색 : 피부색 :	
아동의 의료검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질병, 장애, 비정상 증거를 관찰하였습니다. 검사일 :	
머리(두개골의 형태, 수두증, 두개골연화증)	
입과 인두(구순구개열, 구개파열, 치아)	
귀(감염, 분비물, 청력감소, 기형)	
흉부장기(심장, 폐)	
림프샘(선염)	
복부(탈장, 간, 비장)	
생식기(요도하열, 고환, 정체)	
척추(후만증, 측만증)	
사지(첨족, 외반족, 내반슬, 외반구족, 고관절 굴곡, 부전마비)	
피부(습진, 전염병, 기생충)	
다른 질병	
아동에게 매독의 징후가 있는가? 매독반응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아동에게 폐결핵의 징후가 있는가? 폐결핵검사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아동에게 A형 간염의 징후가 있는가? A형 간염 검사 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아동에게 B형 간염의 징후가 있는가?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항B형 간염표면항체 검사 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e항원 검사 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항B형 간염e항체 검사 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에이즈의 징후가 있는가?			
에이즈(HIV) 검사 결과(검사일) :	☐ 양성	☐ 음성	☐ 미검사
다른 감염성 질병의 징후가 있는가?			
소변의 구성은 어떠한가?			
당?	**알부민?**	**페닐케톤?**	
대변(설사, 변비)			
기생충 검사	☐ 양성	☐ 음성	☐ 미검
아동에게 정신 질환이나 지체가 있는가?			
아동의 정신 발달, 행동, 기술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이는 예비입양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기입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하십시오.			
날짜 : 검사담당 의사의 서명 :			

표준 양식

아동에 관한 일반적인 의료보고서의 추가보고서

아동의 심리·사회 보고서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범위에 속하는 체약국은 각 질문에 대답하여 주십시오.

장난감 놀이	
☐	아동의 눈이 앞에서 움직이는 딸랑이/장난감을 따라간다.
☐	딸랑이를 잡는다.
☐	딸랑이를 가지고 논다: 입에 넣고, 흔들고, 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	큐브(정육면체)를 쌓는다.
☐	목적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차 밀기, 인형재우고 음식 먹이기 등
☐	다른 아동과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한다.
☐	얼굴, 사람, 동물의 구분되는 특징을 그린다.
☐	다른 아동과 협동하여 구조적인 게임(공놀이, 카드게임 등)을 한다.
☐	관찰이 불가능하다.
발성 / 언어발달	
☐	1. 양육자와 접촉하여 소리를 내 말한다.
☐	2. 다양한 자음, 모음 조합을 반복한다(바바, 다다, 마마 등)
☐	3. 의사소통에 간단한 단어를 사용한다.
☐	4. 문장을 말한다.
☐	5. 전치사를 이해한다(아래, 위, 뒤 등).
☐	6. 전치사를 사용한다(아래, 위, 뒤 등).
☐	7.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	8. 자신의 이름을 쓴다.
☐	9. 단순한 단어를 읽는다.
☐	관찰이 불가능하다.
운동신경 발달	
☐	아동이 (　　)세부터 뒤집기를 한다.
☐	아동이 (　　)세부터 도움 없이 앉는다.
☐	아동이 (　　)세부터 기어 다닌다.
☐	아동이 (　　)세부터 가구를 잡고 걷는다.
☐	아동이 (　　)세부터 혼자 걷는다.
☐	아동이 (　　)세부터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오르내린다.

□	아동이 (　　)세부터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린다.
□	아동이 (　　)세부터 도움 없이 자전거를 탄다.
성인과의 접촉	
□	1. 양육자와 접촉 시 웃는다.
□	2. 알고 있는 양육자가 안아줄 때 훨씬 더 쉽게 누그러진다.
□	3. 양육자가 방을 떠날 때 울거나 따라간다.
□	4. 화가 나거나 다쳤을 때 적극적으로 양육자를 찾는다.
□	5. 모든 성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려한다.
□	6. 자신의 감정을 말로 양육자에게 전달한다.
다른 아동과의 접촉	
□	1. 다른 아동에게 웃거나 쳐다보는 등의 관심을 보인다.
□	2. 옆에 있는 다른 아동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	3. 다른 아동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활동의 일반적 수준	
□	수동적
□	적극적
□	지나치게 적극적
일반적인 성향	
□	진지, 심각
□	감정적으로 무관심
□	신경질적이며 달래기 어려움
□	행복, 만족
추가로 기입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하십시오.	
날짜 : 조사자의 이름 : 직업 : 서명과 도장 :	

부속서 8

협약 이행에 관한 1994 확인 목록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확인 목록

199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특별위원회를 위해 1994년 9월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에 의해 작성됨.

다음 확인목록은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 질문은 출신국에 관련된 질문이고 수령국에 관련된 질문들도 있다. 이 목록은 모든 질문을 빠짐없이 다룬 것은 아니며, 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

1장. 협약의 범위

제2조

국내법에 명시된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창설하는 입양 중, 어떤 형태의 입양이 "아동과 부모 간의 기존 법적 관계 종료"(협약 제26조 (1)c)항, (2)항)을 야기하는가?

2장. 국제 입양의 요건

▶ 출신국	▶ 수령국
• **제4조** - 제4조에 따른 권한당국은 어느 기관인가? - 이행법에 제4조의 최소 요건을 포함 그리고 / 또는	• **제5조** - 제5조에 따른 권한당국은 어느 기관인가? - 이행법에 제5조의 최소 요건을 포함하거나 그리고 / 또는
• **a 항** - 어떤 사회 심리적 기준에 따른 입양 가능성 인지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a 항** - '예비입양부모가 적합한'에 대한 사회 심리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출신국	▶ 수령국
• b항 - '적절히 고려한 후': 서문 2항과 3항 참조	• b항 - 입양 상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상담 서비스의 개발이 없는지 확인(제9조 c항 참조)
• c항 - 입양 상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상담 서비스의 개발이 없는지 확인(제9조 c항 참조) - '법이 정한 방식'이란? -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하거나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시(제안된 표준양식 참조) - 그러한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 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아동 출생 후' 어머니의 동의에 관한 특별 조항 - 아동의 동의에 관한 추가 조항 - 아동의 바람과 의견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c항 -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고 영구 거주하기 위한 승인 요건과 승인 양식. 이민 당국과 협력.

3장. 중앙당국과 인가단체

제6조와 제7조

- 제6조 (1)항에서 언급된 중앙당국의 지정

- 연방 국가, 하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복수의 자치구를 가진 국가는 원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국이 기능하는 지역 또는 인적 범위를 특정하고,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중앙당국을 지정(제6조 (2)항).

- 중앙당국은 전반적인 협력 및 공조의 역할(제33조), 제7조 (1)항과 (2)항의 위임할 수 없는 의무 그리고 제8, 9, 15-21조의 위임할 수 있는 의무를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이행하는가?

제8조

- 제8조에 명시된 역할을 담당할 자국의 공공 기관은 어디인가?
-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명시.

- 해당되는 경우, 제8조의 이행 수단을 명시.

제9조

- 제9조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는 수단을 확립(명시된 목록은 해당 사항을 모두 포함하지 않음)

제10조

- '인가단체'의 인가 및 유지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
-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실질적인 기준에 따르는가? 제11조와 제32조의 요건으로 충분할 것인가?

제11조

- 인가단체는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기준의 '조건과 한계'를 정하는 '권한당국'은 어느 기관인가?
- '윤리적 수준으로 보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수준과 관련하여, 예컨대 해당하는 이의 과거 행적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수준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누구에 의해 제기되며 어떻게 제기되는지 등을 명시.
-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누가 이러한 훈련을 개발하고 제공할 것인가? 누가 이러한 훈련의 기준을 수립할 것인가?
- 권한당국에 의한 감독을 받다.
  - 권한당국의 지정
  - 감독 조건 규정

제12조

- 자국의 '권한당국'은 어느 기관인가?
- 언제 승인을 내리는가?
- 다른 국가의 권한당국과 가능한 협력

4장. 국제 입양의 절차적 요건

▶ 출신국	▶ 수령국
	• 14조* - 예비입양부모가 중앙당국에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의 신속한 처리(제35조 참조); 예비입양부모에게 피드백
• 제15조** - 제19조 (3)항을 감안하여(제31조 참조) (1)항에 따라 작성, (2)항에 따라 전송되는 보고서의 기밀 유지를 명시하였는가?	• 제15조 - 1항의 이행은? 누가 '가정조사'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가정조사'와 보고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할 것인가? - 공공의 입양 요건 보고서에 명시(제24조 참조) - 2항에 따라 어떻게 전송을 신속히 하는가?(제35조 참조) - 보고서의 기밀유지를 명시하였는가(제31조 참조)? - 해당되는 경우: 제22조 (5)항의 이행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 - (1)항 이행. 보고서의 기준은? - 보고서의 기밀유지요건 규정(특히 기간). 접근요건 규정 (제 30조, 제 31조 참조) - (2)항에 따라 전송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는가? - 해당되는 경우: 제22조 (5)항의 이행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 - 제19조 (3)항을 감안하여(제30조, 제31조 참조) (1)항에 따라 작성, (2)항에 따라 전송되는 보고서의 기밀 유지를 명시하였는가?

* 제22조 (1)항에 따르면, 22조에 의한 중앙당국의 기능은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제22조 (1)항에 따르면, 22조에 의한 중앙당국의 기능은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만약 제22조 (2)항에 의한 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기능은 (4)항에 따라 (4)항에 언급된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해당되는 경우, 중앙당국이 수령국 중앙당국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거나 요청하여야 하는 사례를 명시.
- 해당되는 경우, 거절을 명시(공공 정책, 제24조 참조).
- 이민 당국과 협력.

▶ 출신국	▶ 수령국
• 제18조**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해당되는 경우, 이민 당국과 협력	• 제18조**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구 거주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해당되는 경우, 이민당국과 협력(제5조 c)호 참조)

제19조 * *

- 보고서가 반송되는 경우 보고서의 보존 요건. 이 보고서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가(3항 참조)?

제20조 * * 와 제21조

▶ 출신국	▶ 수령국
	- 입양 후 서비스 수립이나 개발(제9조 참조) - 아동의 재배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와 책임

* 제22조 (1)항에 따르면, 22조에 의한 중앙당국의 기능은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제22조 (1)항에 따르면, 22조에 의한 중앙당국의 기능은 공공당국이나 인가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만약 제22조 (2)항에 의한 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기능은 (4)항에 언급된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제22조

- (2)항의 수탁자를 확인하고 (3)항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명칭과 주소에 관한 정보 제공
  - 누가 '권한당국'인지 결정(2항)
  - a, b의 요건(청렴성, 전문적 역량, 경험 및 책임, 윤리적 기준과 훈련 또는 경험) 준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제11조와 제 32조 참조)?
- (4)항 확인

5장. 입양의 승인 및 효과

제23조

- 협약에 따른 입양 증명서: 표준양식 참조.
-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권한당국'은 어느 기관인가?

제25조

경우에 따라, 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27조

- '일반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가?

- (1)항 b호의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 제4장-일반 조항

6장. 일반규정

▶ 출신국	▶ 수령국
• **제28조** 당신의 국가는 이 조항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법이 있는가?	
• **제29조** - 해당되는 경우, 접촉 요건을 수립해야 하는 "권한당국"을 지정 - 접촉 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 **제29조** - 해당되는 경우, 예비입양부모에게 접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제30조

(1)항 - 정보의 보존 조건 규정: 제15조와 제16조 참조.

- "권한당국" 지정- 예를 들어, 이러한 당국이 없어지는 경우, 해당 당국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다른 당국으로 이전하는 사례

(2)항

- 접근 요건 규정

제32조

- (1)항~(3)항의 요건을 자세하게 명시한 이유가 있는가?

제39조

(1)항
- 이 같은 국제 조약의 당사국인가? 선언하였는가?

제45조

- 선언하였는가?

부속서 9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와 아동의 법적 보호

▌ 언론 발표 ▐

아시안-아프리칸 쓰나미와 아동의 법적 보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사무총장은 최근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영향을 준 쓰나미로 인한 희생 아동의 불규칙한 이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국제 기구와 일반인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국제 이동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몇 가지 중요한 도구를 개발해왔다. 국제적인 아동 유괴와 국제 입양은 특히, 두 가지 다자간 협약의 대상이다.

198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980년 10월 25일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이동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한다. 재난 피해 지역의 당사국은 스리랑카와 태국이며, 이 협약은 70개국 이상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이 협약은 중앙당국을 통한 협력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불법적 해외 이동과 해외로 간 아동의 미귀환(UN 아동권리협약 제 11조와 제35조)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1993년 5월 29일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불법적, 변칙적, 미성숙하고 미비한 국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한다. 해당 지역의 당사국은 인도, 스리랑카와 태국으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외에도 60개국이 넘는다. 이 협약 역시 중앙당국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UN아동권리협약(제21조)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의 기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유괴, 매매 및 거래의 방지를 추구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2000년에 당사국이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국제 입양을 추진하는 경우 가능한 한 협약의 기준과 보호망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다.

난민 아동의 국제 입양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협력하여, 1994년, 모든 국가(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체약국 여부에 상관없음)들이 난민 아동과 자국의 혼란으로 국제 난민이 된 아동의 국제 입양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특정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 권고는 아동이 난민이 된 국가는 국제 입양 절차가 착수되기 전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아동이 부모 및 가족과 분리된 곳에서 부모 및 가족을 찾고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재결합을 목적으로 아동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에서 아동은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고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즉, 쓰나미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난민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려는 부적절하고 규제되지 않은 시도는 방지 및 저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의 당국에 가능한 모든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사무총장 윌리엄 던칸(William Duncan) 씨에게 연락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문서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HCCH의 홈페이지 www.hcch.net를 방문하여 아래를 선택하십시오.

-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협약 #28)
  http://hcch.e-vision.nl/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24

-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협약 #33)
  http://hcch.e-vision.nl/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69

- 난민 아동에 대한 권고
  http://hcch.e-vision.nl/index_en.php?act=publications.details&pid=934&dtid=2

헤이그, 2005년 1월 10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국제 사법 규정의 조화를 위해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정부 간 조직이다. 회원국 수는 전 대륙에 걸쳐 총 64개국이며, 현재 120개국 이상이 하나 이상의 헤이그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조직의 목표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법적 체계 간 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법적 안전성이 강화되며, 이는 규칙과 지침이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부속서 10

국제 입양에 대한 유니세프의 입장

- 2007년 성명서

❖ 유니세프는 국제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아왔다. 유니세프는 입양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하 "협약")은 입양 가정과 입양 아동 모두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다. 왜냐하면 협약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촉진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헤이그 협약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각 국가의 당국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유니세프 업무의 지침이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은 가능하다면 모든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와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규정과 아동의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동 양육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아동 양육의 대안적 수단은 가족이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족이 없거나 아동의 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혹은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원가정에서 양육 받지 못한 아동을 위해 적절한 대안적인 가정환경의 모색이 시설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시설 보호는 최소의 방안이자 임시조치로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은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양육 옵션 중 하나이며, 출신국의 가정에 영구배치 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국제 입양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입양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지난 30년 동안 다른 국가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선진국의 수많은 가정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동시에,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특히 출신국에서의 미흡한 규제 및 감독으로 인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입양과 관련한 이득을 얻고자하는 일종의 산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아동 매매, 유괴, 부모의 강압, 뇌물수수 등과 같은 남용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 전 세계 많은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여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다. 유니세프는 UN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국제 입양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러한 국제 법률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법률에는 입양은 권한당국에 의해서만 승인되어야 하며, 국제 입양에 국내 입양과 동일한 보호망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국제 입양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그 무엇보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시 하며 이와 동시에 예비입양부모에게 아동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관행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 아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경우는 특별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동이 생존한 부모나 친인척이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비록 부모 모두가 사망하였을지라도 상황이 진정되면 생존한 친인척이나 공동체, 돌아갈 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은 국제 입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족 추적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유니세프와 UN난민고등판무관, 적십자, 세이브더칠드런 연맹과 같은 국제 비정부 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색 인

협약 조항

주의 : 다음 표의 숫자는 지침의 **'항'**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 **'f'**가 표시된 경우는 각주를 의미하며 앞에 **'A'**가 있는 경우는 부속서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1993년 5월 29일 아동 보호 및 국제 입양 관련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제1조	38, 137	제7조	193, 200, 203, 515
제1조 a)	514, f17, f102	제7조(1)	123, 183, f74, f296,
제1조 b)	f30, f102		A235
제2조	515, 519, 522, 525,	제7조(2)	179, f76, f297,
	531, A234		A235
제2조(1)	478, A212	제7조(2) a)	f119
제2조(2)	389, 557	제7조(2) b)	148, f75, f88
제4조	331, 443, 523, 533,	제8조	148, 154, 193, 200,
	583, A234		203, f31, f62, f68,
제4조 a)	60, 325, 358, 485,		f107, A217, A219,
	506, A217, A218,		A235
	A220, A234	제9조	154, 193, 203, 205,
제4조 a)-c)	358, A195		A235, A236
제4조 b)	46, f194, f207,	제9조 a)	61, 576, A217,
	A217, A235		A219
제4조 c)	f111, A213,	제9조 b)	A217, A219
	A217, A235	제9조 c)	579, f330, A217,
제4조 c)(1)	77, f181		A235
제4조 c)(3)	f32, f42, f50, f182	제9조 d)	f118, A217, A219
제4조 c)(4)	f43	제9조 e)	f341, A217, A219
제4조 d)	f44, f47, f112,	제10조	193, 203, 205, f89,
	A217		f130, A217, A219,
제4조 d)(1)	f48		A236
제4조 d)(3)	344, 416	제11조	193, 203, 246, f89,
제4조 d)(4)	f32, f42		A191, A217, A219,
제5조	372, 443, 503, 523,		A236, A238
	533, 583, A234	제11조 a)	f131
제5조 a)	358, 417, 486, 533,	제11조 b)	f132
	A195, A218, A219,	제11조 c)	f133
	A220, A234	제12조	193, 203, 210, 212,
제5조 b)	417, 533, f278,		445, f123, f140,
	A219, A235		f146, A217, A219,
제5조 c)	376, 377, 428,		A236
	A219, A235, A237	제13조	151, 153, 154, 175,
제6조	150, 156, 193, 203		193, 201, 203, 312,
제6조(1)	f67, f92, A235		A175
제6조(2)	f97, A235		
제14조	104, 109, 148, 200,	제17조 b)	366, 369, 371, 427,
	217, 312, 314, 407,		546, f217, A220
	469, 473, 476, 479,	제17조 c)	331, 334, 368, 371,
	f91, f212, f287,		373, 374, 430, 505,
	A219, A237		506, 507, 527, 533,
제15조	104, 109, 200, 216,		539, 541, f218,
	314, 338, 343, 344,		A218, A220, A226
	377, 401, 407, 414,	제17조 d)	428, f219
	416, 417, 455, 511,	제18조	104, 109, 148, 200,
	513, 514, 533, f91,		216, 312, 376, 428,
	f213, A219, A235,		f91, A218, A220,
	A237, A237		A235, A237
제15조(1)	513, f281, A219,	제19조	104, 109, 148, 200,
	A237		216, 312,380, 381,

제15조(2)	f284, A220,	제19조	545, 547, f91,
	A237		A235, A238
제16조	104, 109, 148, 200,	제19조(2)	545, A218, A220
	216, 312, 323, 336,	제19조(3)	A218, A220, A237,
	338, 342, 344, 349,		A238
	377, 416, 510,533,	제20조	104, 109, 148, 200,
	568, f91, f180,		216, 312, 380, f91,
	A235, A237, A239		f340, A218, A220,
제16조(1)	354, f214, f223,		A235, A238
	f254, A237	제21조	104, 109, 148, 200,
제16조(1) a)	327, f233, A217,		216, 312, 380, 604,
	A218		f91, A218, A220,
제16조(1) b)-d)	A218		A235, A238,
제16조(1) c)	A217		A242
제16조(1) d)	354, 356	제21조(1) a)	607
제16조(2)	84, 334, 356, 537,	제21조(1) b)	608
	538, 572, f215,	제21조(2)	f346
	f255, A218, A220,	제22조	148, 217, 312, f91,
	A237		A237, A238
제17조	104, 108, 109, 148,	제22조(1)	312, 414, f89,
	200, 216, 312, 372,		A226, A237, A238
	379, 431, 459, 463,	제22조(2)	110, 182, 200, 215,
	464, 524, 544, 546,		216, 312, 414, f90,
	547, f91		f143, f144, A226,
			A237, A238
제17조 a)	366, 369, 371, 424,	제22조(2) a)	A238
	f216, A218, A220	제22조(2) b)	A238
제22조(3)	A238	제30조	61, 337, 534, 538,
제22조(4)	219, 220, f147,		566, 567, 568, 572,
	A237, A238		576, A217, A219,
제22조(5)	414, A218, A219,		A237, A239
	A237	제30조(1)	A239
제23조	104, 379, 383, 384,	제30조(2)	A239
	385, 436, 475, 532,	제31조	577, A237
	542, 543, 560,	제32조	233, 240, 241,
	A218, A220, A225,		A218, A220, A236,
	A238		A237, A239
제23조(1)	533	제32조(1)	f61, f108
제24조	529, A218, A220,	제32조(2)	f109
	A237	제32조(3)	f110, f134
제25조	A239	제33조	200, 526, f91,
제26조	A234		A235
제26조(1)	559	제35조	133, A237, A242
제26조(1) a)	556	제39조(1)	A240
제26조(1) b)	556	제39조(2)	365, 452, f292
제26조(1) c)	512, A234	제40조	f248
제26조(2)	56, 637, f301,	제41조	469, 473, 474, 476
	A234	제42조	530, f77
제26조(3)	559	제43조	466, 472
제27조	560, A239	제43조(1)	A173
제27조(1) b)	560, A239	제43조(2)	A173
제28조	380, f294,	제44조	467, A173
	A239	제44조(2)	A173, A175
제29조	358, 359, 422, 431,	제44조(3)	467, 468, 469,
	433, 512, 637,		A173
	A195, A218, A220,	제45조	A240
	A239	제46조	A173, A175
		제46조(2)	468, 469, A175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manent Bureau
Churchillplein 6b
2517JW The Hague
The Netherlands

Telephone: +31(70) 363 3303
Facsimile: +31(70) 360 4867
Email: secretariat@hcch.net
www.hcch.net

HCCH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ÉRENCE DE LA HAY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03752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충정로 2가)
진양빌딩 7층
Tel. 02-6943-2600 Fax. 02-771-9680

비매품
93330
9 791196 247126
ISBN 979-11-962471-2-6